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와 정책과제

강혜정 전문연구원
마상진 부연구원

과거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가정주부와 농업보조자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여성농업인은 농업 주종사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농업부문의 중요한 노동력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원예, 축산, 낙농, 버섯 등의 생산과 친환경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농산물 가공업, 관광농원 등의 농외소득 분야에서는 여성농업인 CEO도 등장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은 농가경제 내에서는 농업과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주체이며, 국가경제 전체로 볼 때는 농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이다. 더 나아가 지역개발과 사회활동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그러나 가치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은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왔다.

개방화 확대와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그 역할이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농업의 핵심 인력으로 부상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과 활동성과에 향후 농업경쟁력과 농촌 발전은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의 경제 및 사회활동의 실태와 수행하는 역할의 가치평가를 통해서 여성농업인 역할의 경제적 중요성을 밝히는 한편, 경제 및 사회활동 수행에서 부딪히는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여성농업인이 경제활동 주체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이 연구가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와 여성농업인 역할 변화에 대응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기를 바란다. 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설문에 응해 주신 여성농업인들께 감사드린다.

2007.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요 약

농업의 주종사 인구 중 여성 비중은 1970년 28%에서 2006년 52%로, 지난 35년 동안 2배 정도 증가하였다. 2005년 평균 농가 농업노동시간의 80%를 차지하는 가족농업노동시간 중 여성 가족노동시간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농사일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44%에 달할 정도로 여성농업인은 농업의 중요한 노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은 아직까지 농업경영의 주체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논농사는 남편, 밭농사는 여성농업인이 주로 담당하는 전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생산수단과 관련된 의사결정, 생산자조직 가입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여성 명의로 된 농지가 전혀 없는 농가가 70% 이상에 달할 정도로 여성농업인의 생산 자원 소유 정도는 매우 낮은 상태이다.

여성 농업주종사자의 62%가 60세 이상으로 여성농업인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40세 미만의 젊은 여성농업인의 비중은 3% 이하로 매우 낮다. 여성농업인의 고령화와 젊은 여성농업인의 신규 유입 단절은 농업·농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사회여건 변화로 창업이나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통식품과 향토음식 제조 및 직거래 유통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농외소득활동은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자아실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젊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부녀회와 봉사활동 등의 지역사회활동도 활발하다. 서비스 산업의 성격이 강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더욱 요구된다. 농촌관광이나 지역개발에 여성농업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이다. 여성농업인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마을 이장에도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2005년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무급가족노동인 여성농업인 농업노동의 잠재임금을 추정하고, 중장년 여성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남녀 가족노동의 평균 잠재임금비율은 95% 수준으로 농촌 고용노동의 남녀 임금비율인 68%보다 높다. 즉, 농촌 고용노동 임금으로 가족 여성농업인의 노동 가치를 평가하면 과소평가할 수 있다. 한편, 역할 유형별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지불의향금액 설문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더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여성농업인은 농사일과 마을일에 대한 본인의 기회비용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여성농업인의 경제 및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제약요인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농사일과 가사의 이중 노동 부담,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부족 문제, 마케팅 및 정보 활용 능력 부족, 리더십 부족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즉, 활동이 활발한 중장년 여성농업인에게는 남녀차별과 같은 의식적인 문제보다는 일과 가사의 양립을 유지하는 문제와 각 활동 영역에서의 전문능력 부족 문제가 가장 큰 활동상 제약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전문 능력개발을 촉진시키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 방향도 새롭게 변해야 할 것이다. 과거 여성농업인을 단순히 복지대상자로 간주하였던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여성농업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활동 성장단계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진입단계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과제로 후계여성농업인 육성기반 확충과 수요자 중심의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한다.

후계여성농업인 육성기반 확충을 위해 남녀 차별 없이 실질적 영농승계자에게 영농기반을 상속·증여하는 양성 평등한 상속문화 정착, 후계여성농업인 육성주체, 육성단계별 정책, 후속 지원 대책, 예산투자확보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 젊은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유입 확대를 유도하는 환경 조성, 그리고 잠재적 여성농업인을 대상

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홍보체계 등이 필요하다.

수요자 중심의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방안으로 부부농업인 육성 제도 마련과 농과계 대학에 여성관심 전공분야 유치 및 확대 등이 필요하다.

성장단계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과제로 실질 공동경영주 지위 인정, 여성농업인이 활동하기 편한 환경 조성, 여성 친화적인 농외소득활동 지원, 기술 및 경영 전문교육 강화 등을 제안한다.

현재 농지를 소유한 여성농업인이 극히 소수이므로 여성 명의로 자산의 소유권을 전환하는 것은 가족원 간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와 같은 실질 공동경영주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실질 공동경영주 제도와 병행하여 농가 경영주와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원 간에 농업 경영에 따른 역할과 의무, 보수 등을 문서로 명확히 하는 농가경영협약 제도 정착과 더 나아가 농가 법인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이 활동하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우미 제도 확대 및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 영유아 보육체계 마련, 여성용 농기계 임대 활성화 등을 제안한다. 여성농업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일과 가사의 양립을 유지하는 문제를 위해서 여성농업인의 가사 노동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도우미 제도 도입과 효율적인 도우미 운영체계를 위해서 도우미 양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농촌형 보육체계의 대안으로 모든 면 단위에 여성농업인 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현재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육 및 방과 후 교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성용 농기계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서 여성용 농기계를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구매하여 지역별로 분산 배치, 여성용 농기계를 필요한 여성농업인이 필요한 때에만 저렴하고 편리하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친화적인 농외소득활동 지원 방안으로 여성농업인 창업 소규모 업체의 마케팅 전략 교육과 식품위생법, 품질인증제도 등에 관한 식품관련 법제도 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품목별 연구회를 조직하여 같은 사업을 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과 주 고객층인 도시소비자와의 네트

워크 강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소규모 영세업체의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공동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 가공품의 공동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과 여성농업인 가공품 박람회 등 소비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의 종합적인 창업지원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창업센터(가칭)’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창업센터’는 창업상담, 정보제공, 기술상담, 품목연구회 운영, 경영교육, 정보화 교육, 해외연수, 산학 협동 등 여성농업인의 창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기관이 될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교육이다.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을 전문 인력화 방향으로 전환하여 영농기술 및 경영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단계별 교육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은퇴단계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과제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과제로 농어민 국민연금의 확대 적용과 고령여성농업인 생계보장지원 제도 마련 등을 제안한다.

여성이 실질 경작자임에도 농지원부에 이름이 없으면 무소득 배우자로 간주되어 농업인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농업인도 실질적인 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농업인 연금제도 개편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일본과 같이 여성농업인의 농업인 연금제도를 농가경영협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각종 고령농업인 정책에서 배제된 노령여성농업인에 대한 생계보장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경제활동을 원하는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해서는 농촌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활동 성장단계별 여성농업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집행의 연계성 강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ABSTRACT

Investigation of Changes in Korean Women Farmers' Roles and Suggestion of Policy Agendas for the Women Farmers

The study is designed to understand changes in Korean women farmers' roles in various activity areas such as farm work, off-farm work, and local community work. It also evaluates values of the roles that women farmers have performed and proposes government policies for reinvigorating the women farmers' roles and activities which are anticipated to be a driving force for developing the future of our agriculture and rural areas.

The rate of women farmers in the agricultural working population was 28 percent in 1970, but since then it has increased rapidly, rising to 52 percent in 2006. The farming labor hours of women farmers made up 45 percent of the total family farming labor hours in 2005. The rate of women farmers taking charge of a half of total farm work and above made up approximately 44 percent, indicating that women farmers have become a major farming labor force in a farm household.

However, women farmers still do not occupy a central position in the agricultural management of a farm household. There is a traditional division of farming labor where men work in rice farming while women farmers are assigned with dry-field farming. The women farmers' participation rates in the decision making of input purchase and at producer organizations are relatively low. The rate of women farmers possessing their own farmland is markedly scarce.

The women farmers 60 years of age and above made up 62 percent of the agricultural working women population in 2006, while the rate of women farmers 40 years of age and below was approximately 3 percent. This implies that the aging of women farmers and the low inflow of

younger women farmers into rural areas are significant problems of Korea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As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have changed, like the decline in farm income and changes in social atmosphere, the number of women farmers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ies through the commencement of an agricultural enterprise or by entering an off-farm work has been increasing. The activities of women farmers are prominent in making and selling traditional local foods. Such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farmers are evaluated to have influence on the reinforcement of women's social and economic position and the realization of women's rights.

Local community activities performed by younger women farmers such as caring for local elders and helping local festivals are active. Active participation of women farmers is more required for rural tourism and the exchang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at have the salient traits of service industry. Furthermore, some women farmers are recently branching out into playing local community leadership roles.

The shadow wages of unpaid "family women farmers" are estimated using farm-level cross-sectional data from 2005. Such measurements are obtained from the duality theorem for cost function and input distance function. The empirical evidence suggests that the average shadow wage of "family women farmers"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average wage of "hired women farmers" in rural areas. This indicates that it might be under-evaluated if the wage of "hired women farmers" would be applied to evaluate the wage of "family women farmers." In our survey, the women farmers in their 40s and 50s are asked how much they are willing to pay if they employ alternative labor forces for the each role that they are currently performing.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relatively younger women farmers with higher education express that they are more willing to pay for alternative laborers; that is, they tend to evaluate highly their opportunity costs.

The constraints blocking vigorous activities of women farmers in various areas are surveyed. Those are the double burden of farming and housework including childcare, insufficient farming skills and management ability, deficient marketing and information, lacking leadership, and so on. For active women farmers in their 40s and 50s, policy makers should first

of all consider how farming and housework can be well-balanced and how professional abilities required in various activity areas are improved.

Policy directions should be reorganized to correspond with changes in women farmers' roles. Instead of a uniform policy direction which regards women farmers as welfare recipients, it is required to customize policies for women farmers so that they correspond to women's life-cycles and activity development phases.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policy tasks for women farmers by considering the activity development phases reflected by woman's life-cycles.

For women farmers in the entry phase, policy measures to expand the base for fostering new women farmers should be systematically prepared. For women farmers in the developing phase, this study proposes several policy tasks to build a convenient environment for the active participation of women farmers in farming. These tasks include authorization of joint management of farms by women farmers, efficient operation of assistance programs, and establishment of childcare institutions in rural areas and a farm machinery rent system for women farmers. Also, strengthening of educational programs for improving farm skills and management abilities and supporting of women farmers starting an agricultural enterprise are required. For the women farmers in the retirement phase, the policies expanding the farmers' pension system to women farmers and supporting the living of elder women farmers should be prepared before others.

차 례

제1장 서론

| | |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
| 선행 연구 검토 | 4 |
| 연구의 내용 | 8 |
| 연구 범위와 방법 | 9 |

제2장 여성농업인의 활동 실태

| | |
|----------------------------|----|
| 여성농업인의 인적 특성 | 15 |
|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특징 | 20 |
|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실태와 특징 | 29 |
|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 실태와 특징 | 36 |

제3장 여성농업인 역할의 가치 평가

| | |
|---------------------------|----|
| 여성농업인 농업노동의 잠재임금 추정 | 43 |
| 여성농업인 역할의 기회비용 평가 | 53 |

제4장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별 제약요인과 정책수요

| | |
|-------------------------|----|
|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별 제약요인 | 63 |
|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별 정책수요 | 71 |

제5장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 | |
|------------------------------|----|
|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 전망 | 81 |
| 여성농업인의 역할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84 |

제6장 요약 및 결론

| | |
|-----------------------------------|-----|
| 요약 | 107 |
| 정책적 시사점 | 113 |
| 부록 1 여성농업인 농업노동의 잠재임금 추정 모형 | 117 |
| 2 일본의 여성농업인 현황과 정책 | 121 |
| 일본의 여성농업인 현황 | 121 |
| 일본의 여성농업인 정책 | 135 |
| 참고 문헌 | 147 |

표 · 그림 차례

| | |
|--|-----|
| 표 1. 이용한 자료의 개요 | 12 |
| 표 2. 여성 농가인구와 여성 농업주종사인구의 변화 추이 | 15 |
| 표 3. 15세 이상 여성 농가인구의 농업종사기간(2005년) | 18 |
| 표 4. 노동유형별 성별 농업노동시간(2005년) | 21 |
| 표 5. 여성농업인 영농활동별 노동투입정도(2003년) | 22 |
| 표 6. 여성농업인의 경영의사결정 참여도(2003년) | 22 |
| 표 7. 회귀분석 결과: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 결정요인 | 25 |
| 표 8. 로짓모형 분석결과: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8 |
| 표 9. 로짓모형 분석 결과: 여성농업인의 농업관련사업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6 |
| 표 10. 기초 통계량 | 49 |
| 표 11. 시간당 남녀 가족노동 잠재임금의 분포 | 50 |
| 표 12. 남녀 평균 잠재임금 차이에 대한 가설검정 | 50 |
| 표 13. 연령대별 가족 여성농업인의 시간당 평균 잠재임금 | 51 |
| 표 14. 영농형태별 가족 여성농업인의 평균 잠재임금 | 51 |
| 표 15. 영농형태별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평균 지불의향 금액 | 55 |
| 표 16. 토빗모형 분석결과: 여성농업인 농사일 기회비용의 결정 요인 분석 | 58 |
| 표 17. 토빗모형 분석결과: 여성농업인 마을일 기회비용의 결정 요인 분석 | 59 |
| 표 18.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SWOT분석 | 83 |
| 표 19.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SWOT분석 | 83 |
| 표 20.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 SWOT분석 | 84 |
| 표 21. 연도별 후계여성농업인 선정 현황 | 86 |
| 표 22. 각 도의 여성농업인 정책 담당 부서 및 업무 내용 (2007년) .. | 104 |
| 표 23. 농업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여성농업인 비율의 추이 | 121 |

| | |
|---|-----|
| 표 24. 성별 연령별 농업취업인구 분포 | 122 |
| 표 25. 성별 연령별 농업 주종사자수 분포 | 122 |
| 표 26.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참여에 대한 의향 | 123 |
| 표 27. 여성 인정농업자 추이 | 124 |
| 표 28. 보수 수취방법에 대한 여성농업자의 의향 | 126 |
| 표 29. 여성농업인 창업의 매출액 분포 | 129 |
| 표 30.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필요조건 | 130 |
| 표 31.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수 추이 | 132 |
| 표 32.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 구성(2006년) | 132 |
| 표 33. 일본의 가족경영협정과 연계된 정책 | 134 |
| 표 34. 제2차 남녀공동참가기본계획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 시책 ... | 137 |
| 표 35. 2007년 농림수산성 남녀공동참가 추진활동 계획(안) | 143 |
| | |
| 그림 1. 여성농업인의 범위 | 9 |
| 그림 2.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 경제활동 지위, 생애주기 구분 | 10 |
| 그림 3. 연구 추진 체계도 | 11 |
| 그림 4. 성별 연령별 농가인구 분포(2006년) | 16 |
| 그림 5. 여성 농업주종사자의 연령 분포(2006년) | 16 |
| 그림 6. 60세 이상 여성 농업주종사자의 특징(2005년) | 18 |
| 그림 7. 30세 이상 여성 농가인구의 학력 분포(2005년) | 19 |
| 그림 8. 여성 농가인구의 연령대별 학력 분포(2005년) | 19 |
| 그림 9.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기여도(2003년) | 21 |
| 그림 10.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유형(2003년) | 31 |
| 그림 11. 농업관련사업 경영농가의 여성농업인 연령분포(2005년) | 32 |
| 그림 12. 농업관련사업 경영농가의 여성농업인 노동 분담 정도 | 33 |
| 그림 13. 농업관련 사업에서 부부의 업무분담 형태 | 34 |
| 그림 14.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 영역(복수 응답) | 38 |
| 그림 15.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 유형(복수 응답) | 38 |
| 그림 16. 시간당 남녀 가족노동 잠재임금의 분포 | 50 |
| 그림 17. 농촌 남녀 농업노동의 고용 임금격차 추이 | 53 |

| | |
|--|-----|
| 그림 18.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 분포 | 54 |
| 그림 19. 연령대별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평균 지불의향 금액 분포 ... | 56 |
| 그림 20. 학력별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평균 지불의향 금액 분포 | 56 |
| 그림 21. 여성농업인으로서 활동상 제약 및 어려움 경험 정도 | 63 |
| 그림 22. 영농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이 겪는 애로사항 | 65 |
| 그림 23. 농외소득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이 겪는 애로사항 | 67 |
| 그림 24. 지역사회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이 겪는 애로사항 | 68 |
| 그림 25. 과중한 노동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 | 71 |
| 그림 26. 자녀 보육 및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 72 |
| 그림 27.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방안 | 72 |
| 그림 28. 여성농업인의 농산물가공 및 농촌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 | 73 |
| 그림 29.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 활성화 방안 | 73 |
| 그림 30.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수요 | 75 |
| 그림 31. 후계여성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 | 76 |
| 그림 32. 젊은 여성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선결과제: 한국농업대학 여학생 설문조사 결과 | 77 |
| 그림 33. 젊은 여성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선결과제: 중장년 여성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 77 |
| 그림 34. 한국농업대학 여학생이 원하는 향후 영농 참여 형태 | 89 |
| 그림 35. 한국농업대학 여학생의 향후 농업관련사업 종사 의향 | 89 |
| 그림 36. 여성농업인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영농 분포(복수 응답) ... | 122 |
| 그림 37. 여성농업인의 보수 및 급여 수취 현황 | 124 |
| 그림 38. 여성농업인의 보수 수취금액 비율 분포 | 125 |
| 그림 39. 한 달 수취 보수액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 비율 분포 | 126 |
| 그림 40. 여성농업인의 창업활동 추이 | 127 |
| 그림 41. 여성농업인의 창업활동 내역(복수 응답) | 128 |
| 그림 42. 여성농업인 창업의 매출액 분포 | 128 |
| 그림 43. 창업한 여성농업인의 연령 분포 | 129 |
| 그림 44. 가족경영협정 계약내용(복수 응답) | 133 |
| 그림 45. 가족경영협정 체결 대상 범위 | 133 |

제 1 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산업화에 따른 이농으로 농가의 가족관계가 부부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농업의 주종사 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1970년 28%에서 2006년 52%로, 지난 35년간 2배 정도 증가하였다.

과거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가정주부, 농업보조자라고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젊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역할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원예, 축산, 낙농, 버섯 등의 생산과 친환경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농산물 가공업, 관광농원 등의 농외소득 분야에서는 여성농업인 CEO도 등장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은 농가경제 내에서는 농업과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주체이며, 국가경제 전체로 볼 때는 농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이다. 더 나아가 지역개발과 사회활동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그러나 가치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은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왔다.

남성 중심의 문화와 제도적 틀 안에는 여성농업인의 경제 및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제약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이로 인해서 여성농업인은 역할에 상응하는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농업의 주체인력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농가인구 고령화와 소비자 선호 변화 등의 농업·농촌 여건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은 더 넓어지고, 역할과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의 핵심인력으로 부상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과 활동성과에 향후 농업 경쟁력과 농촌 발전은 크게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활동유형별 실태와 역할 수행에서 부딪히는 제약요인을 파악하고, 이런 제약요인을 해결하면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4 서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별 실태와 가치 평가를 통해서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는 역할의 경제적 중요성을 밝히는 한편, 경제 및 사회활동 수행에서 부딪히는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여성농업인이 경제 및 사회활동 주체로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행 연구 검토

■ 여성농업인 실태 조사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의 조사 등)에 근거하여 농림부는 2003년부터 5년마다 여성농업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림부의 용역을 받아 여성개발원 김영옥·김이선(2003)은 2000년 농업총조사의 전국 농가에서 무작위 층화 추출된 1,500여 농가의 15세 이상 여성농업인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가구현황,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현황, 의사결정 관여도, 농업에 대한 인식, 복지 실태, 정책 수요 등이었다.

2003년 이전에도 여성농업인의 실태에 대한 조사는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사가 특정 지역 또는 단체에 소속된 여성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중심이어서 조사 대상자, 조사방법 등에서 표본의 대표성과 신뢰도가 낮아 조사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다.

한얼경제사업연구원(1999)의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1,300여 명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제생활, 농업노동, 보건·복지·교육 부문 실태 및 요구사항, 지역활동 및 남녀평등의식, 농업 및 농촌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다루고 있다.

김주숙(1990, 1998)은 경기도내 8개 마을을 대상으로 22년간 3차례의 조사를 실시하여 농촌사회의 변화, 농촌가구 구성의 변화, 농촌여성의 사회

적 태도의 추이를 동태적으로 파악한 바 있다.

김이선(1997), 정기환(1997) 등은 농업환경 변화가 여성의 농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 및 거시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여성이 영농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노동부하량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영농의 보조자로 머물러 있는 현황을 제시하였다.

김영옥·이병기(2000)는 199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이농과 그에 따른 농업인구구조의 변화가 여성의 농업참가 및 영농형태에 미친 변화를 분석하였다. 남녀 농업경영주의 경영특성을 농업종사유형, 농업경영특성, 영농종사기간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고 농업 경영특성은 다시 경지규모, 영농형태, 위탁영농, 농산물판매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김경미 외(2004, 2005)는 영농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유형을 독립경영주, 준경영인, 협업/공동경영주, 농업보조자, 임금근로자로 구분하고 유형별 영농의사결정 참여 수준과 영농의사결정 및 지역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설문조사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딸기, 오이, 장미, 사과, 느타리버섯 작목당 30명씩 총 150명의 여성농업인을 설문조사하였다.

■ 여성농업인의 노동 가치와 애로사항

최윤지 외(2002)와 유소이 외(2003)는 180개 미맥 농가대상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방법론으로는 총합적 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 및 잠재적 임금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농업인의 연간 농업노동 가치는 8~10조 원, 가사노동 가치는 4~12조 원으로 계측되었고, 여성농업인의 노동 가치는 국내총생산의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기환(1997)은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신체 생리적 차이에 의한 경제활동 제약, 가부장적 가치관에 의한 여성의 참여 제한, 노동 분업 체계에 의한 여성 노동의 주변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제도적

차별 등을 제시하였다.

김경미 외(2006)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서 겪는 불평등 문제를 유형별로 사례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불평등 문제는 사고 등에 대한 보상 및 농업노동가치의 미반영, 재산보유 및 소득기여도의 미반영, 농업종사 사실의 불인정, 정책 및 경제활동의 상대적 제한성 등을 들 수 있다. 법적, 제도적 지위향상 방안으로는 실질 농업종사 사실 인정, 정책 및 신용의 접근성 개선, 농업노동 가치의 인정 및 반영, 관련부서 및 단체 등과의 협력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 방안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여성농업인에 관한 연구는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관계, 열악한 농촌의 여성복지 등의 문제를 사회갈등론적 입장과 여성해방론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8년 3월 농림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면서 농업·농촌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 인력의 대안으로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회 및 정책적 수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정기환(1997)은 농가 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및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제약 등을 조사·분석하여 여성농업인의 전문 경영인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성농업인의 노동생산성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농작업 분야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 및 보급, 여성농업인을 위한 별도의 전문 교육 과정 설치·운영, 출산, 육아 등의 여성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적합한 교육 방식의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여성농업인에게 교육 참여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여성농업인에게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전문가 자격 인증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영농기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에 필요한 문화, 교양, 취업교육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김영옥·김이선(1999)은 전문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으로 여성농업인 생산성 향상 전략수립, 후계인력육성제도 개편, 교육의 전문성 제고, 농기계 개발 및 농기계 교육 개편, 작목반 및 영농조합의 여성참여 확대, 환경농업 분야의 여성인적자원 개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호철 외(2002)는 대구 근교 지역 여성농업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농업인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이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 영농교육, 일반교양, 자녀교육, 건강분야 등에 치우쳐 있고 교육기관 간에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는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지도력, 경영능력, 정보 등에 대한 교육 훈련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교육 목표 설정과 교과 및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정기환(2002)은 여성농업인 교육 훈련이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서 부분적,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초 과정의 반복 실시가 많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교육기관간의 중복으로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한 사회교육 기관 실태 분석과 여성농업인 교육의 만족도와 새로운 수요를 분석하여 여성농업인 사회교육사업의 체계화와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사회교육 추진 방식의 개선은 교육과정의 세분화와 전문화, 교육 훈련사업의 분야별 단계 설정, 교육 훈련 단계 설정에 따른 표준 교과 설정, 과정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및 자격증 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기존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전문화와 네트워킹, 교육기관 간의 교육 프로그램 연계에 따른 학사 및 교과관리,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 교육을 관리할 중앙단위 관리기구 설립 등을 세부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허미영·박민선(2004)은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성과참여, 재산참여, 의사결정참여(전략적, 관리적, 일상적 의사결정), 경영대표권의 4가지 지표를 설정하였고, 이러한 지표들을 기준으로 5개 작목 150농가의 부부 30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경영참여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전문 여성농업경영인의 육성을 위해 농업법인화와 일본의 가족경영협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연구의 차별성

여성농업인 관련 선행연구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관련된 연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영농활동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과 지역사회활동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활동이 가장 왕성한 40, 50대의 중장년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별 제약요인 및 정책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의 역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기존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실태와 노동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단편적인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약한 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표본 대표성이 있는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005년 농업총조사, 2005년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등의 전국단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계량분석을 강화하였다. 특히, 표본 대표성이 높은 신뢰할 만한 자료와 발전된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여성농업인의 잠재임금 (shadow wage)을 계측하였다.

한편, 전국단위의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가 부족한 농외소득,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실태 파악과 활동영역별 제약요인 및 정책 수요 분석의 보완을 위해서 설문 및 심층사례조사 등의 정성적인 연구방법도 병행하였다.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별 실태와 특징 분석,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가치 평가,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별 제약요인과 정책수요 분석, 여성농업인의 역할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제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여성농업인의 인적특성을 파악하고 영농활동, 농외소득활동, 지역사회활동의 실태와 특징을 분석한다.

제3장은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에 대한 잠재임금을 추정하고, 여성농업인 스스로가 평가한 기회비용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 활동 가치를 분석한다.

제4장은 중장년 여성농업인 대상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별 제약요인과 정책수요를 분석·평가한다.

제5장은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에 따른 역할 활성화 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연구 범위와 방법

■ 연구 범위

이 연구의 목적은 농가경제와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여성농업인의 범위를 만 15세 이상의 여성으로 농업에 주종사하고 있거나 농업과 병행하여 농업관련 농외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종사자로 규정한다. 농업 이외 타 직업에 취업한 15세 이상 농가 여성은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1. 여성농업인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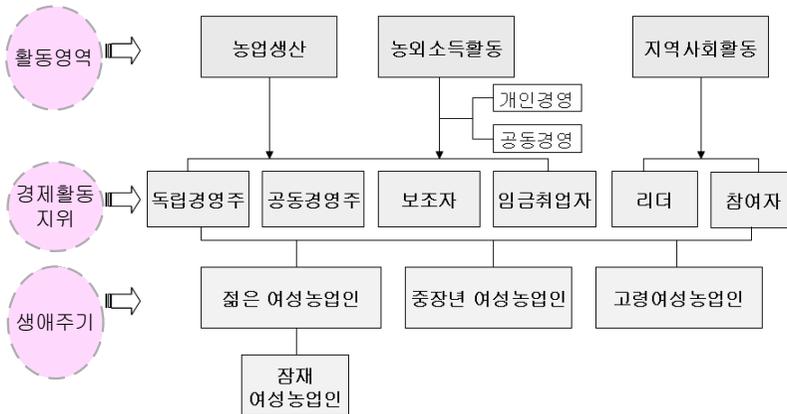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6년 농업기본통계.

이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활동 영역을 크게 영농활동, 농외소득활동(농산물 가공 및 유통, 농촌관광 등), 지역사회 활동 등으로 구분한다. 여성농업인의 주부로서의 역할은 논의하지 않는다.

경제활동 지위에 따라 여성농업인은 독립경영주, 공동(또는 협업)경영주, 보조자, 임금취업자 등으로 분류된다.¹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의 참여 형태는 개인경영형태와 공동경영사업체(예: 영농조합법인 등)에 취업하는 형태로 구분된다.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은 리더와 참여자로 구분된다.

생애주기에 따라 여성농업인은 40세 미만의 젊은 여성농업인, 40대와 50대의 중장년 여성농업인,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여성농업인으로 구분된다. 이 밖에 아직 농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향후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 여성농업인, 한국농업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도 포함된다.

그림 2.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 경제활동 지위, 생애주기 구분



1 김경미 외(2004, 2005)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을 독립경영주, 준경영인, 협업/공동경영주, 농업보조자, 임금근로자로 세분화하였으나, 이는 역할유형보다는 경제활동상의 지위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부 중심의 가족경영이 다수인 우리나라 농가에서 여성농업인 지위를 세분화하는 기준은 모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참여도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지위를 독립경영주, 공동경영주, 농업보조자, 임금취업자로 구분한다.

■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농업총조사」(통계청, 2005), 「농가경제통계」(통계청, 200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농림부, 2003), 중장년 여성농업인 대상 설문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한국농업대학 소속 여학생 대상 설문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2005년 「농업총조사」를 이용하여 15세 이상 여성농업인의 인적 특징을 파악하고,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2005년 「농가경제통계」를 이용하여 무급여성농업인 농업노동의 잠재임금을 추정하였다.

제4회 한국여성농업인전국대회(전북 무주, 9월 4일~5일)에 참석한 500명의 40대, 50대의 중장년 여성농업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영역별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다. 또 한국농업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후계여성농업인의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다.

그림 3. 연구 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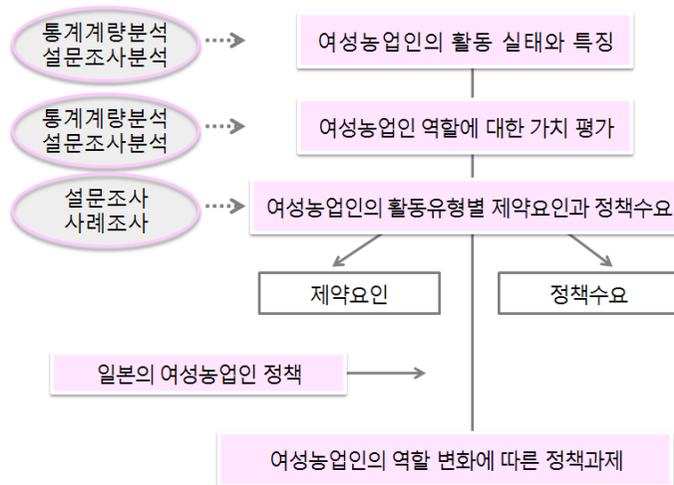


표 1. 이용한 자료의 개요

| | 농업총조사 (2005년) | 농가경제조사 (2005년)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2003년) | 증장년 여성농업인 설문조사(2007년) |
|--------------------------|--|--|--|--|
| 조사기관 | 통계청 | 통계청 | 농림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10141호 | 통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지정통계 10142호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8조 | - |
| 조사주기 | 매 5년 | 매년 | 매 5년 | 1회 |
| 표본추출 방법 | 농가전수조사 | 층화추출법 (2000년 농업총조사의 1,384천 농가 모집단) | 층화추출법 (2000년 농업총조사의 1,384천 농가 모집단) | 무작위추출 |
| 표본수 | 15세 이상 농업주종사 여성인구 1,102,321명(52%) | 3,048 농가의 여성농업인 (배우자) | 여성농업인 1,521명 | 500명의 여성농업인단체 회원 여성농업인 |
|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내용 | 여성농업인의 인적특성, 고령여성농업인 실태 등 |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실태, 잠재임금추정 등 |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 경제활동 참여 결정요인 분석 등 | 영농지위, 농외소득 및 지역사회활동 특성, 역할가치평가, 활동유형별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등 |
| 표본여성 농업인 연령분포 | 평균 58.5세 40세 미만: 5.5% 40대: 14.9% 50대: 24.3% 60대: 34.2% 70세 이상:21.1% | 평균 57세 40세 미만: 5.1% 40대: 20.2% 50대: 26.1% 60대: 32.5% 70세 이상:16.1% | 평균 58.2세 40세 미만: 5.7% 40대: 16.9% 50대: 27.1% 60대: 36.3% 70세 이상:14.1% | 평균 46.3세 40세 미만: 11.7% 40대: 59.8% 50대: 24.1% 60대: 4.4% 70세 이상: 0% |

제 2 장

여성농업인의 활동 실태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연령, 학력 등의 인적 특성을 살펴 보고,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농외소득활동, 지역사회활동 등의 활동영역 별 실태와 특징을 분석한다.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특징은 농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등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과 지역사회활동 실태에 관해서는 표본 대표성이 있는 공식적인 통계가 거의 없어 중장년 여성농업인 500여 명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태를 파악한다. 설문대상의 특성상 전국 평균과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40, 50대 중장년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과 지역사회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므로,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인적 특성

우리나라 농가인구에서 여성 농가인구의 비중은 1970년 50.3%, 2000년 51.1%, 2006년 51.4%로 절반을 약간 넘는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의 주종사 인구 중 여성 비중은 1970년 28.3%에서 2006년 52.1%로, 지난 35년 동안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이 활발해졌음을 나타낸다.

표 2. 여성 농가인구와 여성 농업주종사인구의 변화 추이

단위: 천 명

| | | 1970 | | | | 2000 | | | | 2006 | | | |
|-------------|-----------|--------|-------|-------|------|-------|-------|-------|------|-------|-------|-------|------|
| | | 계 | 남성 | 여성 | % | 계 | 남성 | 여성 | % | 계 | 남성 | 여성 | % |
| 농가 인구 | 전체 | 14,422 | 7,164 | 7,258 | 50.3 | 4,031 | 1,971 | 2,060 | 51.1 | 3,304 | 1,607 | 1,697 | 51.4 |
| | 15세 이상 | 8,150 | 3,932 | 4,218 | 51.8 | 3,572 | 1,729 | 1,843 | 51.6 | 2,989 | 1,437 | 1,552 | 51.9 |
| 농업주종사 인구 | | 4,119 | 2,952 | 1,167 | 28.3 | 2,408 | 1,144 | 1,264 | 52.5 | 1,975 | 947 | 1,028 | 5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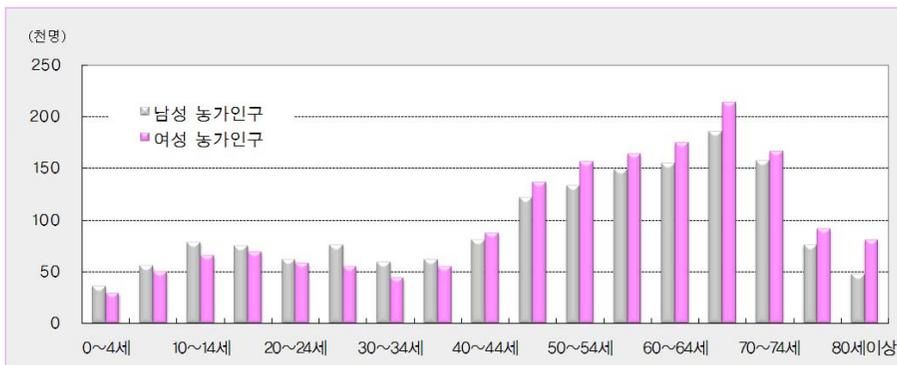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 각 연도.

16 여성농업인의 활동 실태

2006년 성별 연령별 농가인구 분포를 보면, 40세 미만의 연령에서는 남성농가인구가 여성농가인구보다 더 많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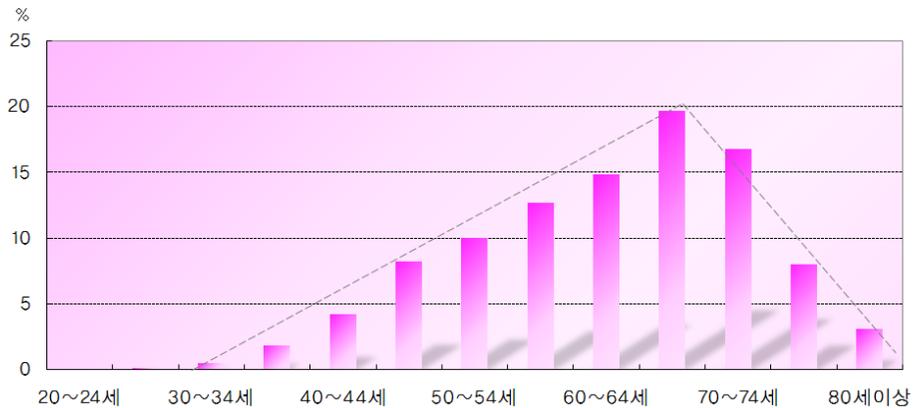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젊은 여성 농가인구의 높은 이농현상은 결혼적령기 농가인구의 성비 불균형 현상으로 이어져 농촌 총각 결혼문제와 더불어 농촌사회 재생산의 위기를 가져왔다. 이에 농촌사회에서 국제결혼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림 4. 성별 연령별 농가인구 분포(2006년)



자료: 통계청, 2006년 농업기본통계.

그림 5. 여성 농업주종사자의 연령 분포(2006년)



자료: 통계청, 2006년 농업기본통계.

한편, 45세 이상에서는 여성농가인구가 남성농가인구를 초과하여, 고령 여성농가인구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여성은 일반적으로 연상의 남성과 결혼하고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며, 재혼의 비율도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하여 훨씬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성 농업주종사자의 연령분포는 오른쪽으로 치우친 삼각형 분포이다 <그림 5>. 2006년 60세 이상의 여성 농업주종사자는 62%로 여성농업인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40세 미만의 젊은 여성농업인의 비중은 3% 이하로 매우 낮다.

40세 이하 여성의 영농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자녀양육 등의 가사노동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젊은 여성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고령화와 신규 젊은 여성농업인의 유입 저조는 농업·농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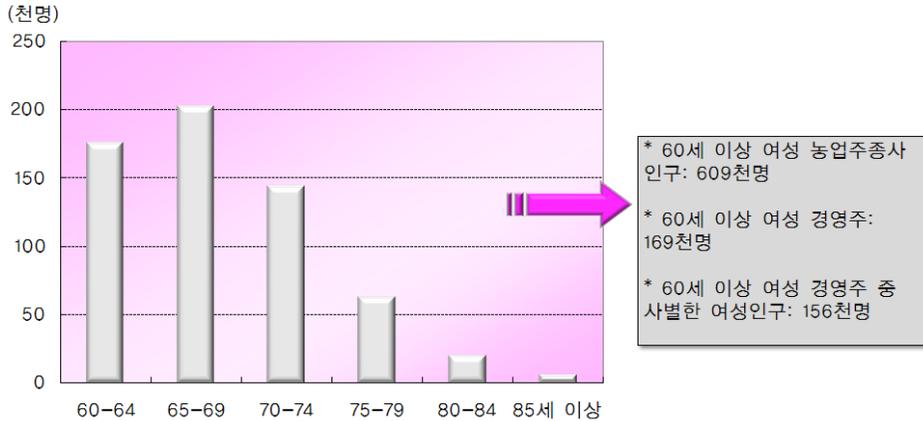
2005년 60세 이상 여성 농업주종사자의 25.7%가 남편과 사별하여 농가의 대표가 되었다.² 2005년 농업총조사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독거여성노인 가구의 50%가 논벼 영농형태이며, 19.8%가 채소, 16.1%가 일반밭작물 영농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논벼 농가의 경우,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 등의 작업에서 전부위탁 비율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독거여성노인 대부분은 위탁영농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다. 채소 농가의 경우는 88% 이상이 노지채소를 생산하고 있다. 경지면적이 0.5ha 미만 비중이 61%로 영농규모는 매우 영세하다. 연평균 농축산물판매소득이 500만 원 미만 비중도 78%로 저소득 농가가 대부분이다.

2005년 농가 여성의 62%가 1년에 6개월 이상, 8%가 3~6개월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70% 이상의 여성 농가인구가 1년에 90일 이

2 2005년 농업총조사에서 여성이 경영주인 농가는 전체 농가의 20.5%(21만 6,706 농가/105만 6,202농가)이다. 그러나 여성 경영주 농가의 77%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86%가 남편과 사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죽음으로 고령 여성이 농가의 대표가 된 경우가 대다수이며 대부분이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매우 낮은 저소득 농가이다.

상 농업에 종사하여 농업·농촌기본법에 규정된 법적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³

그림 6. 60세 이상 여성 농업주종사자의 특징(2005년)



자료: 통계청, 2005년 농업총조사.

표 3. 15세 이상 여성 농가인구의 농업종사기간(2005년)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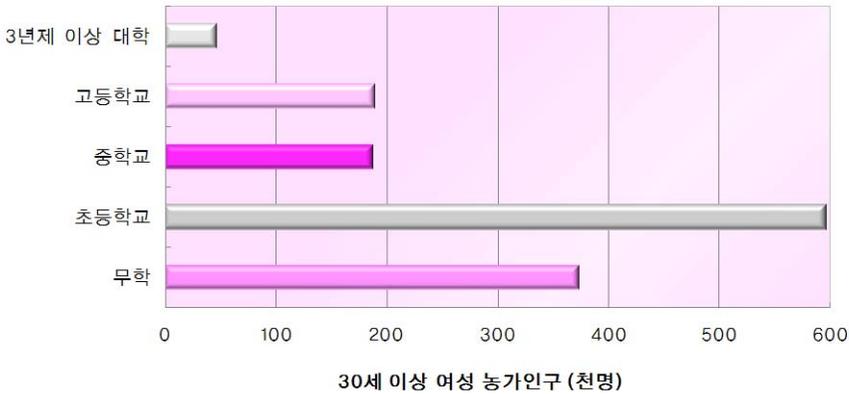
| 농업종사기간 | 인 원 | 비 율 |
|--------|-------|-------|
| 없음 | 379 | 23.7 |
| 1개월 미만 | 31 | 1.9 |
| 1~3개월 | 72 | 4.5 |
| 3~6개월 | 127 | 8.0 |
| 6개월 이상 | 992 | 62.0 |
| 합 계 | 1,600 | 100.0 |

자료: 통계청, 2005년 농업총조사.

3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인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은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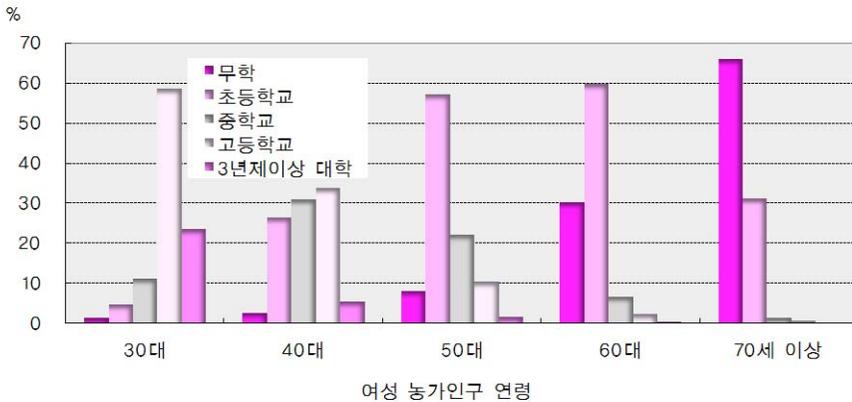
2005년 30세 이상 여성 농가인구의 43%가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수준이고 27%가 무학이다. 30대 여성 농가인구의 60%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 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여성 농가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50대, 60대는 60% 정도가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 수준이다. 70대는 무학인 여성이 65%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학력수준이 가장 낮다.

그림 7. 30세 이상 여성 농가인구의 학력 분포(2005년)



자료: 통계청, 2005년 농업총조사.

그림 8. 여성 농가인구의 연령대별 학력 분포(2005년)



자료: 통계청, 2005년 농업총조사.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특징

■ 영농활동 실태

평균 농가의 농업노동시간 중 가족 농업노동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우리나라 농업은 부부노동력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가족 농업노동시간 중 여성 가족노동시간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부부 중심 농가경영의 특징을 보여준다.

전체 고용노동에서 여성 고용노동시간이 84%를 차지하고 있어 임금 취업자로서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도 남성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품앗이의 경우도 여성 품앗이 노동시간이 남성보다 많다.

여성농업인은 농번기에 하루 평균 9.3시간 농사일과 평균 2.5시간 가사노동(가족규모 3~4인 기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번기와 농한기를 구분하지 않아도 1일 평균 농업노동시간은 8.3시간으로, 하루 10시간 이상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영농형태별 농가의 남녀 농업노동시간을 비교하면, 농번기 기준 미택농가는 남편 10시간 5분, 부인 10시간 57분, 시설원예는 남편 11시간 36분, 부인 12시간 2분, 과수농가는 남편 10시간 53분, 부인 11시간 4분, 축산농가는 남편 10시간 15분, 부인 10시간 55분으로 나타났다(농촌진흥청, 2005년 농업인 생활시간 조사).

또, 농림부의 조사결과(2003)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44%가 농사일 전체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일을 거의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비중도 2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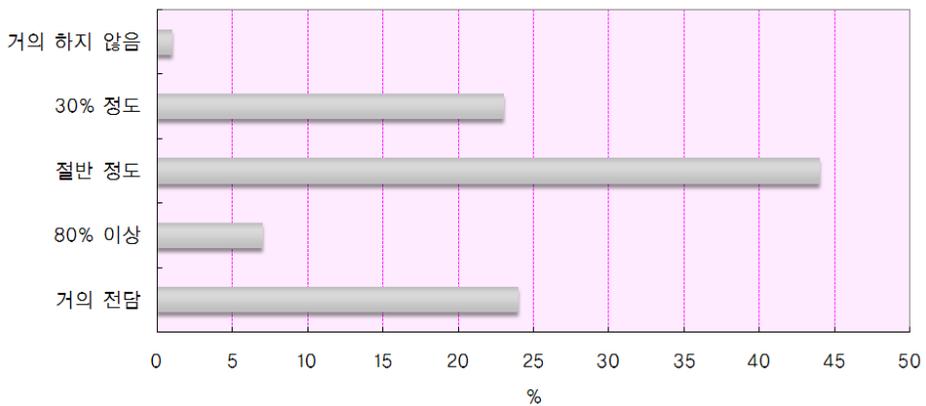
표 4. 노동유형별 성별 농업노동시간(2005년)

단위: 시간

| 항 목 | 연평균 농업노동시간 |
|----------------------|--|
| 합 계 | 1,470 |
| 가족노동 - 남자 - 여자 | 1,179 (100%) 652 (55%) 527 (45%) |
| 품앗이 - 남자 - 여자 | 46 (100%) 18 (39%) 28 (61%) |
| 고용노동 - 남자 - 여자 | 200 (100%) 32 (16%) 168 (84%) |
| 일손돕기 - 남자 - 여자 | 46 (100%) 27 (59%) 19 (41%) |

자료: 통계청, 2005년 농가경제조사.

그림 9.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기여도(2003년)



자료: 농림부,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 5. 여성농업인 영농활동별 노동투입 정도(2003년)

단위: %

| | 논농사 | 밭농사 | 시설채소/ 화훼 | 과 수 | 축 산 | 농산물판매 | 농산물가공 |
|-------|-------|-------|-------------|-------|-------|-------|-------|
| 주로 내가 | 21.3 | 51.6 | 26.5 | 19.5 | 22.9 | 28.4 | 12.8 |
| 주로 남편 | 42.8 | 8.7 | 7.8 | 25.4 | 29.4 | 38.5 | 29.8 |
| 둘이 비슷 | 32.0 | 38.3 | 63.3 | 52.4 | 42.9 | 30.4 | 48.9 |
| 기타 가족 | 3.9 | 1.5 | 2.4 | 2.7 | 4.9 | 2.7 | 8.5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농림부,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논농사는 남편, 밭농사는 여성농업인이 주로 담당하는 전통적인 농업노동 영역구분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논농사의 경우는 42.8%가 남편이 주로 하고 있으며, 밭농사의 경우 51.6%가 여성농업인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시설채소/화훼, 과수, 축산은 여성농업인과 남편이 함께 하는 비율이 각각 63.3%, 52.4%, 42.9%로, 부부 협업 노동 구조를 나타낸다.

품사기, 작물 결정, 농사일정 결정 등 농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비교적 높은 반면, 영농자금 조달이나 농지의 매매 및 임대차 등의 생산수단과 관련된 의사결정,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등의 생산자조직 가입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여성농업인의 경영의사결정 참여도(2003년)

단위: %

| | 농지매매, 임차 | 작물 결정 | 영농자금 조달 | 농사 일정 | 품사기 | 출하 및 판매 | 작목반, 영농조합 |
|----------|-------------|----------|------------|----------|------|------------|--------------|
| 내가 주로 결정 | 19.0 | 23.0 | 19.0 | 23.4 | 27.1 | 22.9 | 18.5 |
| 어느 정도 관여 | 54.7 | 57.1 | 50.3 | 54.9 | 55.2 | 51.8 | 37.9 |
| 거의 관여 안함 | 26.3 | 19.9 | 30.7 | 21.7 | 17.8 | 25.3 | 43.5 |
| 합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자료: 농림부,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소유농지 중 여성 명의로 된 농지가 전혀 없는 농가가 78%로 여성농업인의 생산자원 소유 정도는 매우 낮은 상태이다.

2004년 말 기준 전국 1만 6,950개의 작목반에 37만 7,000여 명의 농업인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 여성의 참여비율은 4.4%이고,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참여 여성은 3.1% 수준으로, 여성농업인의 생산자조직 참여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농림부, 2006).

이와 같이 농업노동 비중 증가 등 여성농업인 노동이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경영의사결정, 생산자조직 참여 등에서 주체적 역할이 미흡하여 여성농업인 농업노동의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상태이다.

■ 영농활동 특징 분석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과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원자료이다.⁴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 결정요인 분석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귀(regression) 모형을 설정하였다.

4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여성농업인 평균연령은 58.2세이며, 60세 이상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여성농업인의 비중은 77%로 대부분 저학력자이다. 81%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농업인이며, 42%가 부부 중심의 가구 형태이고 73%가 전업농가이다.

$$(1) y_i = x_i\beta + u_i$$

여기서 y 는 여성농업인의 1일 농업노동시간이고, 설명변수 벡터 x 는 여성농업인의 인적특성, 가구특성, 직업의식 등을 나타낸다.

분석 모형은 여성농업인의 연령, 학력, 영농형태별 경지면적, 자산, 노동유형, 가족특성 등의 인적 및 가구특성을 설명변수로 하는 모형I와 모형I에 여성농업인 의식 변수를 포함한 모형II로 구분하고 각각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두 모형은 모두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70세 이상 연령보다 다른 연령대에서 농업노동시간이 더 많았으며, 특히 40대, 50대의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시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상의 학력에 비해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졸의 학력을 가진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수준을 가진 여성농업인은 가장 많은 농업노동시간을 투입하고 있었다.

논, 밭, 과수원, 하우스 경작면적이 많을수록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정도는 높으며, 농가자산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총예금액이 많을수록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은 감소하였다. 따라서 경작면적이 많을수록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참여도는 높으나, 농가자산이 많을수록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투하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할수록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추정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농외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모형II의 분석결과 농업을 직업이라고 인식할수록, 본인을 전문적인 여성농업인으로 인식할수록 농업노동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의식도 농업노동시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7. 회귀분석 결과: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 결정요인

| 변 수 | | 모형I | 모형II |
|-------------------------------|----------------------|-----------|------------|
| | | 추정치 | 추정치 |
| 연령 | 39세 이하 | 1.277 | 1.014 |
| | 40대 | 1.822*** | 1.604*** |
| | 50대 | 1.799*** | 1.607*** |
| | 60대 | 1.162*** | 1.029** |
| 학력 | 초등학교 졸업 이하 | 2.469*** | 2.255*** |
| | 중학교 졸업 | 1.872*** | 1.590** |
| 논 경작면적(평) | | 0.568*** | 0.477*** |
| 밭 경작면적(평) | | 0.410** | 0.366** |
| 과수원 경작면적(평) | | 0.689*** | 0.635*** |
| 하우스 경작면적(평) | | 0.618* | 0.442 |
| 농가의 총 예금액(원) | | -0.530* | -0.476 |
| 가사활동 노동시간 | | 0.048 | 0.066 |
| 농외활동 노동시간 | | -0.142*** | -1.1318*** |
| 만 6세 미만의 자녀 존재 여부 | | -0.070 | -0.010 |
| 농업에 대한 인식 ¹ | | | 1.122*** |
| 여성농업인의 위상에 대한 인식 ² | | | 0.422 |
| 농업종사 인식 ³ | 농업전문가가 되고 싶다 | | -0.1400 |
| | 여성농업인도 일하는 여성 | | -0.095 |
| | 농협, 조직 활동은 남자의 몫 | | 0.001 |
| | 새로운 기술, 정보에 대한 높은 관심 | | -0.084 |
| | 여성취업은 수입의 보조적인 수단 | | 0.117 |
| | 가사,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 | | 0.583*** |
| 상수항 | | 5.255*** | 3.926*** |
| F-test | | 13.62*** | 11.36*** |

- 주: 1. 농사일을 직업이라고 인식하면 1, 아니면 0
 2. 여성농업인을 전문적인 여성농업인이라고 생각하면 1, 집안일을 돕는 보조적인 농업인이라고 생각하면 0
 3. 여성농업종사에 대한 인식: 1: 정말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4: 전혀 아니다

추정을 위해 제거된 여성농업인 연령과 교육수준 더미변수는 '70세 이상'과 '고졸 이상' 학력임.

* p<0.05; ** p<0.01; *** p<0.001

여성농업종사에 관한 인식조사에서 여성이 일을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농업인일수록 농업노동시간은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내가 짓는 농사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여성농업인일수록 농업노동시간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결정요인 분석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로짓(logit) 모형을 설정한다.

$$(2) y_i^* = x_i\beta + u_i$$

여기서 y_i^* 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을 나타내는 관측 불가능한 잠재변수, x_i 는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벡터를 나타낸다.

모형 (2)은 관측 가능한 더미 변수 y_i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y_i = 1(\text{나는 전문 농업인이다}) \text{ if } y_i^* > 0$$

$$y_i = 0(\text{나는 전문 농업인이 아니다}) \text{ if } y_i^* \leq 0$$

관찰 가능한 y_i 와 x_i 이 주어진 경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σ^2 인 로지스틱(logistic) 분포를 가정하면, 로짓 모형은 다음의 분포를 따른다(Maddala, 1983).

$$(4) \Pr(y_i = 1|x_i) = F(x_i\beta), \quad i = 1, \dots, n$$

여기서 $F(x_i\beta) = [1 + \exp(-z)]^{-1}$ 이다.

위 모형의 추정을 위한 log-likelihood 함수는 다음과 같다.

$$(5) \ln L = \sum_{i=1}^n [y_i \ln F(x_i \beta) + (1 - y_i) \ln (1 - F(x_i \beta))]$$

각 설명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frac{\partial E(y_i | x_i)}{\partial x_k} = F(\beta' x) [1 - F(\beta' x)] \beta_k$$

분석 모형은 여성농업인의 인적 및 가구특성, 교육 참여, 생산자조직 및 단체 참여, 의사결정관여도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모형I와 의사결정관여도를 제외한 모형II에 농업종사 의식 변수를 포함한 모형II로 구분하여 각각 로짓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두 모형은 모두 통계적으로 1%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39세 이하 여성농업인보다 40대, 50대, 60대 여성농업인이 본인을 전문적인 농업인으로 인식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 영농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연령대에서 농업인 직업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노동시간이 많을수록, 가사노동이 적을수록, 농외노동시간이 적을수록 본인을 전문 농업인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생산, 가공, 유통, 교양, 의식교육 등의 각종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수록 전문적인 농업인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아, 여성농업인 대상 영농교육은 농업 기술 및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직업관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농 의사결정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을수록, 본인을 농업보조자로 인식하는 확률이 높은 반면, 반대로 의사결정을 주로 본인이 결정할수록 전문 농업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농업인 직업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은 영농 의사결정관여도를 높이는 것이다.

여성농업인이 농협,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가입하여 활동할수록 더 높은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해서는 생산자조직 참여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표 8. 로짓모형 분석결과: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변수 | | 모형I | | 모형II | |
|--------------------------------|----------------------|-----------|---------|-----------|---------|
| | | 추정치 | 한계효과 | 추정치 | 한계효과 |
| 연령 | 40대 | 0.996** | 0.2425 | 1.334*** | 0.3158 |
| | 50대 | 1.210*** | 0.2927 | 1.730*** | 0.4026 |
| | 60대 | 1.082*** | 0.2640 | 1.969*** | 0.4549 |
| | 70세 이상 | 0.586 | 0.1454 | 1.735*** | 0.3904 |
| 농업노동시간 | | 0.069*** | 0.0171 | 0.049*** | 0.0121 |
| 가사노동시간 | | -0.062** | -0.0153 | -0.070** | -0.0173 |
| 농외노동시간 | | -0.0360* | -0.0090 | -0.022 | -0.0054 |
|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 참여 여부 ¹ | | 0.299 | 0.0745 | 0.127 | 0.0315 |
| 생산자조직 참여 여부 ² | | 0.5400 | 0.1340 | 0.639* | 0.1577 |
| 여성농업인단체 참여 여부 ³ | | 0.096 | 0.0239 | 0.003 | 0.0008 |
| 의사결정관여도 ⁴ | 농지 매매 및 임대차 | -0.209 | -0.0518 | | |
| | 농사 작물 결정 | -0.164 | -0.0407 | | |
| | 영농자금 대출 | -0.095 | -0.0236 | | |
| | 농사일정 결정 | -0.343 | -0.0850 | | |
| | 고용노동 결정 | -0.491** | -0.1219 | | |
| | 농산물 출하 결정 | 0.256 | 0.0634 | | |
| 농업종사인식 ⁵ | 작목반, 영농조합 가입 | -0.198 | -0.0492 | | |
| | 농업전문가가 되고 싶다 | | | -0.685*** | -0.1703 |
| | 여성농업인도 일하는 여성 | | | -0.462*** | -0.1145 |
| | 농협, 조직 활동은 남자의 몫 | | | 0.339*** | 0.0843 |
| | 새로운 기술, 정보에 대한 높은 관심 | | | 0.021 | 0.0052 |
| | 여성취업은 수입의 보조적인 수단 | | | 0.511*** | 0.1269 |
| 가사,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 | | | -0.092 | -0.0229 | |
| 상수항 | | 0.938* | | -1.179* | |
| LR χ^2 | | 270.03*** | | 284.46*** | |
| Log likelihood | | -913.89 | | -906.67 | |

- 주: 1.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에 최근 3년 동안 참여한 적이 있으면 1, 아니면 0
 2. 생산자조직(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서 활동하고 있으면 1, 아니면 0
 3. 여성농업인단체에 가입하였으면 1, 아니면 0
 4. 의사결정관여도: 1: 내가 주로 결정 2: 어느 정도 관여 3: 거의 관여하지 않음
 5. 여성농업종사에 대한 인식: 1: 정말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4: 전혀 아니다

추정을 위해 제거된 여성농업인 연령 더미변수는 '39세 이하'임.

* p<0.05; ** p<0.01; *** p<0.001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과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40대, 50대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투입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연령대 여성농업인에 초점을 맞춘 영농활동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농업노동을 더 많이 투입하는 여성농업인의 평균 학력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고 노지채소, 과수 등 주로 노동집약적 영농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농업인 농업노동의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한 영농 및 경영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과중한 가사노동과 영유아 자녀의 양육 등은 젊은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나타나, 이들의 영농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과 영유아 자녀 양육 및 교육을 담당하는 보육시설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여성농업인의 위상과 농업종사인식은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과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활성화와 직업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을 직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실태와 특징

우리나라에서 농촌 여성들의 농외소득활동은 196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계기로 조직화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농가 여성들은 농외소득활동 참여를 기피하거나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정금주 외(2004)는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기술과 자본이 없다는 점, 적정한 시설이 없다는 점, 가사일과 농사일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점, 가족노동에 의존하는 농업 실정상 농사일이 우선시되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사회여건 변화로 창업이나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통식품과 향토음식 가공 및 제조, 직거래 유통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이 두드러진다. 농산물 가공업, 관광농원 등의 농관련사업에 대한 젊은 여성농업인의 창업 의향이 높아, 향후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참여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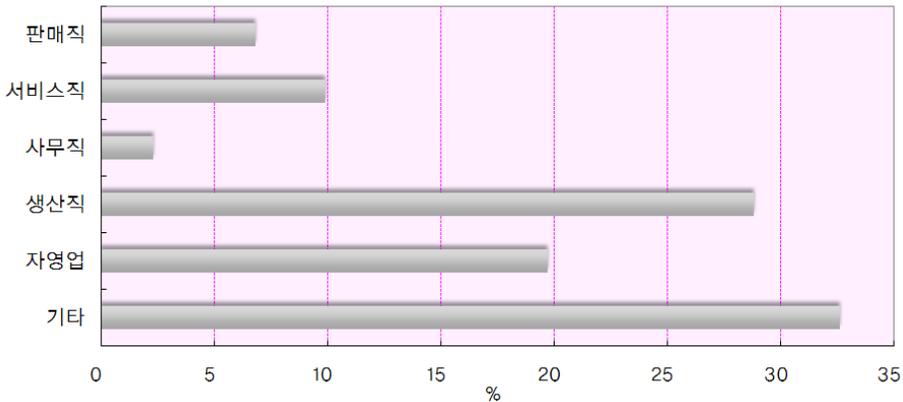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은 자가 또는 지역농산물,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규모사업 자영형태와 영농조합법인 및 마을공동사업장 등에 취업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농가소득 증대, 마을공동체 의식 함양, 전통음식 및 문화 보급, 농한기 유희노동력 활용, 지역자원의 소득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사회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농외소득활동 실태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간 농사 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적이 있는 여성농업인, 즉 농외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은 전체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8.7%(132명/1521명)에 불과하다. 이는 농가나 농업인력 감소와 농업의 규모화 및 전문화 경향에 따른 결과인 동시에 여성농업인이 농외소득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요인이 있음을 나타낸다. 농외소득활동영역을 보면 생산직 근로자가 2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영업으로 19.7%, 서비스직이 9.9%, 판매직이 6.8%이며 사무직은 2.3%이다. 여성농업인이 가장 많이 하는 겸업일은 생산직과 자영업인 것을 알 수 있다. 자영업에는 농산물가공업 등과 같은 농관련사업 창업이 포함된다.

그림 10.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유형(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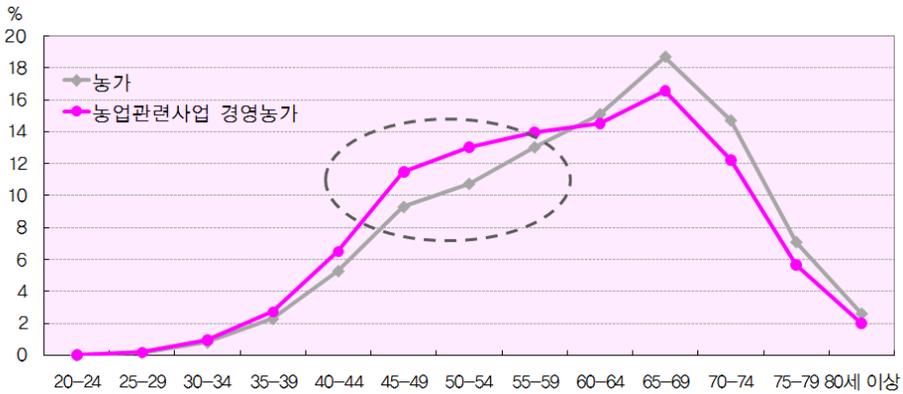
주: 지난 1년간 농사 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여성농업인 대상 조사 결과
 자료: 농림부,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005년 농업총조사에 의하면, 전체농가 중 농업관련사업 경영농가는 7.8%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관련사업은 농산물 직판장 및 직거래, 농가식당, 농가민박, 주말농원, 관광농원, 농산물 가공업 등을 포함한다. 농업관련사업 경영농가의 여성농업인은 일반농가보다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다. 40대, 50대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농산물 가공업을 하고 있는 농가의 여성농업인 연령이 다른 농외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다.

이 연구 중 500명의 중장년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농업인의 53%가 농업관련사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 중 직판장, 직거래사업이 62%를 차지하고 있다.⁵

5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거의 없어 농외소득활동 참여율이 50% 이상인 본 연구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특징을 파악한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는 40, 50대 비교적 농외소득활동이 활발한 여성농업인 단체 소속 여성농업인 대상 설문조사이므로 전국 평균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림 11. 농업관련사업 경영농가의 여성농업인 연령분포(2005년)



자료: 통계청, 2005년 농업총조사.

전체 응답자 중 32%가 직판장, 직거래사업을 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업을 하는 여성농업인은 10%를 차지하였다. 반면 농가식당, 농가민박, 주말농원, 관광농원을 경영하는 여성농업인은 5% 미만이었다.

농산물 가공품의 주요 판매처는 우편택배, 직거래 등을 통하여 개인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고(46%), 그 다음 순위는 한살림, 생협 등의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15%), 5일장 등 지역시장(14%), 소비자단체(11%)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 가공품은 일부 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규모 생산방식이므로 백화점, 할인점 등의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할 물량 확보가 어렵고, 수수료, 재고처리 등의 재정적 부담 때문에 대규모 유통업체에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농산물 가공업체가 영세하여 품질인증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에 납품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상품 및 포장디자인 등이 세련되지 못하고 브랜드가 없어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대부분 단골고객 위주의 입소문에 의존한 소량주문 판매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농외소득활동 특징 분석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참여정도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농업관련사업을 위한 전체 노동에서 본인이 담당하는 노동이 8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38%이고, 32%가 50%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농업관련사업에서도 여성농업인의 노동 비중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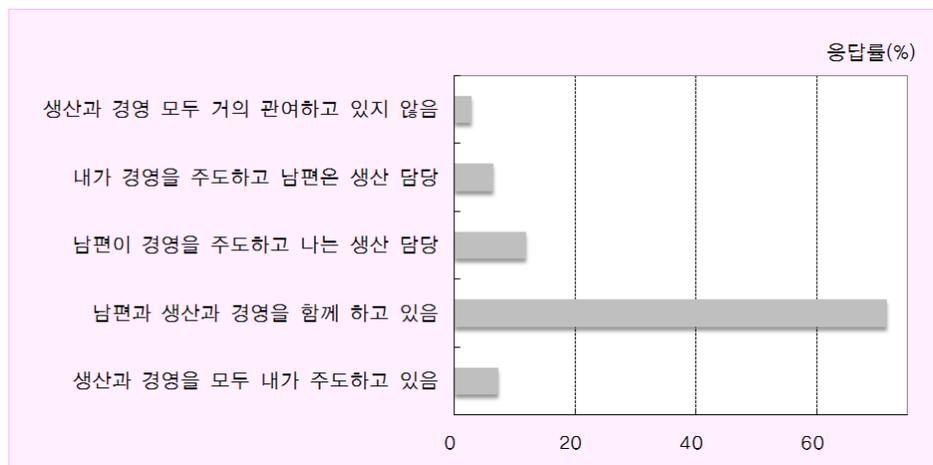
농업관련사업 경영(생산, 운영, 인력관리, 회계, 판매 등)에서 남편과의 업무 분담형태에 대해, 남편과 생산과 경영을 함께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2%로 가장 높았고, 남편이 경영을 주도하고 본인은 생산을 담당한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12%였다. 농업관련사업에 있어서도 절반 이상의 중장년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 농업관련사업 경영농가의 여성농업인 노동 분담 정도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그림 13. 농업관련 사업에서 부부의 업무분담 형태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농업관련사업 경영 또는 참여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① 농가소득에 보탬이 된다(31%) ②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를 넓히고 자아개발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15%) ③ 내 명의의 수입이 있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다(13%) ④ 내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자아성취감을 느낀다(13%) 등으로 나타났다.⁶ 따라서 농외소득활동은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자아실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성농업인의 농관련사업 창업 결정요인 분석

여성농업인의 농관련사업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농산물 및 가공식품류 판매, 또는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창업의향(1: 창업할

6 1989년 설문조사에서는 농외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된 동기로 생활비나 자녀학비 조달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농촌진흥청, 2006).

생각이 있다, 0: 창업할 생각이 없다)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logit)모형을 추정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연령, 노동시간, 컴퓨터 사용 여부, 가족특성 등의 인적 및 가구특성을 설명변수로 하는 모형I와 모형II에 여성농업인 의식 변수를 포함한 모형III을 각각 추정한다. 두 모형은 모두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70세 이상 연령보다 39세 이하, 40대, 50대 연령의 여성농업인의 창업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창업의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시간이 많을수록,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수록 창업의향 확률은 낮아,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이 창업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농업과 관련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성농업인일수록 창업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최근의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 농촌관광사업 등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어, 컴퓨터 사용 능력은 여성농업인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III에서 여성농업인을 전문적인 농업인으로 생각하는 여성농업인일수록 창업할 확률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농업인을 농업생산관련 분야 종사자만으로 인식하여 나타난 결과로, 현재 농사일에 만족하지 못한 여성들이 창업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여성농업인의 농업관련사업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농업인의 창업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젊은 연령대에 초점을 맞춘 창업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농업인 창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사노동과 영유아 자녀의 양육 등을 해결해주는 정책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사업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경영능력의 교육 지원은 창업 여성농업인에게 매우 필요한 정책이다.

표 9. 로짓모형 분석 결과: 여성농업인의 농업관련사업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변수 | | 모형I | | 모형II | |
|-------------------------------|--------|------------|---------|------------|---------|
| | | 추정치 | 한계효과 | 추정치 | 한계효과 |
| 연령 | 39세 이하 | 2.9782** | 0.3906 | 2.7965* | 0.3429 |
| | 40대 | 3.4113*** | 0.4090 | 3.2604** | 0.3714 |
| | 50대 | 2.7957** | 0.2356 | 2.6575** | 0.2113 |
| | 60대 | 2.0107 | 0.1180 | 1.9340 | 0.1088 |
| 농업노동시간 | | 0.0461 | 0.0019 | 0.0404 | 0.0016 |
| 가사노동시간 | | -0.11231* | -0.0046 | -0.1005* | -0.0040 |
| 농업 관련 컴퓨터 사용 여부 ¹ | | 0.4757* | 0.0224 | 0.3807 | 0.0169 |
| 만6세 미만의 자녀 존재 여부 ² | | -0.8130 | -0.0245 | -0.7714 | -0.0230 |
| 농업에 대한 의식 ³ | | | | -0.1398 | -0.0056 |
| 여성농업인의 위상에 대한 인식 ⁴ | | | | -0.3684** | -0.0147 |
| 상수항 | | -5.2442*** | | -4.1235*** | |
| LR χ^2 | | 77.35*** | | 84.43*** | |
| Log likelihood | | -335.24 | | -331.70 | |

주: 1. 농업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면 1, 아니면 0

2.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1, 없으면 0

3. 농사일을 직업이라고 인식하면 1, 아니면 0

4. 여성농업인을 전문적인 여성농업인이라고 생각하면 1, 집안일을 돕는 보조적인 농업인이라고 생각하면 0

추정을 위해 제거된 연령더미변수는 '70세 이상'임.

* p<0.05; ** p<0.01; *** p<0.001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 실태와 특징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는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중요하며, 특히 서비스 산업의 성격이 강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더욱 요구된다. 일본과 유럽의 농촌관광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관광이나 지역개발에 여성농업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선진국의 추세이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지역사회의 수요 증대로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젊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부녀회와 지역봉사활동 등의 지역사회활동이 활발하다.

과거 권위주의 리더십에서 민주적 조정과 관리가 새로운 리더십의 핵심이 되면서 마을리더로서 여성의 역할도 증대되고 있다.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농촌사회에 양성평등 분위기가 확산될수록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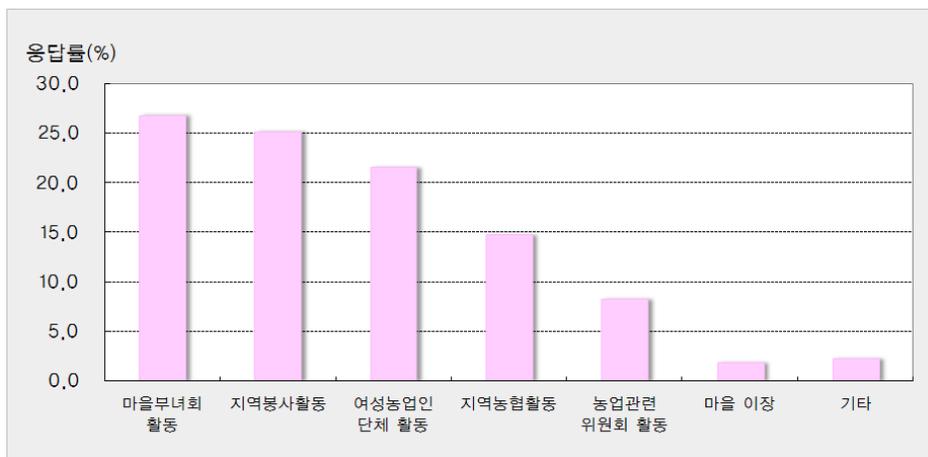
■ 지역사회활동 실태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 실태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거의 없어 이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그 실태와 특징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 대상은 사회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40, 50대의 여성농업인 단체 소속 여성농업인이므로 전국 평균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응답한 여성농업인의 90% 이상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젊고 활동적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특징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또한 농촌사회의 강한 공동체적 특성과 고령화된 농촌에 여성농업인의 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은 도시보다는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으로는 부녀회 활동(27%)과 지역봉사활동(25%)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역농협활동은 여성조합원, 대의원 및 임원활동뿐만 아니라 지역농협의 여성농업인 관련 활동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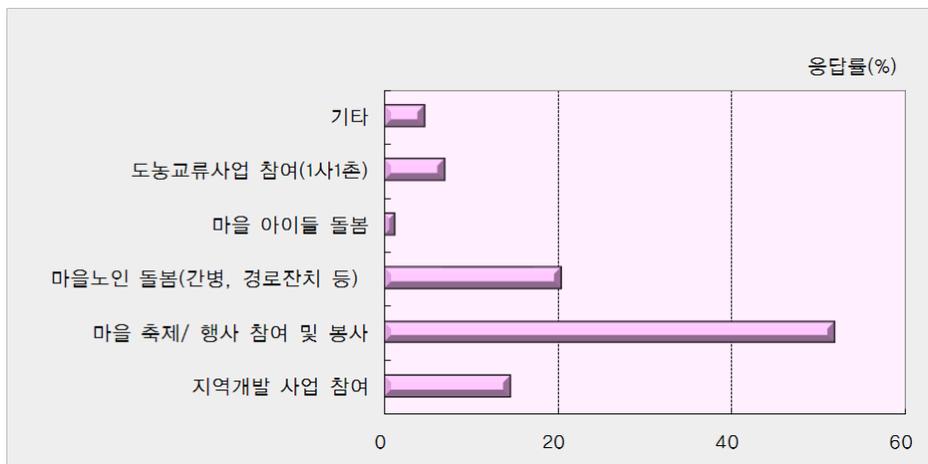
7 2005년 여성조합원 비율은 25.3%, 여성대의원수 비율은 11.7%, 임원수 비율은

그림 14.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 영역(복수 응답)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그림 15.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 유형(복수 응답)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2.3%로 증가 추세이다(농림부, 2006). 이러한 양적 성장은 복수조합원 관련조항의 삭제, 정관 개정에 의한 여성대의원 확대, 농협의 지도와 교육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교육 및 홍보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 유형 중 마을행사 참여 및 봉사활동이 5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마을노인 돌봄(간병, 경로잔치 등), 지역개발사업 참여, 도농교류사업 참여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 장점으로 ① 부녀회와의 긴밀한 협조 등 마을 여성들의 참여를 잘 유도할 수 있음(26.4%) ② 여성의 부드러움으로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함(24.5%) ③ 집안일을 하듯이 마을 구석구석의 잔일을 찾아서 하는 섬세함이 있음(17.5%) ④ 농산물 가공 및 직거래 등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각종 마을활성화 사업에 기여(12.9%) ⑤ 학연 지역의 굴레에서 남성보다 자유로워 소신껏 일처리를 할 수 있음(9.6%) ⑥ 지역의 노인 및 여성, 아이들의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함(9.0%) 등으로 나타났다.

젊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마을 이장에도 여성들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⁸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해 말 전체 이장 6,579명 중 6.6%인 435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⁹ 그중 여성이장 비율이 21%인 순천시 월등면이 양성평등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전라남도의 여성이장 증가는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전라남도는 여성이장 마을에는 500만원 안팎의 부업장려 사업비는 물론 마을안길 포장비, 농로포장, 마을회관 증개축 비용 등을 지원한다. 2006년 광양시는 3억 400만 원, 순천시는 2억 3천만 원, 담양군은 1억 6천만 원을 여성이장마을에 특별 지원한 바 있다. 해남지역도 523개 마을 중 여성이장이 30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이장 마을에는 2,000만 원의 특별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러한 여성이장 증가는 ① 농촌사회에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 ②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의 여성 이장 확대 목표에 따른 도와 지자체의 여성이장 마을 재정지원정책(예: 주민숙원사업비 우선배정 등 인센티브 정책) ③

8 마을 이장은 관공서와 주민의 가교역할, 읍면장의 지시사항 전달, 마을의 대소사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9 여성 마을이장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였다.

농촌의 고령화로 복지관련 업무 증가 ④ 도농교류사업, 농의소득활동 등 마을 부녀회와 협력 업무 증가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정부의 여성 참여 유도 정책으로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농림부는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2006~2010)’에 농촌마을의 여성이장 30% 이상 확대 계획을 명시한 바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의 사업시행지침 개정안에는 마을개발협의회에 참여하는 주민 대표는 남녀공동대표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의 사업시행지침에도 마을협정 체결이 여성참여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장

여성농업인 역할의 가치 평가

제3장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는 역할의 가치를 계량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첫째, 전국단위 농가조사 자료인 ‘2005년 농가경제조사’의 남녀 가족노동시간과 고용노동비용 자료를 이용하여 무급가족노동인 여성농업인 농업노동의 잠재임금을 추정하였다. 둘째,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는 가사일, 농사일, 그리고 마을일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평가한 기회비용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였다.

여성농업인 농업노동의 잠재임금 추정

농가에서 고용하는 남녀 노동력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형성되는 농촌임금을 통해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농업노동은 노동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노동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는 임금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가치는 잠재임금(*shadow wage*)의 형태로 추정되어야 한다.

특히 무급 가족종사자로 간주되어 왔던 여성농업인의 경우, 정확한 농업노동 가치가 산정되어 있지 않아 상·재해 등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경우 매우 불리한 보상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즉 보상기준을 설정할 때 명확한 직업적 지위가 없으면 일반 가정주부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지역의 일용근로임금으로 보상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보다 더욱 불리해질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들이 기여한 농업생산노동의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최윤지, 2007).¹⁰

10 법원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산정은 일반적인 남성농업인과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보조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도시지역일용임금보다는 높게 책정된 농촌지역 농업노동 일용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규모 있는 농축산업자는 농업인으로서 소득액을 입증하면 산업자로서의 통계임금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은 가사활동과 농사일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현재는 대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아 농촌지역 여성 농업노동 고용임금을 적용받겠다고 하더라도, 여성 농업노동 고용자와 가족 여성농업인의 노동의 질은 차이가 있어 가족 여성농업인의 가치는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 여성농업인은 고용 여성농업인보다 더 높은 인적자본(농사경력, 영농교육 수준 등)을 보유하고 있고 수행하는 농업노동의 강도와 질도 높아, 단순 농업노동을 주로 하는 여성 고용자보다 더 높은 농업생산성을 나타낸다(Schultz, 1972; Huffman, 1992).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가치를 평가할 때,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이 실제 산출물 생산에 기여하는 바를 추정하여 잠재임금을 도출하는 것이 여성 고용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정확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무급 가족 여성농업인의 한계농업생산 가치를 추정하여 농촌 고용임금과 상대 비교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잠재임금을 도출하였다.¹¹ 보다 신뢰할 만한 자료와 추정 모형을 이용해 가족 여성농업인의 잠재임금을 추정·분석하여 이론적 배경과 사용되는 자료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¹² 가족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이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질적인 노동가치를 추정하여, 지금까지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를 단순히 농촌여성일용임금으로 평가하는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부분이 농업인으로서 인정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소득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아, 도시지역 가정주부에게 적용되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낮은 농촌지역 여성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이처럼 여성농업인의 노동 가치는 가정 내 재생산영역에 속하는 가사노동의 평가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농업노동 부분의 가치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최윤지, 2007).

11 강혜정·권오상(2005)은 본 연구와 동일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2002년 가족 농업노동의 잠재임금을 추정한 바 있다.

12 유소이 외(2003)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180개 미맥 농가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농업노동시간에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 의해 추정된 여성 노동시간의 한계생산 가치를 곱하여 여성농업노동 가치를 평가한 바 있다.

■ 이론 모형

2005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다산출물(multi-output)을 생산하는 농가에서의 가족 여성농업인 농업노동의 한계생산가치를 추정한다. 다수산출물 생산기술을 나타내기 위해 투입물거리함수(input distance function)를 이용한다. 투입물거리함수와 비용함수 사이에 존재하는 쌍대관계(duality)를 활용하여 가족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잠재임금을 이론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주어진 산출물벡터 $y \in R_+^M$ 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투입물벡터 $x \in R_+^N$ 의 집합인 투입물집합(input requirement set) $V(y)$ 로 나타내어진 생산기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투입물거리함수를 통해 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1) D_i(y, x) = \sup_{\lambda} \{\lambda > 0 : (x/\lambda) \in V(y)\} \text{ for all } y \in R_+^M$$

투입물거리함수는 산출물벡터가 주어졌을 때 각 투입물벡터가 투입물집합의 경계(frontier)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낸다. 투입물거리함수는 여러 특성들을 가지는데 특히 모든 $y \in R_+^M$ 에 대해 $D_i(0, y) = 0$ 이고 투입물에 대해 선형동차이며 투입물의 집합에 대해 유계이고(bounded) 폐집합이다.

투입물거리함수와 비용함수 간에는 다음과 같은 쌍대관계가 성립함이 알려져 있다(Shephard, 1970; Färe, 1988; Cornes, 1992).

$$(2) C(y, p) = \min_x \{px : D_i(y, x) \geq 1\}, p > 0$$

$$(3) D_i(y, x) = \inf_p \{px : C(y, P) \geq 1\}, x \in R_+^N$$

식 (2)에 의하면, 각 투입요소의 시장가격이나 잠재가격이 p 와 같이 주

어져 있을 때 비용함수의 값은 y 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투입요소 결합 가운데 최소의 비용을 요구하는 결합을 선택하였을 때의 비용을 나타낸다.

식 (3)은 비용함수의 값이 1 이상이 되도록 제약하는 투입요소의 정규화된(normalized) 잠재가격 p 를 정의하고, 이 정규화된 잠재가격으로 평가된 비용지출액 px 를 최소화하는 잠재가격을 구한다면 그 때의 지출액은 투입물거리함수의 값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 (2)와 (3)의 관계는 원기술(primal technology)을 나타내는 거리함수와 생산자의 최적행위를 나타내는 쌍대함수의 하나인 비용함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쌍대성 원리를 활용한 생산모형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계식들이며, 이 두 관계식을 활용하여 각 투입요소의 잠재가격을 도출할 수 있다(Jacobsen, 1971).

위의 두 관계식으로부터 잠재가격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식 (2)의 비용최소화 문제를 풀고 투입물거리함수의 선형동차성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¹³

$$(4) \quad p = C(y,p) \nabla_x D_i(y,x)$$

최적화 문제 (3)의 풀이과정을 통해 식 (4)의 $\nabla_x D_i(y,x)$ 는 문제 (3)의 해로서, 비용함수로 정규화된(normalized) 잠재가격 벡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 (4)는 투입물들의 정규화되지 않은 잠재가격 벡터 p 는 비용함수값을 비용함수로 정규화된 잠재가격 벡터로 곱해준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 (4)로부터 각 투입요소의 잠재가격을 도출하려면 투입물거리함수와 함께 비용함수 값 $C(y,p)$ 도 알아야 하는데, 모든 투입요소의 가격이 시장에서 다 관측되는 것은 아니라면 비용함수 값을 알 수가 없다. 대안으로서 투입요소 가운데 그 가격이 시장에서 관측되는 것이 있다면 이 투입요소의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다른 투입요소의 잠재가격을 도출하는 방법이 사용

13 구체적인 도출과정은 Färe and Primont(1995), pp.51-56 참조.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 투입량을 x_1 이라 하고, 여성농업인 노동 투입량을 x_2 라 할 때, 농촌노동시장에서 고용노동임금이 p_1 으로 정해져 있다면, 고용노동임금 대비 여성농업인 노동의 잠재임금 p_2 는 다음과 같이 도출될 수 있다.

$$(5) \frac{p_2}{p_1} = \frac{C(y,p)\partial D_i(y,x)/\partial x_2}{C(y,p)\partial D_i(y,x)/\partial x_1} = \frac{\partial D_i(y,x)/\partial x_2}{\partial D_i(y,x)/\partial x_1}$$

$$p_2 = p_1 \frac{\partial D_i(y,x)/\partial x_2}{\partial D_i(y,x)/\partial x_1}$$

두 투입물들의 가격 비율은 투입물집합의 경계에서 형성되는 x_2 와 x_1 간의 한계대체율과 같으며, 이를 추정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여성농업인 노동의 잠재임금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 노동의 잠재임금은 여성노동이 고용노동을 대체하여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추정되는 잠재임금은 모두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농가에 대해서만 정의된다. 비효율적인 농가의 경우 모든 투입요소 사용량이 비례적으로 감소하여 생산이 투입요소집합 경계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투입요소 사용량을 조절한 경우를 가정하여 잠재임금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입물거리함수는 투입물에 대해 선형동차이므로 이 함수의 투입물에 대한 편미분은 0차동차이고, 투입물들을 비례적으로 변화시켜도 수식 (5)의 도함수값들은 불변이다. 따라서 식 (5)는 투입물집합 내부에 존재한 비효율적인 농가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다.

■ 이용한 자료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2005년에 시행한 전국적인 농가경제

통계 원자료이다. 이 자료는 9개도에서 표본 추출된 1,350 개별 농가단위의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이다.¹⁴

투입물거리함수 추정을 위해 자료에 나타난 다수의 산출물과 투입물을 두 가지 산출물과 여섯 가지 투입물로 총계하였다. 한국농업에서 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출물은 쌀(y_1)과 쌀 이외의 작목(y_2) 두 가지로 총계하였다. 여기서 쌀 이외의 작목은 채소, 과일, 특용작물, 화훼 조수입 등의 총계이다.

투입물은 토지(x_1), 고용노동시간(x_2), 남자 가족노동시간(x_3), 여자 가족노동시간(x_4), 자본(x_5), 그리고 기타 투입재(x_6)이다. 투입요소 가운데 토지는 생산에 투입된 경작면적(ha)으로 논, 밭, 과수원을 포함한다. 자본의 경우에는 농업구조물의 평균 대체비용, 농기계 감가상각비, 수리비, 농기계 및 농기구 임차비 등을 포함한다. 기타 투입재는 비료, 농약, 연료, 전기, 종자 등의 투입비용을 총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가별 총 고용노동비용을 총고용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각 농가가 고용한 노동의 시간당 임금으로 사용한다. 단, 농가의 고용노동비용은 남녀 고용의 구분 없이 기록되므로, 고용노동의 경우 남녀임금을 따로 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들 자료의 기초통계량은 <표 10>에 정리되어 있다. 2005년 우리나라 평균 농가의 경지면적이 1.6ha, 미곡수입이 7,264천 원 등이었음을 고려할 때, 원자료에서 고용노동이 있는 농가들만을 추린 분석 자료의 산출물과 투입물 값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¹⁵

14 이 연구의 분석모형인 고용노동임금 대비 여성농업인의 잠재임금을 도출하기 위해, 2005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에서 고용노동이 있는 농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표본자료에서 여성농업인 농업노동시간이 '0'인 농가는 전혀 없어, 모든 표본농가의 여성농업인은 산출물 생산을 위해 농업노동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이 연구는 2005년 농가경제통계에서 조사된 농가들 가운데 고용노동이 있는 농가들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분석 자료로 이용하므로, 추정결과에 표본선택오류(sample selection bias)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표 10. 기초 통계량

| 변 수 | 단위 | 평 균 | 표준편차 |
|----------|--------|--------|--------|
| 쌀 | 1,000원 | 12,514 | 18,146 |
| 쌀 이외의 작목 | 1,000원 | 20,738 | 28,252 |
| 토지 | ha | 2.35 | 2.34 |
| 고용노동시간 | 시간 | 299 | 861 |
| 남자가족노동시간 | 시간 | 820 | 608 |
| 여자가족노동시간 | 시간 | 654 | 550 |
| 자본 | 1,000원 | 8,111 | 7,437 |
| 기타 투입재 | 1,000원 | 6,663 | 12,457 |

■ 분석 결과

남녀 가족노동의 잠재임금은 2005년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산출물 생산 농가의 생산기술을 투입물거리함수로 추정한 후, 투입물거리함수와 비용함수간의 쌍대성 특성을 이용하여 계측되었다. 다산출물 투입물거리함수 추정과 잠재임금 도출 등의 구체적인 추정모형은 <부록 1>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분석결과, 시간당 평균 남녀가족노동의 잠재임금은 각각 5,245원과 5,004원으로 계측되었다. 남녀 평균 잠재임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남녀 가족노동간 잠재임금 격차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계측된 남녀 잠재임금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임금의 표본평균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t -검정한 결과, 남녀간 가족노동의 평균 잠재임금은 같다는 가설을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지 못하였다.

표 11. 시간당 남녀 가족노동 잠재임금의 분포

단위: 원/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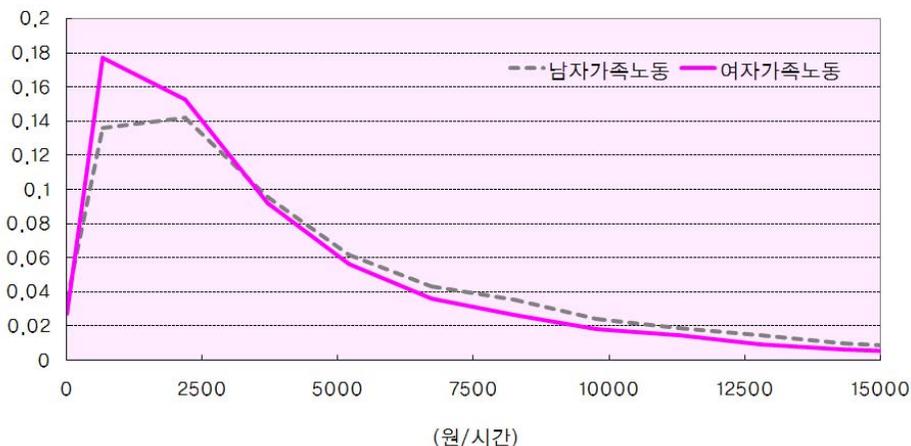
| 하위 백분위 | 남자 가족노동 | 여자 가족노동 |
|--------|---------|---------|
| 5% | 298 | 266 |
| 10% | 532 | 442 |
| 25% | 1,333 | 1,077 |
| 50% | 3,143 | 2,521 |
| 75% | 6,724 | 5,447 |
| 90% | 12,056 | 10,761 |
| 95% | 16,813 | 16,525 |
| 평균 | 5,245 | 5,004 |

자료: 본 연구의 모형 계측 결과.

표 12. 남녀 평균 잠재임금 차이에 대한 가설검정

| 귀무가설 | t-값 | p-value |
|--------------------------------|--------|---------|
| 남자가족노동과 여자가족노동의 잠재임금 간에 차이가 없다 | 1.1026 | 0.2704 |

그림 16. 시간당 남녀 가족노동 잠재임금의 분포



주: 잠재임금의 분포는 비모수적 커널밀도함수(kernel density function)로 추정
 자료: 본 연구의 모형 계측 결과.

남녀 가족농업노동의 잠재임금 추정치는 대칭적인 분포를 보이지 않고 우측꼬리를 길게 가지는 분포이므로, 중앙값보다는 평균치가 더 크게 나타난다.

가족 여성농업인의 연령대별 평균 잠재임금을 비교해 보면, 여성농업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잠재임금이 낮게 나타났다. 젊은 여성농업인일수록, 농업노동의 잠재임금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연령대별 가족 여성농업인의 시간당 평균 잠재임금

단위: 원/시간

| 연령대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
| 39세 이하 | 70 | 4,934 | 7,026 |
| 40대 | 296 | 4,486 | 4,573 |
| 50대 | 380 | 4,230 | 6,340 |
| 60대 | 436 | 4,186 | 3,825 |
| 70세 이상 | 168 | 3,202 | 4,081 |

자료: 본 연구의 모형 계측 결과.

표 14. 영농형태별 가족 여성농업인의 평균 잠재임금

단위: 원/시간

| 영농형태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
| 논벼농가 | 610 | 4,596 | 10,981 |
| 채소농가 | 353 | 5,934 | 10,666 |
| 과수농가 | 131 | 4,025 | 4,890 |
| 특작농가 | 61 | 7,254 | 10,821 |
| 전작농가 | 44 | 10,000 | 27,923 |
| 축산농가1 | 134 | 4,217 | 5,173 |
| 화훼농가 | 8 | 4,271 | 4,150 |
| 기타농가 | 9 | 2,990 | 3,072 |

주: 1. 축산농가에는 낙농농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본 연구의 모형 계측 결과.

영농형태별 가족 여성농업인의 평균 잠재임금을 비교해 보면, 전작농가의 시간당 평균 여성농업인 잠재임금이 1만 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특작농가 7,254원, 채소농가 5,934원, 논벼 4,596원, 화훼농가 4,271원 등의 순이다. 즉, 상대적으로 규모화와 기계화가 진전된 축산, 과수, 논벼농가보다는 일손이 많이 가는 노동집약적 밭농사 위주의 농가에서 여성농업인의 평균 잠재임금은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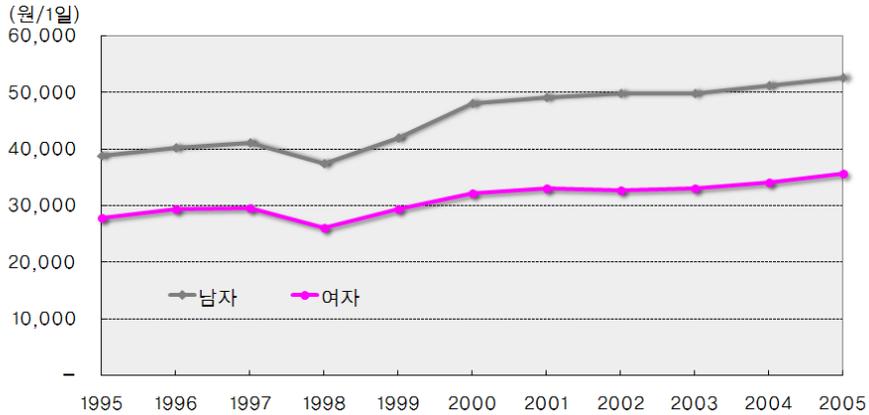
2005년도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한 농촌의 남자와 여자의 1일 임금은 각각 5만 8,955원과 4만 43원으로 남녀 고용임금 비율은 68%이다<그림 17>. 그러나 본 연구가 추정한 가족노동 잠재임금은 표본중앙값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여성임금이 남성임금의 약 80% 수준이고, 표본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경우 95% 수준이다.

계측된 남녀 가족노동의 잠재임금비율은 표본중앙값과 표본평균값 기준 모두 고용노동임금의 남녀 임금비율인 68%보다 높다. 즉, 현재 농촌노동 시장에서 형성되는 여성 고용임금은 가족 여성농업인의 잠재임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잠재임금으로 농촌 여성 고용임금을 적용할 경우, 평균 가족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가치는 과소평가될 수 있다.

추정된 가족 여성농업인의 잠재임금과 농촌 고용여성 임금간의 차이는 가족과 고용노동간 노동생산성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¹⁶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가족 여성농업인의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본수준, 농업노동유형, 영농기술 숙련도 차이 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16 정기환(1997)은 농업부문의 남녀간의 임금격차는 기술격차와 농촌지역의 관례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설명한다. 수도권 노동에서 남녀간 고용 임금격차는 남녀간 기술격차에서 발생하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작의 여러 노동분야에서는 남녀간의 기술 격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임금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 이는 남녀간의 임금을 차별해 온 전통적인 마을 제도의 유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7. 농촌 남녀 농업노동의 고용 임금격차 추이



주: 모든 임금은 GDP deflator(2000=100)를 이용하여 조정된 값
 자료: 농협, 농촌물가통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가족 여성농업인의 잠재임금은 농촌의 고용여성 임금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은 고용노동보다 한계 생산가치가 높아, 단순히 고용노동 임금으로 여성농업인의 노동 가치를 평가하면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상·재해시 보상수준을 결정할 때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농촌일용임금 또는 일용농업노동임금 기준은 문제가 있다. 가족 여성농업인의 노동생산성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노동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인정과 함께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여성농업인 역할의 기회비용 평가

여성농업인 스스로가 평가하는 본인의 역할에 대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는 역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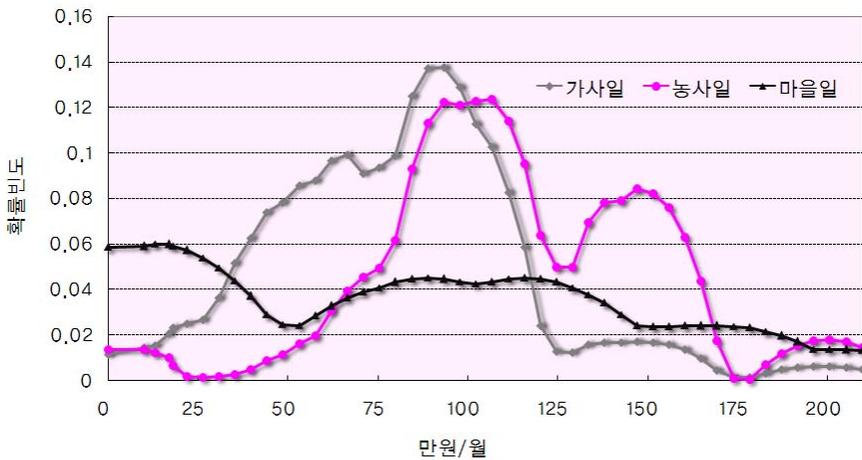
비용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재화나 기회의 가치이다. 여성농업인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의 기회비용은 각 역할 수행을 대체하는 인력 고용에 대한 최대 지불의향 금액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제 및 사회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중장년 여성농업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그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가사, 영농, 마을일을 대신 해줄 대체인력을 고용한다면 최대한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역할 유형별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지불의향금액 분석 결과, 중장년 여성농업인은 농사일의 대체인력 고용에 가장 높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며 그 다음이 가사일, 마을일 등의 순위이다. 조사대상 중장년 여성농업인의 집안일에 대한 기회비용은 월평균 90만 원, 농사일에 대한 기회비용은 월평균 120만 원, 마을일에 대한 기회비용은 월평균 82만 원으로 나타났다.

역할 유형별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 분포는 <그림 18>과

그림 18.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 분포



주: 금액 분포는 비모수적 커널밀도함수(kernel density function)로 추정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같다. 농사일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은 월 약 100만 원에서 가장 높은 확률빈도를 나타내고, 월 150만 원에서 그 다음 높은 확률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사일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분포는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월 약 90만 원에서 가장 높은 확률빈도를 나타내 농사일보다 낮은 지불의향 금액분포를 보인다. 마을일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분포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분포되어 있다.

활동유형별 여성농업인의 평균 기회비용은 영농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 밭작물과 채소 농가의 여성농업인이 평가한 농사일에 대한 평균 기회비용은 128만 원으로 가장 높다. 반면 논벼농가의 평균 기회비용은 110만 원으로 평가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사일에 대한 기회비용은 일반밭작물 농가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마을일에 대한 기회비용은 축산농가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사일을 대신해 줄 인력 고용에 대한 평균 지불의향 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가사일과 마을일에 대한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평균 지불의향 금액도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즉, 젊은 여성농업인일수록 본인의 활동별 기회비용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표 15. 영농형태별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평균 지불의향 금액

단위: 만 원/월

| | 가사일 | 농사일 | 마을일 |
|-------|-----|-----|-----|
| 논 벼 | 77 | 110 | 80 |
| 과 수 | 80 | 122 | 90 |
| 채 소 | 79 | 128 | 89 |
| 화 훼 | 82 | 115 | 50 |
| 일반밭작물 | 93 | 128 | 68 |
| 특용작물 | 78 | 119 | 64 |
| 축 산 | 86 | 121 | 98 |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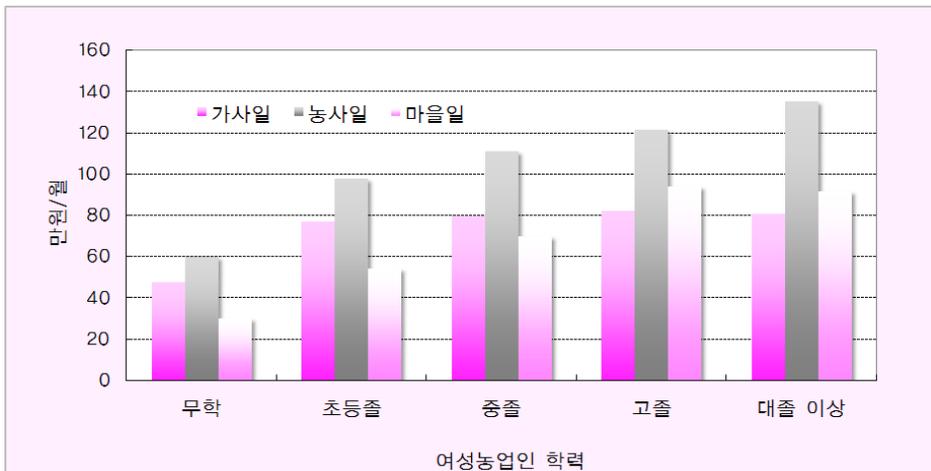
그림 19. 연령대별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평균 지불의향 금액 분포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본인 농사일의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평균 지불의향 금액이 높았다. 가사일과 마을일도 학력이 높은 여성농업인일수록, 대체인력 고용에 더 높은 지불의향 금액을 제시하였다.

그림 20. 학력별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평균 지불의향 금액 분포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한편, 여성농업인 인적특성이 활동유형별 기회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체고용인력 지불의향 금액이 0인 관측치가 있어(5%), 대체인력을 고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포함하여 기회비용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토빗(Tobit)모형이 유용하다. 어떤 i 번째 관측치의 대체인력고용에 대한 지불의향금액(기회비용)은 다음과 같은 모형에 의해 표현된다.

$$(1) \quad y_i^* = x_i\beta + u_i, \quad u_i|x_i \sim normal(0, \sigma_u^2)$$

$$y_i = \max(0, y_i^*)$$

대체인력고용에 지불의향이 있는 경우 $y_i = y_i^*$ 이고, 지불의향이 없는 경우 $y_i = 0$ 과 같이 관측된다. 이와 같은 토빗 모형에 있어서의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Amemiya, 1984; Wooldridge, 2002, p. 526).

$$(2) \quad \ln L = \sum_0 \ln \left(1 - \Phi \left(\frac{x_i\beta}{\sigma_u} \right) \right) + \sum_+ \left[-\ln \sigma_u + \ln \phi \left(\frac{y_i - x_i\beta}{\sigma_u} \right) \right]$$

단, Φ 와 ϕ 는 각각 표준정규분포함수와 표준정규밀도함수, \sum_0 은 y_i 가 0인 항만의 합, \sum_+ 은 y_i 가 0보다 큰 항만의 합이다.

토빗 모형을 이용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사일에 대한 기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연령에 비해 40세 미만, 40대, 50대의 순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사일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졸 이상 학력 수준에 비해 무학, 초졸, 중졸, 고졸의 순으로 농사일의 기회비용이 낮게 나타났다. 본인을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인식할수록 기회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가사노동에 대한 대체인력 고용 지불의향 금액이 높을수록(가사노동의 기회비용이 높을수록), 농사일의 기회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표 16. 토빗모형 분석결과: 여성농업인 농사일 기회비용의 결정 요인 분석

| 변수 | 추정치 | t-value |
|----------------|-----------|---------|
| 39세 이하 | 71.06*** | 4.67 |
| 40대 | 64.00*** | 4.61 |
| 50대 | 61.79*** | 4.36 |
| 무학 | -42.74* | -1.56 |
| 초등졸 | -32.47*** | -2.96 |
| 중졸 | -27.39*** | -3.07 |
| 고졸 | -18.77*** | -2.28 |
| 경영의사결정 참여도 | -14.99*** | -3.82 |
| 가사노동의 기회비용 | 0.43*** | 7.05 |
| 상수항 | 73.94*** | 4.05 |
| LR $\chi^2(9)$ | 98.10*** | |
| Log likelihood | -2394.12 | |

주: 추정을 위해 제거된 여성농업인 연령 더미변수는 '60세 이상'임.

추정을 위해 제거된 여성농업인 학력 더미변수는 '전문대졸 이상'임.

* $p < 0.05$; ** $p < 0.01$; *** $p < 0.001$

토빗 모형을 이용하여 여성농업인의 마을일에 대한 기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여성농업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마을일의 기회비용이 낮게 나타났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마을일의 기회비용이 높았다. 농사일의 기회비용이 높을수록, 마을일 기회비용도 높게 나타났다.

위의 두 가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상대적으로 더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즉 인적자본이 높은 여성농업인은 농사일과 마을일에 대한 본인의 기회비용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농업보조자보다는 공동경영주, 전문경영자로 인식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본인의 경제·사회활동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표 17. 토빗모형 분석결과: 여성농업인 마을일 기회비용의 결정 요인 분석

| 변수 | 추정치 | t-value |
|----------------|----------|---------|
| 연령 | -1.36 | -1.51 |
| 교육수준 | 11.86* | 1.85 |
| 농업노동의 기회비용 | 0.50*** | 4.77 |
| 가사노동의 기회비용 | 0.10 | 0.69 |
| 상수항 | 15.52 | 0.27 |
| LR $\chi^2(4)$ | 42.20*** | |
| Log likelihood | -2028.69 | |

주: * p<0.05; ** p<0.01; *** p<0.001

제 4 장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별 제약요인과 정책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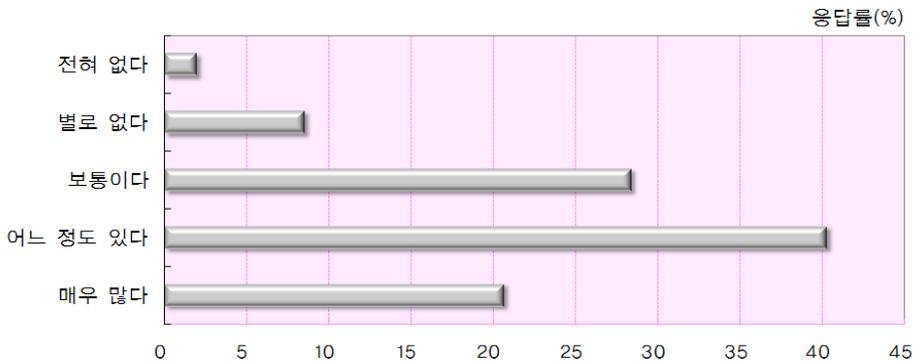
제4장에서는 중장년 여성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자료¹⁷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별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여성농업인의 정책수요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여성농업인의 성장단계별 정책수요 조사를 위하여 중장년 여성농업인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한국농업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대상 설문조사 자료도 분석한다. 또 본 설문조사 결과를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평가하여 여성농업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별 제약요인

■ 활동영역별 제약요인 조사 결과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60% 이상이 여성농업인으로서 어느 정도 또는 매우 많이 활동 제약 및 어려움을 경험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21%인 반면, 전혀 없다는 응답은 2%이다.

그림 21. 여성농업인으로서 활동상 제약 및 어려움 경험 정도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17 조사표본의 평균 연령은 46세로 상대적으로 젊은 중장년 여성농업인이다. 연령대별 분포는 40세 미만 11.7%, 40대 59.8%, 50대 24.1%, 60대 4.4%이다. 학력 수준 분포는 무학 1.0%, 초등졸 10.5%, 중졸 28.6%, 고졸 51.7%, 대졸 이상 8.0%이다.

본인의 영농활동상 지위를 공동경영주라 평가한 여성농업인이 전문경영인 또는 농업보조자라 평가한 여성농업인보다 제약 및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농업노동 비중이 많을수록, 본인의 농가소득 기여율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여성농업인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용작물, 일반 밭작물, 화훼, 채소 농가 등의 순으로 더 많은 제약 및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농업노동 비중이 많고 활발한 영농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일수록 활동상 더 많은 제약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활동영역별 제약요인과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해 주는 방안 마련이 여성농업인의 역할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일 것이다.

활동영역별 여성농업인이 겪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의 순위를 매기기 위해, 각 설문 문항의 응답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저 그렇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와 같이 5점 척도로 환산하여 점수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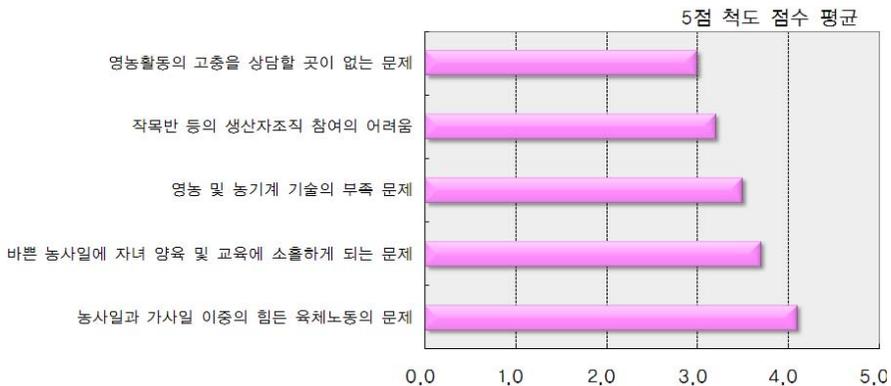
영농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이 겪는 애로사항 중 농사일과 가사일을 이중으로 하게 되는 데 따른 육체노동의 문제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4.1점). 바쁜 농사일에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소홀하게 되는 문제도 그 다음 높은 점수를 보였다(3.7점). 관례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고 있는 가사일, 자녀 양육 및 교육 등을 농사일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이다. 도시근로자 여성도 마찬가지로 직장일과 가사를 조화롭게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한 저출산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최근에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출산휴가, 자녀 양육 및 교육 등의 휴직 및 보육서비스 지원 등이다. 그러나 일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임신, 출산, 양육, 교육 등의 지원 대책은 도시근로 여성 정책에 비해 아직 미흡하다. 여성농업인의 역할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녀 양육 및 교육을 포함한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가사노동의 부담 이외에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영

농 및 농기계 기술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3.5점). 농업기계와 영농기술의 발달로 과거의 노동집약적 영농방식은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은 영농기술교육 참여 기회가 적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농사일과 더불어 수행하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등으로 교육 시간 확보가 어렵고, 대부분 영농기술교육이 남성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남편이 주로 영농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기계 또한 대부분 남성 위주로 설계·제작되어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어렵고, 여성농업인은 작동 및 조작법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농기계 이용률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영농 및 농기계 기술 부족 문제는 여성농업인의 육체적 농업노동 부담을 증대시키고, 농업생산성은 낮게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여성농업인도 영농기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기회 확대와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여성용 농기계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된다.

이 밖에 생산자 조직 참여의 어려움(3.2점)과 영농활동의 고충을 상담할 곳이 없는 문제(3.0점)도 여성농업인이 느끼는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남성농업인이 농가 경영체의 대표로 작목반 등의 생산자 조직에 참여하여 관행적으로 농업보조자로 인식되는 여성농업인의 참여는 상대적으

그림 22. 영농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이 겪는 애로사항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로 제한되어 있다. 농업의 전문화, 규모화, 상업화 추세에서 여성농업인의 생산자 조직 참여는 여성농업인의 전문 농업인력화를 위한 조건이 된다. 작목반 등의 생산자 조직은 영농기술 및 정보습득의 핵심 채널이며 작목반 원간 기술 및 정보교류가 농업경영에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남편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도 시장정보 및 영농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방안으로 생산자조직 참여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생산자조직 참여 활성화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현장 중심의 품목별 교육 확대와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상의 고충을 상담해 줄 수 있는 곳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센터의 상담업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농외소득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크게 투자자금, 인력관리, 마케팅과 홍보 등과 관련된 경영의 어려움과 가사일 병행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농외소득활동 참여 여성농업인은 농산물 가공 및 유통, 관광농원 등 농관련사업의 경영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으로 한정한다. 즉 농업임금취업자로서의 여성농업인이 겪는 애로사항은 조사되지 않았다.

가사일 또는 농사일과 병행하는 어려움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개발 및 상품개발을 위한 투자자금 부족, 상품 판매처 확보 문제, 마케팅 및 제품 홍보 부족 문제, 식품 위생 및 인증제도 등에 대한 법적 지식 부족 문제, 종업원 고용 및 관리 등이 제약 및 어려움으로 나타났다<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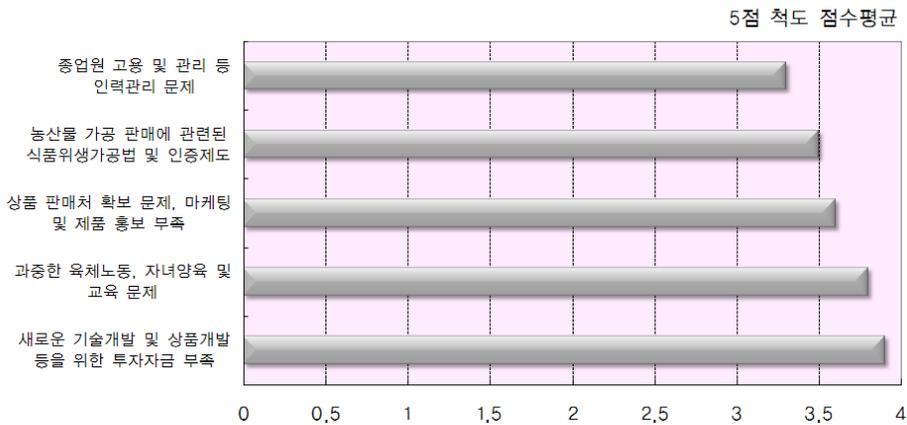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참여하는 농관련사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 사업체로 투자자금이 부족하고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3.9점). 가사일과 농사일만 하다가 창업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회경험과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편이다. 특히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3.6점). 여성농업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창업과 경영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대규모 시설과 위생설비 등을 요구하는 식품위생가공법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는 농산물 가공업을 하는 여성농업인에게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5점). 따라서 농촌현실에 맞도록 가공시설 및 규모, 위생

관리방식 등 농산물 가공 규정의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⁸

이 밖에 농촌 고용노동시장의 비활성화로 인력 고용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3점). 사례조사 결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농업관련사업을 하고 싶어도 노동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안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으로서 이러한 고용 인력을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림 23. 농외소득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이 겪는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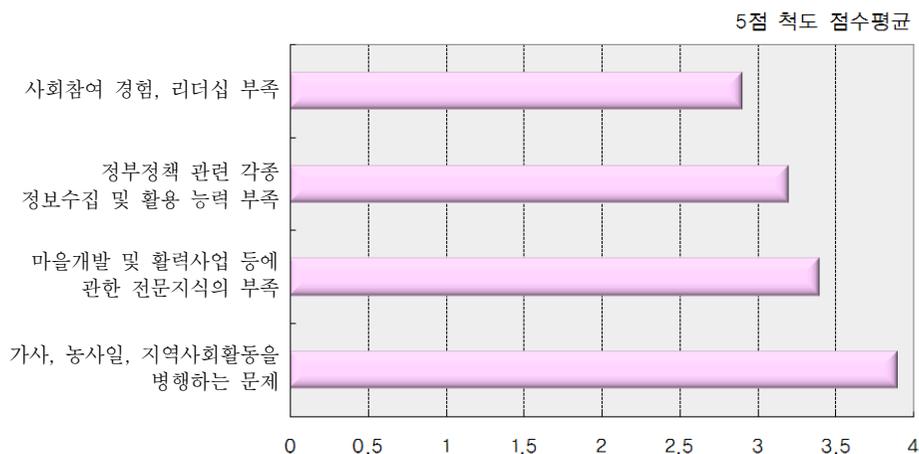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18 농촌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현실에 맞도록 식품위생법 규정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예가 있다. 『도농교류 촉진법』 제정 예고안(2007. 4) 제7조, 제8조, 제9조는 농어촌 실정에 맞는 적정 규제하에 자유로이 영업할 수 있도록 타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즉,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서 마을공동시설을 이용하여 비상시적으로 숙박 서비스 제공 시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숙박업’ 규정 및 농촌체험·휴양 프로그램에 부수한 소규모 승마장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신고체육시설업’ 규정을 배제하며, 농어촌체험·휴양 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지역농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음식 제공 및 즉석 식품 제조·판매 시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시설기준’ 특례를 부여한다.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역시 가사일, 농사일과 지역사회활동을 병행하는 문제로 나타났다(3.9점). 마을개발 사업 등의 전문지식 부족(3.4점)과 정보수집 및 활용 능력 부족(3.2점)도 큰 제약요인이다. 또한 사회참여 경험과 리더십 부족도 어려움으로 나타났다(2.9점). 이러한 어려움은 특히 마을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었다.

지역사회활동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사항이므로 개인일이 바쁘면 우선 순위가 밀린다. 그러나 젊은 농가인구 감소로 초고령화된 농촌사회의 활력 증진과 마을개발 등을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이 매우 요구된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과 더불어 여성마을 리더 육성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회의, 토론 능력 함양을 포함한 리더십 교육, 정보수집 및 활용 교육, 마을개발사업에 여성리더 참여 확대, 우수 여성이장마을 포상 등이 포함된다.

그림 24. 지역사회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이 겪는 애로사항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 제약요인 평가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여성농업인이 경험하는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러한 불평등의 주요인으로 여성농업인이 실질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¹⁹ 이 문제는 현행법과 법의 현실적 시행이라는 두 부분의 격차에서 발생하고 있다. 현행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농업인은 ‘1천 제곱미터(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농지규모 1천 제곱미터 이상 소유 요건을 충족하는 비율이 일반농가 여성을 기준으로 1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에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요건을 충족시키는 실질적 농업인 비율은 93%이다. 그러나 농업종사사실 증명절차 누락으로 농업인 증명이 어려우며, 대개의 농지소유 여성은 통장도 보유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은 11% 내외로 추정된다. 농업에 종사하는 93% 중 11% 내외를 제외한 나머지 82%가량은 법적으로 농업인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농업인 경력 불인정, 상·재해 시 불공정한 손해배상, 농어민 연금 및 각종 정책자금 수혜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최윤지, 2007).

그러나 2007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농촌기본법」의 전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

19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조사한 연구도 있다. 김경미 외(2006)에 의하면 여성독립경영주는 지역협의체 참여, 농기계 사용, 영농교육 참여, 영농조합 설립, 농축협 등 조합원 활동, 과중한 노동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공동 경영주와 준경영인은 농기계 사용, 영농교육, 지역협의체 참여, 내명외의 재산이 없어 대출받을 수 없음, 과중한 노동 등의 어려움이 있다.

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므로 이 법률의 시행령 개정에 농업종사 사실 확인 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업인 증명이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²⁰

이 밖에 농촌지역의 보수적 성 역할 고정관념과 경제 및 사회활동에서 성차별 의식은 여성농업인의 성장 한계로 지적되었다. 또한 여성 스스로 본인의 능력을 비하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여성농업인으로서 겪는 불평등 및 의식적 한계는 이 연구 조사결과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이 연구의 조사대상인 중장년 여성농업인은 불평등 문제보다는 역할 활성화의 장애요인을 가장 큰 제약 및 어려움으로 제시하였다. 즉, 활동이 활발한 중장년 여성농업인에게는 남녀차별과 같은 의식적인 문제보다는 일과 가사의 양립을 유지하는 문제와 각 활동 영역에서의 전문능력 부족 문제가 가장 큰 활동상 제약으로 나타났다. 젊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나 여성으로서, 농업인으로서 느끼는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 최윤지(2007)는 농업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확인신청을 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농업종사사실심리위원회(가칭)의 확인지침에 따라 농업종사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농업인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렵거나 증빙서류가 없는 기간 동안의 경작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인정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농업종사사실심리위원회(가칭)에 경작사실에 대한 사실심리를 요청하여 동 심리위원회의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농업종사사실 확인서를 발급받는 안을 제시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별 정책수요

■ 중장년 여성농업인의 정책 수요

여성농업인이 겪고 있는 제약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여성농업인을 직업인으로 인정하는 법제도적 체계 마련(17%)과 농업인 연금제도 확대 등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15%) 등이 제시되었다.

과중한 농업 및 가사 노동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농번기에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 제도 지원(30%), 남편 및 가족의 가사 노동 분담(28%), 여성용 농기계 개발 및 저가 임대(20%) 등이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25. 과중한 노동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여성농업인의 모든 활동에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자녀 보육 및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에서 운영하는 보육센터 및 방과 후 교실 지원(25%), 여성농업인센터 확충 및 보육기능 강화(24%), 먼지역 까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22%) 등이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 마을, 여성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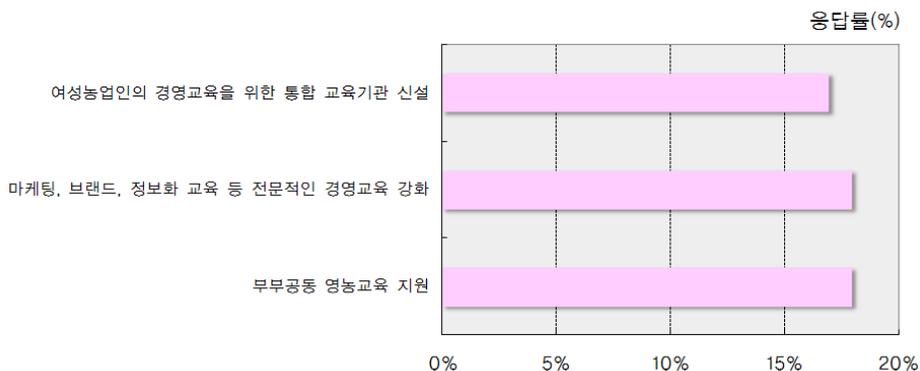
그림 26. 자녀 보육 및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업인센터, 또는 국가 등의 운영주체 문제보다 보육기관의 근접성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접근성이 높은 보육 및 교육기관을 설치하되, 지역특성과 역량에 맞게 운영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그림 27.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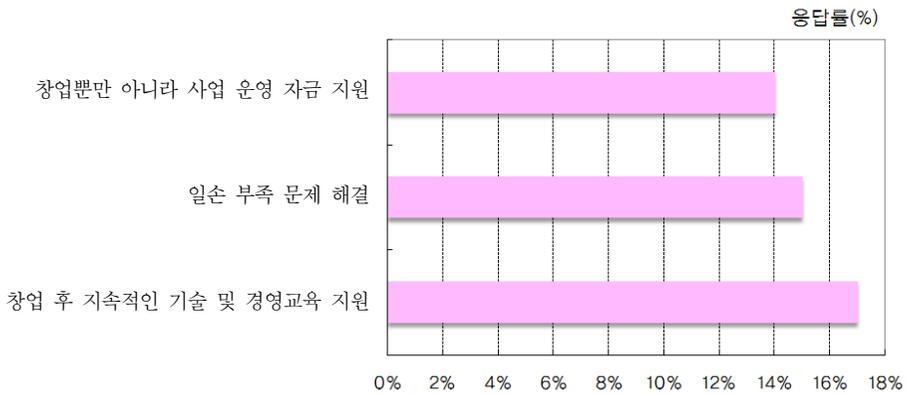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방안으로 부부공동 영농교육(18%), 마케팅, 브랜드, 정보화 교육 등 전문 경영교육 강화(18%), 여성농업인의 경영교육

을 위한 통합 교육기관 신설(17%) 등이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방안이 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체계와 방법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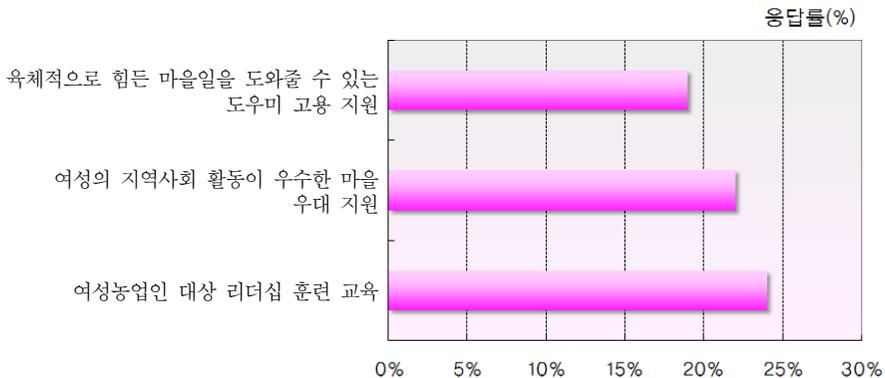
여성농업인의 농산물가공 및 농촌관광사업 등 농외소득활동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기술 및 경영교육(17%), 일손 부족 문제 해결(15%), 운영자금 지원(14%)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28. 여성농업인의 농산물가공 및 농촌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그림 29.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 활성화 방안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여성농업인의 지역리더 육성 방안으로 여성농업인 대상 리더십 훈련·교육(24%), 여성의 지역사회활동이 우수한 마을 우대 지원(22%), 육체적으로 힘든 마을일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고용 지원(19%) 등이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사회생활과 조직문화 경험이 부족한 여성농업인은 토론, 회의기법 등을 포함한 리더십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이장 마을에 부업장려금 등의 정책 지원 우대는 여성리더 확대에 필요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여성리더는 남성보다는 육체적으로 힘든 마을일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여성리더의 육체적 노동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고용 지원이 요구된다.

■ 고령여성농업인의 정책 수요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농업인 연금 지원 확대(21%),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촌형 지역 일자리 창출(17%), 고령취약 농가의 집안일을 돕는 가사도우미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15%) 등이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²¹

노동능력을 갖춘 고령여성농업인은 계속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생활능력을 상실한 독거고령여성농업인 또는 은퇴를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농업인 연금 지원 확대로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한 생산자원화정책과 복지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21 본 연구의 중장년 여성농업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고령여성농업인 대상 수요조사 결과라기보다는 40대, 50대 중장년 여성농업인이 생각하는 고령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그림 30.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수요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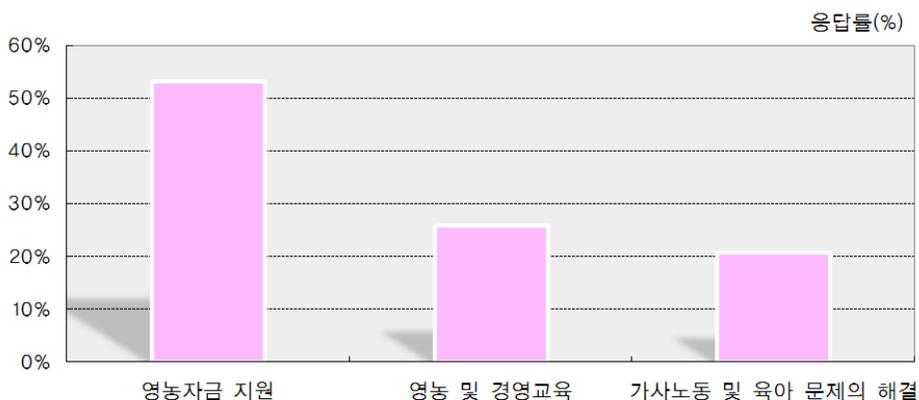
■ 후계여성농업인의 정책 수요

잠재적 여성농업인으로 한국농업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77명을 대상으로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 평균 연령은 24세이고 전 공분포는 식량작물과 8%, 채소과 14%, 과수와 5%, 특용작물과 26%, 화훼과 31%, 축산과 16%이다.

조사 대상자의 81.8%가 영농종사의무기간 6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 ① 농촌의 자연환경이 좋아서(27.1%) ② 전문 농업경영자가 되고 싶어서(26.3%) ③ 농업은 노력하면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므로(16.9%) 등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18.2%가 농업에 종사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는 ①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복지 및 문화시설 때문에(25.9%) ② 여성농업인들의 과중한 노동 부담 때문에(22.2%) ③ 농사를 지어서는 돈을 잘 벌지 못할 것 같아서(18.5%)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후계여성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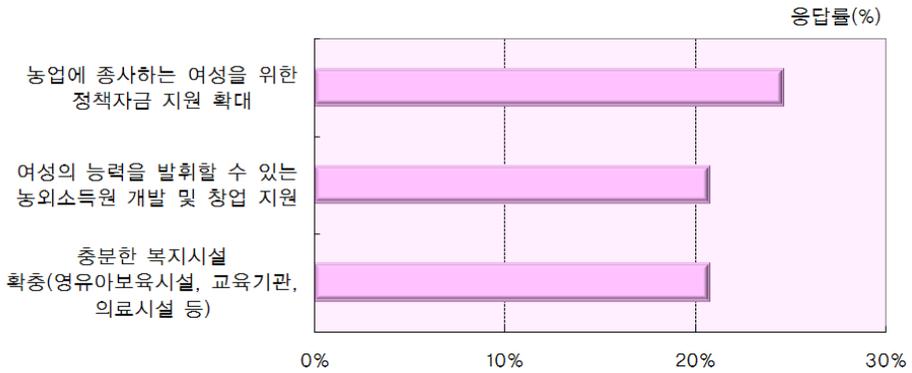
향후 영농참여정도에 대하여 남편과 함께 공동경영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66%로 가장 높았다. 농업관련사업의 참여정도에 대해서도 남편과 함께 생산과 경영을 함께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후계여성농업인은 독립경영주보다는 남편과 함께 경영하는 공동경영주의 지위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여학생들은 후계여성농업인의 원활한 영농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영농자금 확대 지원(53.2%), 영농 및 경영교육 강화(26.0%), 가사노동 및 육아 문제의 해결(20.8%) 등을 들었다.

젊은 여성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한국농업대학 여학생들은 충분한 복지시설 확충(20.8%),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외소득원 개발 및 창업 지원(20.8%),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24.7%) 등을 우선순위로 제시하였다. 한편, 중장년 여성농업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도시근로자에 상응한 농가소득 보장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두 설문조사 결과, 젊은 여성의 농촌 유입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영유아보육시설, 교육기관, 의료시설 등의 복지시설 확충과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외소득활동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이 본인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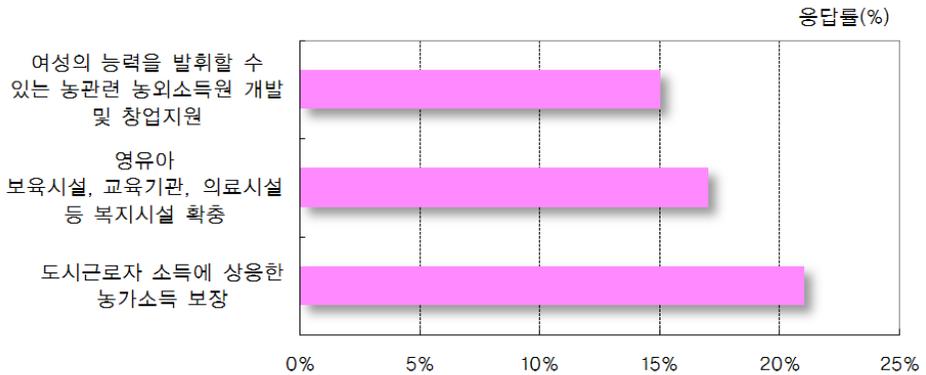
농외소득활동을 하면서 자녀보육 및 교육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농촌이 조성될 때, 젊은 여성들이 유입되고 후계여성농업인이 육성될 것이다. 농촌에 거주한다고 또는 농업인 남편과 결혼하였다고 하여 모든 여성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 본인의 선호에 따라 직업 및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림 32. 젊은 여성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선결과제: 한국농업대학 여학생 설문조사 결과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그림 33. 젊은 여성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선결과제: 중장년 여성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제 5 장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제5장에서는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를 전망하고, 역할 변화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 전망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를 농업 구조 변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 중심에서 조망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또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이고,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체계화시켜 나갈 것인가는 여성농업인 정책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정책 방향 수립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식품소비의 서구화에 따른 농업생산구조 변화가 일어나면서 양곡소비는 감소하고 육류 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종농업은 쇠퇴하는 반면, 축산, 과수, 채소 등의 시설원예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농가의 영농 형태도 소득 작목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논벼 농가의 비중은 감소하고, 채소와 과수농가는 증가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은 논벼보다는 주로 특용작물, 채소, 발작물 등의 영농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영농형태의 변화에 따라 향후 여성의 농업참여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이 종전 재화생산의 영역에서 재화생산 및 서비스 생산영역으로 분화되어 감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한층 강조될 전망이다. 즉 재화생산영역에서는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서비스 생산에서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에 따른 여가수요 증대 추세에 따라 농업의 문화 및 서비스 기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농업, 농촌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변화는 향후 농촌여성의 여성성에 더욱 의존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농산물이라는 재화생산영역에만 머무르던 과거의 농업은 생산성 향상에 의한 양적인 접근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었으며, 이에 따라 남성노동력과 이를 대체하는 자본재를 중심으로 농업경영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고품질에 대한 요구와 농업의 서

비스기능 확대는 소비자에 대한 대면적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농업 경영방식을 요구함으로써 경영체내 여성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농촌관광 및 마을개발사업에서 여성의 역할이 요구되고 도농교류 사업에서도 도시주부와 네트워크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산물 가공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또한 웰빙 문화와 사이버마켓 시장의 확대로 여성농업인의 손맛과 전통을 재현한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전통식품과 향토음식 등의 농산물 가공식품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고, 이에 농산물 가공분야에서 여성농업인 인적 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농가인구 감소와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방문교육도우미와 후견인(멘토)으로서의 역할, 마을 내 노인간병 도우미로서의 역할, 보육교사로서의 역할, 학교급식에서의 역할 등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의 추세이다. 유럽에서 농업부문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며, 이는 농업의 서비스 생산기능이 확대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유럽은 1970년대 말 이후 유럽공동농업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생산을 자극하는 시장정책을 후퇴시키는 한편, 농업의 서비스 생산기능에 주목하게 된다. 1970년대 하반기 이후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한편으로는 유탄현상에 의한 농촌인구의 증가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면서 농업의 사회적 기능이 농정의 우선순위에 오르게 되며, 농촌관광의 활성화 등으로 농업의 서비스 기능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의 분리, 농업사회보장정책의 확대 등으로 경영체내의 여성배우자 및 자녀 등에 관한 법률적 지위문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 유럽 각국에서 환경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공동농업정책 개정을 통해 환경농업 시책이 활성화됨에 따라 고품질 농업 생산부문과 서비스 생산영역에서의 여성의 우월적 역할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다. 유럽공동농업정책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농촌개발정

책의 경우 여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일랜드의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자문위활동, 프랑스 농림성의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관한 보고서’ 등의 활동은 이와 같은 변화된 농업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농촌 여건변화에 따른 각 활동영역에서 여성농업인 활동의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험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SWOT분석

| 강 점(S) | 약 점(W)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일지 및 회계장부 작성 • 직거래 판매 • 식품안전성 의식 높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 • 영농 및 농기계 기술 부족 • 경영능력 부족 • 조직화, 네트워크 부족 |
| 기 회(O) | 위 험(T)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여성농업인 가산점 제도 • 소비자의 친환경, 고품질 선호 •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고령화 • 후계여성농업인 유입 저조 • 일과 가사일 병립의 어려움 • 개방화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

표 19.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SWOT분석

| 강 점(S) | 약 점(W)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와의 동질감 높음 • 전통, 향토식품 제조 기술 • 식품안전성 의식 높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의 영세성 • 전문경영능력 부족 •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 상품 마케팅, 홍보능력 부족 • 일손부족 및 인력관리의 어려움 • 인적 네트워크 부족 • 신제품 개발 능력 부족 |
| 기 회(O) | 위 험(T)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자아능력개발 • 여성창업지원제도 • 도농교류촉진법 개정 • 전통식품 관심 증대와 기능성 입증 • 전자상거래 발달 • 전통식품의 상품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의 서구화, 외식증가 • 동종 간 경쟁 심화 • 식품의 위생관리 중점 • 수입농산물 증가 • 공장방식 제품의 고급화, 다양화 • 소비자 인지도 부족 |

표 20.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 SWOT분석

| 강점(S) | 약점(W)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녀회 활동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 원활 •농산물 가공 및 직거래 능력 •지역의 노인 및 여성, 아이들의 문제를 보다 잘 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더십 부족 •정보수집 및 활용능력 부족 •법제도적 지식 부족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은 하기 어려움 |
| 기회(O) | 위험(T)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의 문화적, 서비스적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광, 도농교류 확대 •정부의 지역개발 지원 확대 •정부의 여성의 참여 유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마을이장 확대 목표 설정 및 지원정책 - 마을개발사업에 여성참여 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사, 농업노동과 병행하는 어려움 •농촌의 고령화, 젊은 여성농업인 급감 •남녀차별의식 |

여성농업인의 역할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 방향도 새롭게 변해야 한다. 농가인구 고령화와 소비자 선호 변화 등의 농업·농촌 여건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활동 영역은 더 넓어지고, 역할과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전체 여성농업인을 단순히 복지대상자로 간주한 여성복지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생애주기별, 성장단계별 여성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즉, 생애주기와 성장단계별 여성농업인이 각각 처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별 정책 추진 방향은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정책과 지원을 수립하는 것이다. 젊은 여성농업인은 후계 인력육성 대상으로,

중장년 여성농업인은 전문 인력화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원하는 고령여성 농업인은 생산자원화 대상으로, 초고령 농업인은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분류하여 각 주기에 필요한 정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의 성장단계별 정책 추진 방향은 영농의 진입, 성장, 은퇴단계에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수립하는 것이다. 진입단계에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해서는 농업·농촌에 연착륙할 수 있는 지원 대책, 성장단계에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해서는 전문 농업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립 대책, 은퇴단계에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해서는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대책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활동 성장단계는 생애주기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후계여성농업인 등의 젊은 여성농업인은 주로 진입단계에 있으며, 중장년 여성농업인들은 주로 성장단계에 있고, 고령 여성농업인들은 주로 은퇴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활동 성장단계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 진입단계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과제

후계여성농업인 육성기반 확충

신규후계농업인을 선정할 때 여성 가산점 제도가 1992년에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²² 총점 5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점 가산점을

22 2007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하면,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지원대상자는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현재 45세 미만인 자 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 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다.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지원 대상자는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현재 35세 미만인 자 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다.

부여하고 20% 내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는 여성 우대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우대제도가 있어도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다. 1999년 20.3%까지 선발되었던 후계여성농업인 비율은 이후 하락 추세에 있다.

후계여성농업인 비율 하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하나는 딸에게 영농 승계를 기피하는 상속문화로 영농에 종사하고 싶어도 영농기반이 없어 후계여성농업인으로 선정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젊은 여성의 농촌 유입 저조현상으로 후계여성농업인 지원대상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후계여성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단순히 가산점 제도만으로 효과를 얻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후계여성농업인 육성은 농업인력 확보 차원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의 농촌 유입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젊은 여성농가인구의 감소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후계여성농업인의 증가는 농촌의 재생산기능의 회복과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표 21. 연도별 후계여성농업인 선정 현황

|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
| 전체후계농업인 (천명) | 9.0 | 9.0 | 8.3 | 9.7 | 8.2 | 8.5 | 7.8 | 4.8 | 4.7 | 3.3 | 2.5 | 1.9 | 1.1 | 1.1 |
| 후계여성농업인 (명) | 213 | 267 | 442 | 595 | 707 | 823 | 1,011 | 980 | 859 | 462 | 339 | 264 | 147 | 158 |
| 여성비율 (%) | 2.4 | 3.0 | 5.3 | 6.1 | 8.6 | 9.7 | 12.9 | 20.3 | 18.4 | 14.1 | 13.4 | 13.8 | 13.1 | 15.0 |

자료: 농림부, 2006.

후계여성농업인 육성기반 확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남녀 차별 없이 실질적 영농승계자에게 영농기반을 상속·증여하는 양성 평등한 상속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상속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속제도를 경영이양연금제도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일자상속제도를 채택하여 아들, 딸 불문하고 농사를 짓는 자녀에게 영농기반을 상속할 경우 경영이양연금을 20% 더 주는 혜택을 부여한다. 따라서 영농 의지가 있는 후계여성농업인들의 영농기반 확보가 수월해지고,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도 촉진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둘째, 후계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육성주체, 육성단계별 정책, 후속지원대책, 예산투자확보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특히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20~40대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계획과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젊은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유입 확대를 유도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가소득 안정, 농업인의 삶의 질 보장, 양성 평등한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 등은 선결과제일 것이다. 한국농업대학 여학생 설문조사에서는 농촌에 살고 싶지 않은 이유로 농사일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2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젊은 여성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위해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외소득원 개발 및 창업 지원(20.8%)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농촌에 거주한다고, 농업인 남편과 결혼하였다고 모든 농촌 여성이 농사일을 해야 한다는 발상은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남편은 농사일을 하지만 여성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외소득활동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농촌관광, 농산물가공 및 유통, 도농교류사업 등의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 친화적인 농외소득원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의 외연적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후계여성농업인 육성의 범위를 농산물 가공유통, 농촌관광분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잠재적 여성농업인 대상 정책 홍보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한국농업대학 여학생의 68%가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후계여성농업인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58%였다. 이는 정부추진체계 단절의 문제와 정책홍보 미흡 등의 문제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잠재적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홍보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수요자 중심의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프로그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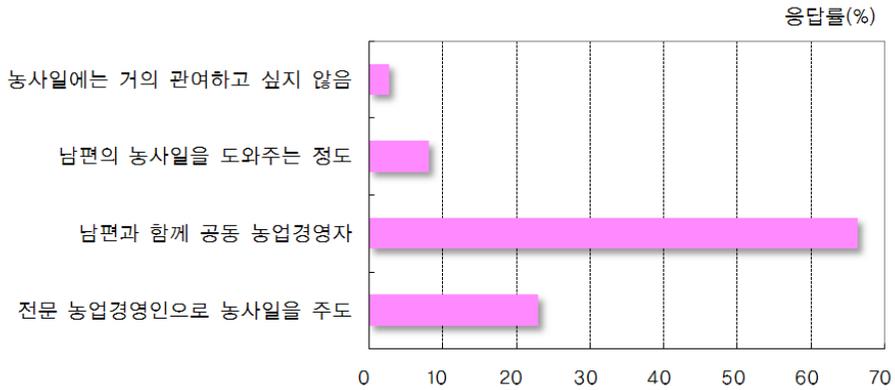
진입단계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또 다른 정책과제로 수요자 중심의 후계 여성농업인 육성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부부농업인 육성 제도 마련과 농과계 대학에 여성관심 전공분야 유치 및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한국농업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의 영농 정착률은 비농업인과의 결혼, 영농기반 취약, 가사와 육아부담 등의 이유로 남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졸업 후 영농에 종사하는 여학생 졸업생들의 정착 유형을 보면, 남편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며, 그 다음이 부모와 같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영농 취업을 한 경우이다. 그러나 독립적인 자립영농은 거의 없다.

한국농업대학 여학생 설문조사에서도 남편과 함께 공동 농업경영자로 영농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잠재 여성농업인은 독자적인 창업이나 영농활동보다는 남편과 함께 공동경영주로서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실제로 남편과 함께 영농에 종사할 경우 농업에 정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잠재 여성농업인의 농업 유입과 영농정착의 확대를 위해서는 남편과 함께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부부창업농, 부부후계농업인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부부농업인에게 정책 지원 혜택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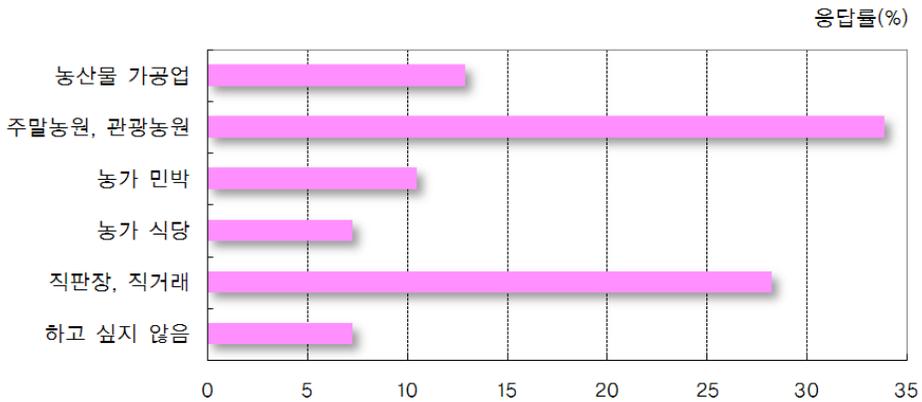
한국농업대학에 재학 중인 77명의 여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졸업 후 농업관련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93%로 잠재 여성농업인의 농업관련 농외소득활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농업관련사업 중 주말농원, 관광농원을 해보고 싶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직판장, 직거래 운영, 농산물 가공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농업관련사업 창업 및 참여에 여학생들의 관심은 높은 반면, 여성을 대상으로 농업관련사업과 관련된 기술 및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그림 34. 한국농업대학 여학생이 원하는 향후 영농 참여 형태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그림 35. 한국농업대학 여학생의 향후 농업관련사업 종사 의향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따라서 잠재 여성농업인의 교육 수요에 부응하여 농과계 대학에 농산물 가공, 유통, 관광농업 등 여성관심분야 전공과목의 유치·확대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변화하는 농촌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여성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 보육교사, 결혼이민자 대상 한글교사 등의 세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성장단계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과제

실질 공동경영주 지위 인정

이 연구 설문조사에서 50% 이상의 중장년 여성농업인이 실질적인 농가 내 공동경영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²³ 다른 선행연구(김경미 외, 2006; 최윤지, 2007)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동 경영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지위와 권리를 인정하는 법 규정 및 제도적 장치는 거의 전무하다. 경제활동에서 공동 경영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농업보조자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은 공동 경영주로서의 사결정권, 재산권 및 대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며, 농가 경영주 중심의 정부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다.

공동경영주 지위 인정은 여성농업인의 자아성취감 고취와 영농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여 농업경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독일,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도 여성농업인에게 공동경영주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80년 농업법에서 농지소유와 무관하게 한쪽의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동의나 서명 없이도 농장의 경영에 관한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하여 여성농업인의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 경영인으로 인정하는 실질 공동경영주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박민선, 2000). 현재 농지를 소유한 여성농업인이 극히 소수이므로 여성 명의로 자산의 소유권을 전환하는 것은 가족원 간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같은 실질 공동경영주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실질 공동경영주 제도와 병행하여 농가 내에서 여성농업인의 권리를 인

23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본인의 영농활동상 지위를 공동경영주라고 응답한 중장년 여성농업인은 67%이다. 40대, 50대일수록, 농가소득 기여율을 높게 평가할수록, 농업노동기여도가 높을수록, 여성농업인 본인을 공동경영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정하는 양성 평등적인 의식을 확대·보급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 농가경영주와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원 간에 농업경영에 따른 역할과 의무, 보수 등을 문서로 명확히 하는 ‘농가경영협약’ 제도가 있고 더 나아가 농가 법인화 방법이 있다.

농가 법인화의 전단계라 할 수 있는 농가경영협약의 확산을 위해 농업정책에서 농가경영협약을 체결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대상 선정 시 부부합의에 의한 농가경영협약 농가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 후계농 및 창업농 우선 선발, 정책자금 지원 시 가점 부여 등이다. 일본의 인정농업자 제도는 실질적으로 공동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 가족경영협정 체결 등을 요건으로 부부 등에 의한 인정농업인 공동신청을 허가하고 있어 여성농업인 및 농업 후계자도 경영주와 함께 인정농업인이 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이 활동하기 편한 환경 조성

가. 도우미 제도 확대 및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모든 활동영역에서 여성농업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일과 가사의 양립을 유지하는 문제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가사 노동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도우미 제도 도입과 효율적인 도우미 운영체계를 위해서 도우미 양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는 사고발생 농가를 위한 ‘영농도우미사업’, 고령 취약 농가를 위한 ‘가사인력지원사업’, 출산 여성농업인을 위한 ‘출산농가도우미사업’이 있으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중장년 여성농업인에게는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도우미 제도이다. 따라서 현재 출산, 고령, 사고 등에 한정되어 있는 도우미 제도를 가사, 육아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특히 농번기 식사 준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도우미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전남 나주시는 올해 9월부터 다도면 덕림리 만세마을 등 15

곳을 시범마을로 선정하고 1,500여만 원을 지원하여 급식 도우미를 파견해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급식 도우미는 마을에서 모은 쌀과 반찬 등 부식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들에서 일하는 농업인에게 점심과 새참을 제공한다. 경북도는 칠곡군과 청송군 등 2개 지역에 사업비 4,000만 원(1곳당 2,000만원)을 들여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농번기에 농업인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마을 공동 급식소도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는 일종의 도우미 제도라 볼 수 있다.²⁴

농가의 도우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부족하여 도우미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도우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농의 유희인력(은퇴자, 자원봉사자, 주부 등) 또는 지역 내 활동 가능한 여성농업인을 파악하여 농가도우미 인력을 양성하고 알선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 여성농업인은 영농경험과 이해도가 높아, 도우미로서 경쟁력이 높다. 다양한 수요, 전문성 강화, 표준화 프로그램을 위한 여성농업인 단체 주관으로 인력지원단 운영 및 인력 지원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여성 평균임금 수준을 감안하여 도우미 이용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 고령취약가구 가사인력지원사업

- 지원대상: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등 농어촌 고령가구 중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정에 가사도우미를 파견해 빨래, 청소, 반찬지원, 말벗 등의 서비스를 지원
- 1만 5천원 지원: 사업비로 15억 1,400만 원(국비 10억 6,000만 원, 농협 4억 5,400만 원)
- 자원봉사자에게 여비 명목으로 하루 1만 원(교통비 5,000원, 실비 5,000원)의 실비 지원, 동거리 12km 초과할 경우 교통비 5,000원의 추가지급

24 본 연구는 도우미를 농가에 직접 와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확대하여 여성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제도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을 적용한다.

- 미장, 목공 등 난이도가 높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생활환경개선작업 1인당 1일 3만 원
- 사고발생농가 영농인력지원(영농도우미)사업
 - 지원대상: 69세 이하, 농지소유 5만㎡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 농작업, 교통, 재해사고 등 뜻밖의 사고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경우 영농도우미를 지원, 농작업을 도와주는 제도
 - 사업비 40억 원(국고 28억 원, 자부담 12억 원, 지원 대상 8,000명)
 - 영농도우미 지원액 1일 3만 5,000원(농촌평균임금의 70%) 지원, 나머지는 신청농가에서 자부담
 -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해 지원하되 총 10일 이내(35만 원)에서 지원
- 출산농가도우미사업
 - 지원대상: 출산여성농업인, 출산 전후 180일 중 75일(2007년부터)
 - 도우미 이용료(3만 5,000원/1일)의 80%, 자부담 20%
 - 2000년 시범사업(68개 시군)에 이어 2003년 전국으로 확대

나. 농촌형 보육체계 마련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젊은 여성농업인에게는 육아문제가 영농활동의 큰 제약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농촌지역 특성상 지역에 따라 아동 분산, 이동거리로 인한 보육시설 접근성 제한, 농번기와 농한기로 인한 보육시설 수요의 계절성, 소득이 부정기적이어서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있다.

농어촌지역 1,420개 읍면의 35%인 497개 읍면에 보육시설이 없어 농업인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43% 수준이다(농림부, 2006). 현재 젊은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제도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제도’와 보육시설의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제도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있으나, 농촌지역의 보육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농촌보육시설 조사 결과, 최대 15개, 여성농업인센터의 보육시설 조사에서는 최대 11개 면을 한 개의 보육시설이 관할하고 있고, 조사 대상 아동 17%가 보육시설에 등원하기 위해 편도 1시간 이상, 최장 2시간가량 차량 탑승함으로써 아동의 피로와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농림부, 2007).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 344곳, 여성농업인센터 34곳 대상 설문조사 결과, 31.3%가 재정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였으며 보육시설 개보수에 많은 어려움이 따라 보육환경 악화 및 보육시설평가인증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열악한 환경과 급여 등의 근무조건으로 인해 교사수급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농림부, 2007).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자녀 보육 및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에서 운영하는 보육센터 및 방과 후 교실 지원과 여성농업인센터 확충을 가장 높은 순위로 꼽았다. 농촌형 보육체계의 대안으로 모든 면단위에 여성농업인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현재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육 및 방과 후 교실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육 및 교육시설은 접근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마을 내 위치한 여성농업인센터는 타 보육시설보다 경쟁력이 높다. 그러나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대부분의 여성농업인센터가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보육 및 방과 후 교실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전문 보육 교사 양성 등 여성농업인센터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인근에 보육시설이 없고, 아동수가 적어 보육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어려운 지역의 소수 아동을 가정 등 일정한 장소에서 보육하는 가정 보육도우미제도 시행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 5만㎡ 미만 농어가(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로서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여성농업인(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
- ※지원 제외: ①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 ②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에 의해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 ③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취원아 중 교육비 지원을 받는 아동
- ※단,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의 2자녀 이상 보육료, 교육비 지원대상에 해당되거나 저소득층 보육료,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지원대상
- 지원금액: 월별로 지급하되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 '07 연령별 월지원액(1인/월): 만 0세 25만 3,000원, 만 1세 22만 2,000원, 만 2세 18만 3,000원, 만 3세 12만 6,000원, 만 4세 11만 3,000원, 만 5세 16만 2,000원
- 지원절차: 해당 여성농업인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지원대상자를 검토·확정하고 지원금을 농업인 계좌에 입금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 5만㎡ 미만 농어가로서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등의 사정으로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0-5세 자녀를 둔 여성농업인(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
- ※지원제외: 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② 아동의 부모 모두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③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으로부터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제외대상 포함
- 지원금액: 월별로 지급하되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 '07 연령별 월지원액(1인/월): 0세 12만 6,000원, 1세 11만 1,000원, 2세 9만 2,000원, 3세 6만 3,000원, 4세 7만 9,000원, 5세 8만 1,000원
- 지원절차: 해당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지원대상자를 검토·확정하고 지원금을 농업인 계좌에 입금

여성농업인센터

- 설립목적: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영유아보육, 방과 후 학습지도, 농한기 문화 활동 교양강좌, 도농교류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젊은 여성 농업인의 농촌 정착 도모
- 법적근거: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제25조, 여성농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운영현황:
 - 2001년 4곳 시범운영(충북 영동, 경북 안동, 경남 진주, 충남 서천)
 - 2002~2003년 18곳 운영
 - 2004년 27곳 운영
 -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에 의해 지방사업으로 이양, 34곳 운영
 - 2006년은 지자체의 보육정보센터를 포함하여 50곳 운영(농림부 지원 센터는 37곳: 충북(3), 충남(3), 경북(2), 경남(6), 경기(4), 강원(3), 전북(6), 전남(4), 제주(6))
 - 2008년 163곳으로 확대 예정(삶의질 5개년 특별계획,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
- 사업내용:
 - 필수사업: 보육, 공부방, 상담, 기타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 취미프로그램
 - 임의사업: 여성농업인센터가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요구에 맞게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선택사업
- 사업추진체계:
 - 농림부: 제도운영, 지도감독
 - 도: 사업지침 마련, 사업자 선정, 사업예산 확보, 사업비 배정, 사업비 결산, 사업실적 평가 및 지도감독
 - 시·군: 사업신청서 접수 및 도에 이송, 사업비 교부, 지도감독, 사업비 정산 등

다. 여성용 농기계 임대 활성화

여성용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확산은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농업노동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여성용 농기계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이용도를 높이는 것은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밭농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용 농기계 개발되어도 가격이 비싸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통계를 보면 농자재 가격이 생활필수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기계 역시 일반 소비재에 비해 고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농기계 연간 사용일수가 짧아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구비하는 것은 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농산물 생산단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여성용 농기계 구입의 경우, 다른 농기계 구입에 우선순위가 밀려 구입비율이 매우 낮다. 이러한 낮은 이용률로 여성용 농기계 개발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여성용 농기계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서 여성용 농기계를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구매하여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여 여성용 농기계를 필요한 여성농업인이 필요한 때에만 저렴하고 편리하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용 농기계 임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임대용 농기계에 대한 구입지도와 A/S 강화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 친화적인 농의소득활동 지원

여성농업인의 농업관련 농의소득활동은 농산물 가공, 직거래 판매, 농가 민박, 식당, 관광농원 등이다. 이러한 농의소득활동은 개인의 창업, 영농조합법인 형태, 또는 취업자의 형태로 행해진다. 여기서는 여성농업인의 농업관련사업 창업에 대한 정책과제만을 다룰 예정이다.

여성농업인 창업은 소규모 영세한 규모이므로 소비자 인지도가 낮고 인

증을 받기 어려워 판매처 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대상 중장년 여성농업인은 마케팅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따라서 소규모 업체의 마케팅 전략(예: 문화마케팅) 교육과 식품위생법, 품질인증제도 등에 관한 식품관련 법제도 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규모 영세업체의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공동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경북 의성의 여성농업인 농산물 가공업체 공동브랜드 ‘가을빛고운’은 좋은 예이다. 여성농업인 가공품의 공동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과 여성농업인 가공품 박람회 등 소비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 농산물 가공품 통합브랜드 ‘가을빛고운’

- 주소: 경북 의성군 단북면 정안1리
- 의성마늘, 고추, 사과 등을 이용한 가공농산물 제조 및 판매
- 15곳의 사업장마다 독자적인 농산물 가공업을 하고 있었지만,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한계가 있어 공동 기술지도와 공동 시장개척의 목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 ‘가을빛고운’ 브랜드를 가진 마늘고추장, 사과고추장, 참기름 등으로 가을빛고운 선물세트 개발

여성농업인의 네트워크 부족이 경영상의 큰 약점이므로 기술 및 경영 정보 공유, 애로 해결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 품목별 연구회를 조직하여 같은 사업을 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한 여성농업인 또는 전문경영인과 신규 창업 여성농업인을 연결시켜 1대 1로 기술지도와 경영 문제를 상담하여 사업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여성농업인 네트워크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또한 주 고객층인 도시소비자와의 네트워크 강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여성농업인의 개인 창업 또는 영농조합법인 결성 등은 농촌여성일감갓기사업과 창업농 지원제도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다.²⁵ 그러나 농촌여성일감갓기사업은 지원자금과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고 농림부의 창업농 지원제도는 여성농업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종합적인 창업지원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창업센터(가칭)’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창업센터’는 창업상담, 정보제공, 기술상담, 품목연구회 운영, 경영교육, 정보화 교육, 해외연수, 산학 협동 등 여성농업인의 창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기관이 될 것이다. 창업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일본의 여성농업인 창업지원제도(부록 II 참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기술 및 경영 전문교육 강화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교육이다. 과거의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은 생활, 의식, 식생활 교육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영농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도 전문 인력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농기술 및 경영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농업연수부, 농촌진흥청, 시도와 시군청, 농협, 농업기술센터, 여성

25 농촌진흥청은 여성농업인의 농의소득 기회 증대와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1990년부터 ‘농촌여성일감갓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여성일감갓기사업의 초기에는 전국에 5곳의 시범사업소를 선정하여 육성하였는데, 2003년에는 169곳으로 확장되었다. 사업소당 800만~4,000만 원의 지원금은 주로 공동작업장 확보, 생산설비 및 기자재 설치, 기술습득 및 재료구입, 포장 디자인 개발 및 포장지 제작 등에 소요하고 있다. 농산물 가공 품목은 초기에는 김치, 도토리묵, 메주, 말린 나물 등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 이용한 품목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점차 품목이 다양화되어 현재는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등의 전통장류, 한과류, 사과, 배, 포도 등의 음료류, 참기름, 들기름 등의 기름류, 콩나물, 잔치음식 등 농산 식품류, 천연염색 제품류, 삼베가공 제품류, 누비 제품류, 생활 잡화 등 비식품류 등이 있다.

농업인단체, 농업계 실업고등학교 및 대학 등 여성농업인 교육기관은 난립해 있으나 체계적인 역할분담이 부족하여 교육내용이 중복되어 있다. 여성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단계별 교육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초, 중, 고등과정으로 구분하여 여성농업인의 활동 및 의식수준에 맞는 단계적 교육이 실효성 있다. 여성농업인의 수준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부부 공동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부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공동경영주로서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경영능력 향상 방안이다. 여성농업인이 교육을 꺼리는 이유가 시간을 내기 어렵고 교육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조사된 바 있다(김영옥 외, 2003). 그러므로 집체식 교육보다는 원하는 장소에서 품목별 연구회 등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스스로가 주제를 선정하여 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육방식의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촌관광 및 마을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토론, 회의, 조직생활 등에 관한 리더십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 은퇴단계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과제

농어민 국민연금 확대 적용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중장년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후계여성농업인도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여성농업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2006년 65세 이상 농가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남성 고

령인구 비중보다 높은 편이다. 여성의 평균수명은 남성보다 길고, 여성은 일반적으로 연상의 남성과 결혼하고 또한 재혼의 비율도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하여 훨씬 낮아, 배우자 없는 독신 여성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노후의 수입원이기도 했던 자녀의 출산 수 및 동거 자녀수는 감소하고 있고, 농가의 45% 이상이 부부 중심의 2인가구이다.

더욱이 여성농업인의 학력수준과 농지 및 재산 소유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는 점에서 고령여성농업인, 특히 독거 고령여성농업인의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남편 명의의 농지를 남편 사별 후 여성농업인이 승계할 경우 자녀와 함께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여성노인의 건강상태는 대체로 남성노인에 비하여 열악하며, 치매노인의 비율도 여성노인의 경우에 남성노인보다 높다.

여성농업인의 대부분이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비한 준비를 못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바라는 실정이다. 그러나 고령여성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는 도시 노인은 물론 남성농업인에 비해서도 매우 미흡하다.

국민연금제도 규정에 의하면²⁶ 농지원부(또는 축산업등록증)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통해 농업인임이 증명되면 농업인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에 대한 일정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²⁷ 그러나 현실은 농지원부에 이름이 기재된 경우만 농업인 연금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여성이 실질 경작자임에도 농지원부에 이름이 없으면 무소득 배우자로 간주되어 임의가입자가 된다. 즉, 농업인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다. 농업인

26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지역까지 확대되어 1995년 하반기부터 농어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경과조치로 60세를 넘은 고령농업인들이 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2000년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고령자에 대한 특례 노령연금 제도를 운용하였다(김정호 외, 2007).

27 농업인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여, 2007년에 농어민 1인당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한선을 28만 1,000원으로 인상하였다. 전체 45등급 가운데 2006년까지는 1~13등급은 보험료의 50%를 지원했는데, 2007년에는 50% 지원등급 범위를 14등급으로 확대하였다(김정호 외, 2007). 60세 생일부터 연금수급권을 가질 수 있고, 이후 농사를 계속 짓더라도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확인서로 농업인임을 증명하더라도 농지원부에 이름이 없으면 농업인 연금혜택은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여성농업인의 농업인 연금 가입 자격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다(김경미, 2006). 현재 농지를 소유한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매우 낮아 여성농업인의 농업인 연금 가입률은 11%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농림부, 2006). 관련법 개정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농업인 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어도 농지원부에 등재된 경영주에게만 농업인 연금 가입권이 주어진다면, 여성농업인이 농업인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농사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 사망 시 본인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쪽의 연금만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에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권이 두 개 이상 발생한 경우 본인의 연금액에 보충적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의 20%를 추가해서 수급할 수 있게 되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소득재분배 목적이 있으므로, 표준소득등급이 낮아 납부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인에게는 연금수급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여성농업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인 1연금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이 비록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업인임을 증명하면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농업인의 농업인 연금제도를 농가경영협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2년부터 농업인 연금제도가 확대되어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고 경영에 참가하는 여성농업인, 후계자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보험료(2만 엔)에 대해 일정비율의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다.

여성농업인도 실질적인 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농업인 연금제도 개편 방안을 제고해야 하며, 여성농업인도 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농업인 연금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고령여성농업인 생계보장지원 제도 마련

1995년 도입된 농어민 연금제도의 실질적인 수혜는 2014년이 되어야 실현될 전망이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은 국민연금의 수혜 대상에서 배제된다(김정호 외, 2007). 농업인은 농가주택과 농지소유로 인해 저소득 계층일지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는 실정이다. 경영이양직불제도에서도 농가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은 배제된다. 또한 정부의 고령농업인 소득지원 대책들도 농가단위 정책이므로 농가 경영주 중심의 대책이 대부분이고, 고령여성농업인은 고령농업인 정책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이에 노령여성농업인을 위한 생계보장대책이 필요하다.

경제활동을 원하는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해서는 농촌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전통식품 제조기술을 보유한 고령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마을단위 식품가공 영농조직(또는 영농조합법인)의 지원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 정책과제 추진 체계의 정비

위와 같은 활동 성장단계별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집행의 연계성 강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여성농업인센터, 도우미사업 등의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이 2005년 분권교부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정책 집행 의지와 예산이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의 핵심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업무 전담 인력이 없거나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표 20>.

중앙부처의 육성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의 촉진을 위해 지자체 여성농업인 정책의 추진 성과에 대한 사후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22. 각 도의 여성농업인 정책 담당 부서 및 업무 내용(2007년)

| 지역 | 담당부서 | 업무 내용 |
|----|-------------------------|---|
| 경기 |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업경영담당 | 여성농업인 육성,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
| 강원 | 농정산림국 농어업정책과 농어업소득담당 | 여성농어업인육성시책 추진, 영유아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농가도우미지원 등 |
| 충북 | 농정본부 농업정책팀 | 여성농업인 업무 전반 |
| 충남 | 농림수산물국 농업정책과 정보인력담당 | 여성농업인 육성시책 수립 및 추진,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지원 및 귀농자 관리,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농어민자녀 학자금 및 학교 급식비 지원 등 |
| 전북 |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어촌복지담당 | 여성농업인 지원계획 수립, 여성농업인 복지관련 사업, 농어촌지역 해외이주여성 복지관련 사업, 농어촌복지서무 관련 업무 등 |
| 전남 |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촌지원담당 | 여성농업인 육성,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 지원 등 |
| 경북 | 농수산물국 |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수립, 여성농업인 단체지원, 여성농업인리더십 교육,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 지원, 농촌총각결혼 지원, 농촌마을공동급식 지원 |
| 경남 | 농수산물국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육성담당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여성농업인시책 추진-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 등 |
| 제주 | 친환경농축산물국 농업정책과 | 여성농업인관련업무(농업인센터·영유아양육비·농가도우미) 등 |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제6장은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다.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별 실태와 특징 파악, 여성농업인 역할의 가치 평가, 여성농업인이 경제 및 사회활동 수행에서 부딪히는 제약요인 파악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여성농업인이 경제 및 사회활동 주체로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요약

제1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 검토, 연구의 내용,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범위를 농업에 주종사하고 있거나 농업과 병행하여 농외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의 여성 농업종사자로 규정한다.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은 영농활동, 농외소득활동(농산물 가공 및 유통, 농촌관광 등), 지역사회활동으로 구분한다. 경제활동 지위에 따라 독립경영주, 공동(또는 협업)경영주, 보조자, 임금취업자 등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은 생애주기에 따라 40세 미만의 젊은 여성농업인, 40대와 50대의 중장년 여성농업인, 60세 이상의 고령여성농업인으로 구분된다. 이 밖에 아직 농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향후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 여성농업인도 포함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연령, 학력 등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고,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농외소득활동, 지역사회활동 등의 활동영역별 실태와 특징을 분석한다.

농업의 주종사 인구 중 여성 비중은 1970년 28.3%에서 2006년 52.1%로, 지난 35년 동안 약 2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6년 60세 이상의 여성 농업 주종사자는 62%로 여성농업인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40세 미만의 젊은 여성농업인의 비중은 3% 이하로 매우 낮다. 40세 이하 여성의 영농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자녀양육 등의 가사노동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젊은 여성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고령화와 신규 젊은 여성농업인의 유입 저조는 농업·농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2005년 60세 이상 여성 농업주종사자의 25.7%가 남편과 사별하여 농가의 대표가 되었다. 이러한 독거여성노인 가구의 50%가 논벼 영농형태이며, 19.8%가 채소, 16.1%가 일반밭작물 영농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논벼 농가의 경우 전부위탁 비율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고, 채소 농가의 경우는 88% 이상이 노지채소를 생산하고 있다. 영세한 영농규모의 저소득 농가가 대부분이다.

2005년 평균 농가의 농업노동시간 중 가족 농업노동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고, 가족농업노동시간 중 여성 가족노동시간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44%가 농사일 전체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논농사는 남편, 밭농사는 여성농업인이 주로 담당하는 전통적인 농업노동 영역구분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생산수단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생산자조직 가입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소유농지 중 여성 명의로 된 농지가 전혀 없는 농가가 78%로 여성농업인의 생산자원 소유 정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와 같이 농업노동 비중 증가 등 여성농업인 노동이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경영의사결정, 생산자조직 참여 등에서 주체적 역할이 미흡하여 노동의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상태이다.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사회여건 변화로 창업이나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통식품과 향토음식 가공 및 제조, 직거래 유통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이 두드러진다. 농산물 가공업, 관광농원 등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젊은 여성농업인의 창업 의향이 높아, 향후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참여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간 농사 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적이 있는 여성농업인, 즉 농외소득활동을 겸업하는 여성농업인은 전체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8.7%(132명/1521명)에 그친다. 이

는 농가 내 농업인력 감소와 농업의 규모화 및 전문화 경향에 따른 결과인 동시에 여성농업인이 농외소득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요인이 있음을 나타낸다. 2005년 농업총조사에 의하면, 전체농가 중 농업관련사업 경영농가는 7.8%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관련사업 경영농가의 여성농업인은 일반농가보다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40대, 50대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은 자가 또는 지역농산물,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규모사업 자영, 영농조합법인 및 마을공동사업장 등에 취업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농산물 가공품 생산은 일부 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규모 생산방식 형태이고, 상품 유통은 상품 및 포장디자인 등이 세련되지 못하고 브랜드가 없어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대부분 단골고객 위주의 입소문에 의존한 소량주문 판매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농업관련사업 관련 노동 전체에서 본인이 담당하는 노동이 8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38%로 농업관련사업에서도 여성농업인의 노동비중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농업관련사업 경영(생산, 운영, 인력관리, 회계, 판매 등)에 있어 남편과의 업무 분담형태에 대해, 남편과 생산과 경영을 함께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2%로 가장 높아, 농업관련사업에 있어서도 절반 이상의 중장년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외소득활동은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자아실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 실태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거의 없어 본 연구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그 실태와 특징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으로 부녀회 활동(27%)과 지역봉사활동(25%)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 유형 중 마을행사 참여 및 봉사활동이 5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마을노인 돌봄(간병, 경로잔치 등), 지역개발사업 참여, 도농교류사업 참여 등으로 나타났다.

젊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마을 이장

에도 여성들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해 말 전체 이장 6,579명 중 6.6%인 435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성 이장 증가는 농촌사회에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의 여성 이장 확대 목표에 따른 도와 지자체의 여성이장 마을 재정지원정책, 농촌의 고령화로 복지관련 업무 증가, 도농교류사업, 농외소득활동 등 마을 부녀회와 협력 업무 증가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는 역할의 가치를 계량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첫째, 전국단위 농가조사 자료인 ‘2005년 농가경제조사’의 남녀 가족노동시간과 고용노동비용 자료를 이용하여 무급 가족노동인 여성농업인 농업노동의 잠재임금을 추정하였다. 둘째,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는 가사일, 농사일, 그리고 마을일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평가한 기회비용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였다.

농가에서 고용하는 남녀 노동력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형성되는 농촌임금을 통해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농업노동은 노동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노동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는 임금이 존재하지 않아 그 가치는 잠재임금(*shadow wage*)의 형태로 추정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2005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다산출물(*multi-output*)을 생산하는 농가에 있어서의 무급 가족 여성농업인 농업노동의 한계생산가치를 추정하여 가족 여성농업인의 잠재임금을 계측하였다. 2005년도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한 농촌의 남자와 여자의 1일 임금은 각각 5만 8,955원과 4만 43원으로 남녀 고용임금 비율은 68%이다. 그러나 이 연구가 추정한 가족노동 잠재임금은 표본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경우 95% 수준으로, 농촌 고용노동임금의 남녀 임금비율보다 높다. 즉, 현재 농촌노동시장에서 형성되는 여성 고용임금은 가족 여성농업인의 잠재임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은 고용노동보다 한계생산가치가 높아, 단순히 고용노동 임금으로 여성농업인의 노동 가치를 평가하면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상·재해 시 보상수준을 결정할 때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농촌일용임금 또는 일용농업노동임금 기준은 문제가 있다. 가족 여성농

업인의 노동생산성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경제 및 사회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중장년 여성농업인 설문조사에서 역할 유형별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지불의향금액 분석 결과, 중장년 여성농업인은 농사일의 대체인력 고용에 가장 높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며 그 다음이 가사일, 마을일 등의 순위이다. 토빗 모형을 이용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사일과 마을일에 대한 기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더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즉 인적자본이 높은 여성농업인은 농사일과 마을일에 대한 본인의 기회비용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농업보조자보다는 공동경영주, 전문경영자로 인식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본인의 경제·사회활동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장년 여성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별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여성농업인의 정책수요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영농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이 겪는 애로사항 중 농사일과 가사일의 병행으로 인해 이중으로 힘든 육체노동 문제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바쁜 농사일에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소홀하게 되는 문제였다.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영농 및 농기계 기술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생산자 조직 참여의 어려움과 영농활동의 고충을 상담할 곳이 없는 문제도 여성농업인이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농외소득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가사일 또는 농사일과 병행하는 어려움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개발 및 상품개발을 위한 투자자금 부족, 상품 판매처 확보 문제, 마케팅 및 제품 홍보 부족 문제, 식품 위생 및 인증제도 등에 대한 법적 지식 부족 문제, 종업원 고용 및 관리 등이 제약 및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역시 가사일, 농사일과 지역사회활동을 병행하는 문제로 나타났다. 마을개발 사업 등의 전문지식과 정보수집 및 활용 능력 부족도 제약요인이다. 또한 사회참여 경험과 리더십 부족도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여성농업인 대상 정책수요 조사 결과, 여성농업인이 겪고 있는 제약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여성농업인을 직업인으로 인정하는 법·제도적 체계 마련과 농업인 연금제도 확대 등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 등이 제시되었다.

중장년 여성농업인을 위해 과중한 농업 및 가사 노동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 여성농업인의 모든 활동에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자녀 보육 및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방안, 여성농업인의 농산물가공 및 농촌관광사업 등 농외소득활동 활성화 방안, 여성농업인의 지역리더 육성 방안 등에 관한 정책수요가 조사되었다.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수요는 농업인 연금 지원 확대,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촌형 지역 일자리 창출, 고령취약 농가의 집안일을 돕는 가사도우미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이 높은 응답률로 제시되었다. 노동능력을 갖춘 고령여성농업인은 계속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생활능력을 상실한 독거고령여성농업인 또는 은퇴를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농업인 연금 지원 확대로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여성농업인으로 한국농업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대상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젊은 여성의 농촌 유입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영유아보육시설, 교육기관, 의료시설 등의 복지시설 확충과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외소득활동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이 본인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농외소득활동을 하면서 자녀교육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농촌이 조성될 때, 젊은 여성들이 유입되고 후계여성농업인이 육성될 것이다. 농촌에 거주한다고 또는 농업인 남편과 결혼하였다고 하여 모든 여성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직업 및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5장에서는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를 전망하고, 역할 변화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의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 영농활동, 농외소득활동, 지역사회활동 등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각 역할의 경제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농업인의 경제 및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제약요인들이 산재해 있어, 여성농업인은 역할에 상응하는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농업의 주체인력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농가인구 고령화와 소비자 선호 변화 등의 농업·농촌 여건 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활동 영역은 더 넓어지고, 역할과 비중도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 여성농업인을 단순히 복지대상자로 간주하였던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생애주기별, 성장단계별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활동 성장단계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진입단계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과제로 후계여성농업인 육성기반 확충과 수요자 중심의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한다. 후계여성농업인 육성기반 확충을 위해 첫째, 남녀 차별 없이 실질적 영농승계자에게 영농기반을 상속·증여하는 양성 평등한 상속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후계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육성주체, 육성단계별 정책, 후속 지원 대책, 예산투자확보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셋째, 젊은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유입 확대를 유도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잠재적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홍보체계가 필요하다.

수요자 중심의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방안으로 부부농업인 육성 제도 마련과 농과계 대학에 여성관심 전공분야 유치 및 확대 등이 필요하다.

성장단계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과제로 실질 공동경영주 지위 인정,

여성농업인이 활동하기 편한 환경 조성, 여성 친화적인 농의소득활동 지원, 기술 및 경영 전문교육 강화 등을 제안한다.

실질적으로 공동경영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지위와 권리를 인정하는 법 규정 및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어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서 의사결정권, 재산권 및 대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며, 농가 경영주 중심의 정부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다. 현재 농지를 소유한 여성농업인이 극히 소수이므로 여성 명의로 자산의 소유권을 전환하는 것은 가족원 간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같은 실질 공동경영주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실질 공동경영주 제도와 병행하여 농가 내에서 여성농업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양성 평등적인 의식을 확대·보급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 농가경영주와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원간에 농업경영에 따른 역할과 의무, 보수 등을 문서로 명확히 하는 ‘농가경영협약’ 제도가 있고 더 나아가 농가 법인화 방법이 있다.

여성농업인이 활동하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우미 제도 확대 및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 농촌형 보육체계 마련, 여성용 농기계 임대 활성화 등을 제안한다.

여성농업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일과 가사의 양립을 유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농업인의 가사 노동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도우미 제도 도입과 효율적인 도우미 운영체계를 위해서 도우미 양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출산, 고령, 사고 등에 한정되어 있는 도우미 제도를 가사, 육아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우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농의 유희인력(은퇴자, 자원봉사자, 주부 등) 또는 지역 내 활동 가능한 여성농업인을 파악하여 농가도우미 인력을 양성하고 알선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농촌형 보육체계의 대안으로 모든 면단위에 여성농업인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현재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육 및 방과 후 교실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근에 보육시설이 없고, 아동수가 적어 보육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어려운 지역의 소수 아동

을 가정 등 일정한 장소에서 보유하는 가정보육도우미제도 시행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용 농기계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서 여성용 농기계를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구매하여 지역별로 분산 배치한 뒤 여성용 농기계를 필요한 여성농업인이 필요한 때에만 저렴하고 편리하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친화적인 농외소득활동 지원 방안으로 여성농업인 창업 소규모 업체의 마케팅 전략 교육과 식품위생법, 품질인증제도 등에 관한 식품관련 법제도 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품목별 연구회를 조직하여 같은 사업을 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과 주 고객층인 도시소비자와의 네트워크 강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소규모 영세업체의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공동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 가공품의 공동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과 여성농업인 가공품 박람회 등 소비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의 종합적인 창업지원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창업센터(가칭)’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창업센터’는 창업상담, 정보제공, 기술상담, 품목연구회 운영, 경영교육, 정보화 교육, 해외연수, 산학협동 등 여성농업인의 창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기관이 될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교육이다.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을 전문 인력화 방향으로 전환하여 영농기술 및 경영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단계별 교육체계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은퇴 단계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과제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과제로 농어민 국민연금의 확대 적용과 고령여성농업인

생계보장지원 제도 마련 등을 제안한다.

국민연금제도 규정에 의하면 농지원부(또는 축산업등록증) 또는 농어업인 확인서를 통해 농업인임이 증명되면 농업인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에 대한 일정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농지원부에 이름이 기재된 경우만 농업인 연금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여성이 실질 경작자임에도 농지원부에 이름이 없으면 무소득 배우자로 간주되어 농업인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여성농업인도 실질적인 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농업인 연금제도 개편 방안을 제고해야 하며, 여성농업인도 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농업인 연금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과 같이 여성농업인의 농업인 연금제도를 농가경영협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각종 고령농업인 정책에서 배제된 노령여성농업인에 대한 생계보장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경제활동을 원하는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해서는 농촌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활동 성장단계별 여성농업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집행의 연계성 강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중앙부처의 육성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부록 1

여성농업인 농업노동의 잠재임금 추정 모형

여성농업인의 잠재임금 도출을 위한 추정 모형으로 우선 다음과 같은 초월대수(translog) 투입물거리함수를 추정한다.

$$\begin{aligned}
 (1) \ln D_i(y, x) &= \alpha_0 + \sum_{m=1}^M \alpha_m \ln y_m + \sum_{n=1}^N \beta_n \ln x_n \\
 &+ \frac{1}{2} \sum_{m=1}^M \sum_{m'=1}^M \alpha_{mm'} (\ln y_m)(\ln y_{m'}) + \frac{1}{2} \sum_{n=1}^N \sum_{n'=1}^N \beta_{nn'} (\ln x_n)(\ln x_{n'}) \\
 &+ \sum_{n=1}^N \sum_{m=1}^M \gamma_{nm} (\ln x_n)(\ln y_m) + \epsilon_i
 \end{aligned}$$

단, $y_1 =$ 쌀, $y_2 =$ 쌀 이외의 작목, $x_1 =$ 토지, $x_2 =$ 고용노동시간, $x_3 =$ 남자가족노동시간, $x_4 =$ 여자가족노동시간, $x_5 =$ 자본, $x_6 =$ 기타 투입재, $\epsilon (= -u + v)$ 은 교란항이다.

투입물거리함수의 투입물에 대한 1차 동차 성질에 의해 다음과 같은 동차성 조건 (2)와 대칭성 조건 (3)을 부여할 수 있다.

$$(2) \sum_{n=1}^N \beta_n = 1, \sum_{n=1}^N \beta_{nn'} = 0, \sum_{n=1}^N \gamma_{nm} = 0, n, n' = 1, \dots, N$$

$$(3) \alpha_{mm'} = \alpha_{m'm}, \beta_{nn'} = \beta_{n'n}, n, n' = 1, \dots, N, m, m' = 1, \dots, M,$$

또한 투입물거리함수는 산출물에 대해서는 증가하지 않고, 투입물에 대해서는 감소하지 않아야 하는 단조성(monotonicity)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등호 제약식을 부과할 수 있다.

$$(4) \quad \frac{\partial \ln D_i(y, x)}{\partial \ln y_m} \leq 0, \quad m = 1, \dots, M$$

$$(5) \quad \frac{\partial \ln D_i(y, x)}{\partial \ln x_n} \geq 0, \quad n = 1, \dots, N$$

식(1)의 투입물거리함수를 추정하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2) 및 (3)의 제약식과 (4) 및 (5)의 부등호 제약식도 모두 충족되도록 추정하여야 한다.

위의 식 (1)에서 투입물거리함수의 로그값 $\ln D_i(y, x)$ 은 직접 관측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추정방법은 교란항 ϵ 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v 에 대해서는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u 에 대해서는 지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나 반정규분포(half normal distribution)를 가정한다.

이 연구는 Banker et al.(1991)처럼 최적화 모형이면서도 기술적 비효율성에 따른 교란항과 확률적 불확실성에 따른 교란항을 모두 감안하되, 두 가지 교란항을 결합하는 최적 비율까지 선택할 수 있는 Aigner et al.(1976)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 역시 완전한 형태의 최우추정모형은 아니므로 관측치의 표준편차 등을 구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일치성을 충족하는 파라미터 추정치는 구할 수 있으며, 추정과정에서 단조성조건도 부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식 (1)을 다음과 같이 다시 설정한다.

$$(6) \quad \epsilon_i = \begin{cases} \epsilon_i^* / \sqrt{1-\lambda} & \text{if } \epsilon_i^* > 0 \\ \epsilon_i^* / \sqrt{\lambda} & \text{if } \epsilon_i^* \leq 0 \end{cases}$$

단, $\epsilon_i^* \sim N(0, \sigma^2)$, $0 < \lambda < 1$.

따라서 ϵ_i 는 $\lambda=1$ 이거나 $\lambda=0$ 이면 각각 음의 절단정규분포(truncated normal distribution)와 양의 절단정규분포를 가진다. 이상의 가정 하에서 σ^2 의 MLE를 대입하였을 때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7) \ln L(r|\beta, \epsilon, \lambda) \propto \frac{n_1}{2} \ln \lambda + \frac{n_2}{2} \ln(1-\lambda) \\ - \frac{N}{2} \ln \frac{1}{N} \left[\lambda \sum_{\epsilon_i \leq 0} \epsilon_i^2 + (1-\lambda) \sum_{\epsilon_i > 0} \epsilon_i^2 \right]$$

단, n_1 과 n_2 는 각각 $\epsilon_i \leq 0$ 이고 $\epsilon_i > 0$ 인 관측치

Aigner et al.(1976)은 만약 최적 λ 가 알려져 있다면 다음의 함수를 극소화하는 β 값을 구하였을 때 이 추정치가 일치성을 가지게 됨을 보여주었다.

$$(8) S(r, \theta|\beta, \lambda) = \sqrt{\lambda} \sum_{\epsilon_i \leq 0} \epsilon_i^2 + \sqrt{1-\lambda} \sum_{\epsilon_i > 0} \epsilon_i^2$$

그러나 만약 λ 의 값이 알려져 있지 않다면 그 최우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9) \hat{\lambda} = \frac{(1/n_2) \sum_2 \epsilon_i^2}{(1/n_1) \sum_1 \epsilon_i^2 + (1/n_2) \sum_2 \epsilon_i^2}$$

또한 β 의 MLE는 다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0) Q = \frac{n_1}{N} \ln \frac{\sum_1 \epsilon_i^2}{n_1} + \frac{n_2}{N} \ln \frac{\sum_2 \epsilon_i^2}{n_2}$$

따라서 β 의 추정치는 식(10)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찾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최적 λ 를 식 (9)로부터 도출한다. 그러나 식 (9)을 직접 최소화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²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고는 반복 계산법을 사용한다. 우선 임의의 λ 값을 정하여 이를 $\hat{\lambda}^1$ 이라 하고, 이를 식 (8)에 대입하고 단조성과 동차성 제약 하에 풀어서 최적 β 를 구하고, 이를 $\hat{\beta}^1$ 이라 규정한다. 이 $\hat{\beta}^1$ 을 식 (9)에 대입하여 새로운 λ 인 $\hat{\lambda}^2$ 를 구하고, 이를 다시 식 (8)에 대입하여 $\hat{\beta}^2$ 를 구한다. 이 과정을 수렴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다.

28 이 연구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도 식 (9)를 직접 최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추정에 GAMS/MINOS를 이용하였다.

부록 2

일본의 여성농업인 현황과 정책

일본의 여성농업인 현황

■ 일반현황

일본의 농업취업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90년 60.2%였던 것이 2005년엔 53.3%를 나타냈다. 그러나 여성 농업인 비중은 여전히 전체 농업 취업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본 농업 및 농촌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0~60대 농업취업인구의 약 60%를 여성농업인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40, 50대 연령대에서는 여성이 5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농업주 종사자 비율 분포는 50대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고 40대와 60대에서도 여성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3. 농업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여성농업인 비율의 추이

단위: 천 명, %

| | 1990 | 1995 | 2000 | 2004 | 2005 |
|---------|--------|--------|--------|--------|--------|
| 농업취업인구 | 5,653 | 4,140 | 3,891 | 3,622 | 3,353 |
| 여성농업인 | 3,403 | 2,372 | 2,171 | 2,000 | 1,788 |
| (비율, %) | (60.2) | (57.3) | (55.8) | (55.2) | (53.3) |

주: 1. 농업취업인구는 만 16세 이상의 세대원 수(1995년 이후는 만 15세 이상의 세대원)이며 자영업에 종사한 자 혹은 자영업과 기타의 직업 모두에 종사한 자 중에서 농업을 주 직업으로 종사하는 자의 합계를 말한다.

자료: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농업구조 동태조사」.

표 24. 성별 연령별 농업취업인구 분포

단위: 명, %

| | 15-1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69세 | 70세 이상 | 합계 |
|----|------------------|------------------|------------------|-------------------|-------------------|-------------------|-------------------|---------------------|
| 남성 | 62,495 (62.8) | 59,554 (62.8) | 50,499 (41.0) | 97,549 (40.6) | 194,583 (40.6) | 383,730 (43.5) | 715,988 (50.0) | 1,564,398 (46.7) |
| 여성 | 37,060 (37.2) | 35,243 (37.2) | 72,688 (59.0) | 142,504 (59.4) | 284,487 (59.4) | 499,211 (56.5) | 716,999 (50.0) | 1,788,192 (53.3) |

자료: 농림수산성 「2005년 농림업센서스」.

표 25. 성별 연령별 농업 주종사자수 분포

단위: 명, %

| | 15-1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69세 | 70세 이상 | 합계 |
|----|-----------------|------------------|------------------|------------------|-------------------|-------------------|-------------------|---------------------|
| 남성 | 1,079 (82.6) | 28,566 (79.4) | 45,692 (62.4) | 92,068 (50.7) | 185,006 (48.4) | 338,873 (50.4) | 522,880 (58.4) | 1,214,164 (54.2) |
| 여성 | 227 (17.4) | 7,415 (20.6) | 27,484 (37.6) | 89,348 (49.3) | 197,183 (51.6) | 333,049 (49.6) | 371,802 (41.6) | 1,026,508 (45.8) |

주: 농업 주종사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원(농업취업인구) 중에서 조사날짜로부터 과거 1년간 주 직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를 말한다.

자료: 농림수산성 「2005년 농림업센서스」.

그림 36. 여성농업인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영농 분포(복수 응답)



자료: 농림수산성, 「농업구조 동태조사- 여성의 취업구조·경영참여 현황조사」(2003년).

1년 동안 농업에 60일 이상 종사한 여성이 있는 농가 중에서 여성농업인이 중요한 책임을 맡아 담당하고 있는 영농 분야가 있는 농가는 약 70.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농업경영에서 여성농업인의 노동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주요 담당 작목을 보면 노지채소가 28.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벼농사 16.4%, 시설채소 15.9%, 과수류 11.5% 등의 순이다.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참여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의 40%, 남성의 60%가 경영자 혹은 공동경영자로서 농업경영 전체 혹은 특정 부문의 경영을 도맡아 관리하고 싶다(또는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은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영방침은 남편 혹은 부모 등이 결정하지만 나의 의견도 반영했으면 한다'라는 응답도 50%를 차지하고 있어, 절반 정도의 여성농업인들이 여전히 농업보조자의 소극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 생산을 유지 발전시키고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목표로 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인정농업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도 인정농업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6월 이전까지는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경영주에게 한정되어 있었고, 부부, 부모와 자녀 등 복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인정신청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가족경영에서 실질적으로 공동

표 26.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참여에 대한 의향

단위: %

| 농업경영 참여 의향 | 남성 | 여성 |
|---------------------------------------|------|------|
| 1. 경영자로서 농업경영 전체를 도맡아 관리하고 싶다 | 7.2 | 5.3 |
| 2. 공동경영자로서 농업경영 전체를 도맡아 관리하고 싶다 | 28 | 14.8 |
| 3. 공동경영자로서 특정부문의 경영을 도맡아 관리하고 싶다 | 25.4 | 17.1 |
| 4. 경영방침은 남편 혹은 부모가 결정하고 내 의견도 반영하고 싶다 | 35.4 | 49.9 |
| 5. 지시받은 농작업에만 종사하는 것이 좋다 | 3.9 | 11.7 |
| 6. 응답 없음 | 0.9 | 1.2 |

자료: 농림수산성, 『농가의 남녀공동참가에 관한 의향조사』(2004년).

경영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나 후계자에 대해서도 공동경영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2003년 6월 인정농업인제도의 운용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공동경영자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인정농업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인정농업자 중 여성의 비율은 1998년 1.49%, 2004년 2.02%, 2006년 2.44%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부부 인정농업인 공동 신청에 필요한 요건은 1) 농업경영개선계획 인정 신청을 하는 명의인이 모두 농지법상의 세대원일 것 2) 가족경영협약 등이 체결되어져 있으며 해당 농업경영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 해당 명의인 모두에게 귀속할 것 3) 농업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명의인 모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명확할 것 4) 해당 가족경영협약 등의 상호결정이 준수되고 있을 것 등이다.

표 27. 여성 인정농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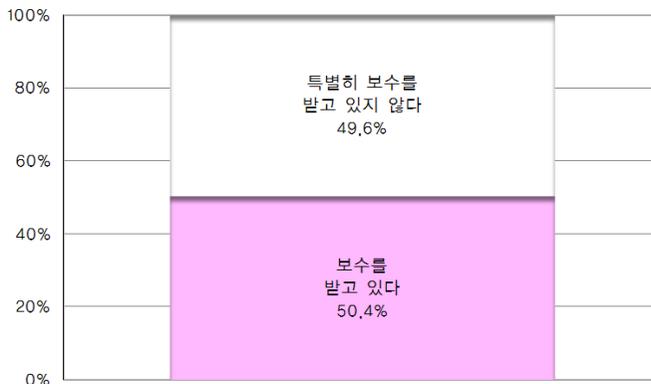
단위: 명, %

|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실수 | 1,780 | 2,140 | 2,539 | 2,746 | 3,149 | 3,402 | 3,685 | 4,125 | 4,896 |
| 비율 | 1.49 | 1.57 | 1.75 | 1.83 | 1.93 | 1.98 | 2.02 | 2.15 | 2.44 |

주: 2004년 이후의 인정농업자는 부부에 의한 공동신청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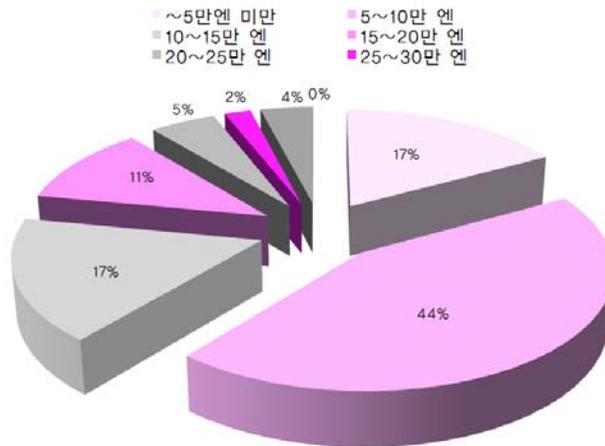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성 경영정책과, 「농업경영개선계획의 영농유형별 인정현황」.

그림 37. 여성농업인의 보수 및 급여 수취 현황



자료: 농림수산성, 「농업구조 동태조사- 여성의 취업구조·경영참여 현황조사-」(2003년).

그림 38. 여성농업인의 보수 수취금액 비율 분포



자료: 농림수산성, 「농업구조 동태조사- 여성의 취업구조·경영참여 현황조사」(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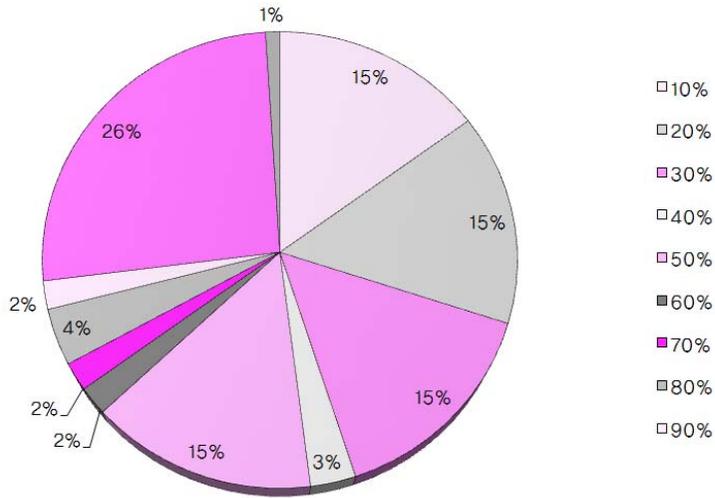
여성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농업에 종사하면서 급여 혹은 보수를 받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50.4%로, 과반수의 여성농업인이 보수를 받고 있다.

보수를 받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한 달 평균 수취금액은 10만 엔 이하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보수액은 적은 편이다. 5만~10만 엔 보수를 수취하는 비율이 44%로 가장 높고, 30만 엔 이상은 4% 정도로 나타났다. 일본 여성농업인의 절반이 농가 내에서 일정 보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지위가 우리나라 여성농업인보다 높은 편이나, 수취 보수액은 적어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은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농업인 본인이 받은 보수를 ‘전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응답한 자는 27.2%이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비율이 50% 이하’라고 응답한 자는 62.8%이다. 즉, 보수를 받고 있어도 명목상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농업경영에 있어서 보수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의향 조사 결과, 90% 이상이 보수를 받고 싶어 하며, 그 수취방법에 대해서는 약 60%의 여성농업인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또는 농업수익에 따라 일정비율로 보수를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9. 한 달 수취 보수액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 비율 분포



자료: 농림수산성, 『농업구조 동태조사- 여성의 취업구조·경영참여 현황조사-』(2003년).

표 28. 보수 수취방법에 대한 여성농업자의 의향

| 설문항목 | 응답 비율(%) |
|---------------------------------|----------|
| 정규적(월급, 분기마다 등)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싶다 | 34.1 |
| 농업수익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보수를 받고 싶다 | 21.5 |
| 가족과의 협의를 통해서 돈이 필요할 때 보수를 받고 싶다 | 24.5 |
| 경영주 판단으로 보수를 받고 싶다 | 10.8 |
| 보수는 필요 없다 | 4.3 |
| 기타 | 1.5 |
| 응답 없음 | 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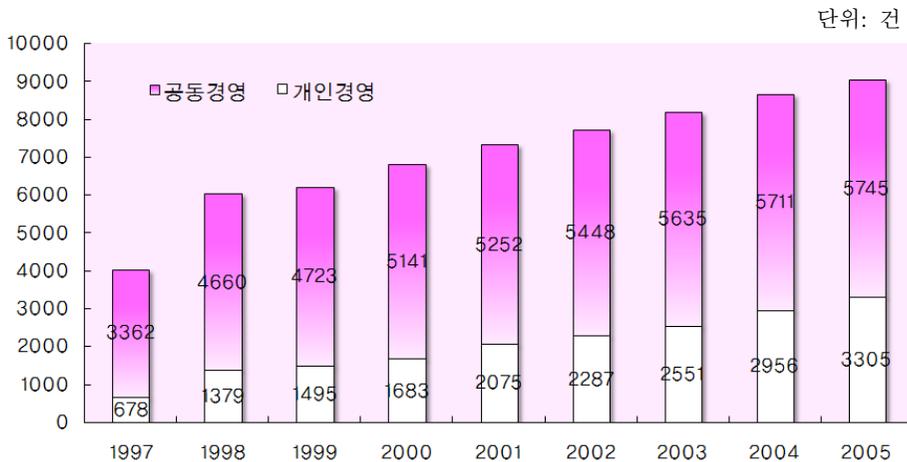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성, 『농가의 남녀공동참가에 관한 의향조사』(2004년).

■ 여성농업인의 창업 현황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품 생산, 직판장 판매, 농촌관광 등의 농관련산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창업활동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도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9,050건이 보고되었다.

공동경영 창업이 개인경영 창업 비율보다 높으나, 개인경영 창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97년 전체 여성농업인 창업에서 공동경영 비중은 83%였으나, 2005년은 63%로 감소하였다.

그림 40. 여성농업인의 창업활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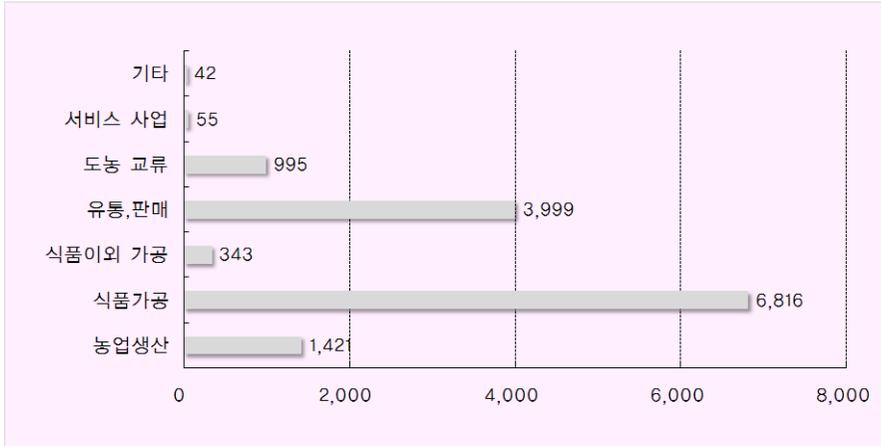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농촌여성 창업활동 실태조사」

창업 활동내역을 보면, 농산물 식품가공이 75%(6,816건), 직판장 판매·유통이 44%(3,999건)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창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매출금액 1,000만 엔 이상의 창업에서는 유통·판매 활동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농산물 식품가공, 도농 교류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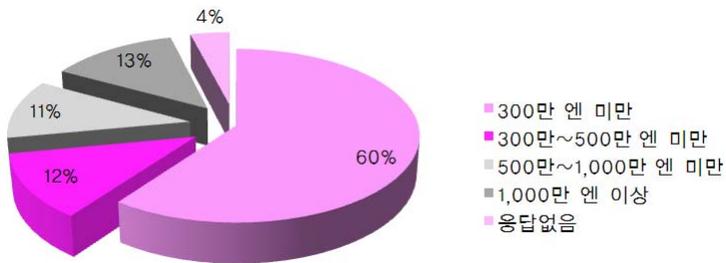
그림 41. 여성농업인의 창업활동 내역(복수 응답)

단위: 건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농촌여성 창업활동 실태조사』.

그림 42. 여성농업인 창업의 매출액 분포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농촌여성 창업활동 실태조사』.

창업 매출액이 300만 엔 미만인 사업체가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농업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농업공학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2004년 여성농업인 창업 8,667건의 매출액은 624억 5,000만 엔이며 총 매출액을 창업건수로 나눈 창업 건당 평균 매출액은 735만 엔이다. 매출액 5,000만 엔 이상의 사업체는 186건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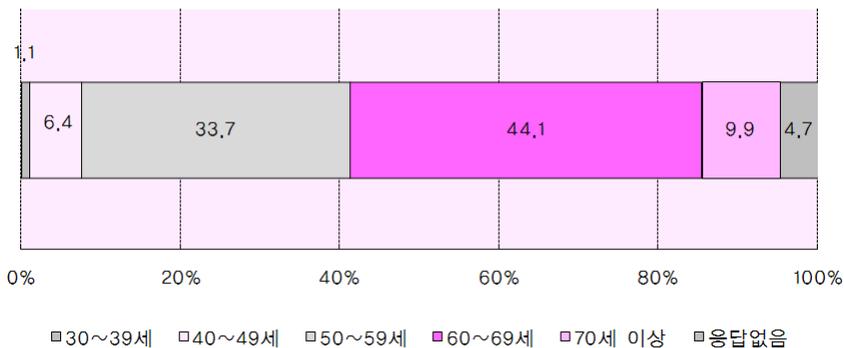
전체 창업건의 2% 정도이지만 전체 매출액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5,000만 엔 이하의 사업체 수는 전체 여성농업인 창업의 98%를 차지하나 매출액 비율은 64%이다. 또한 매출액 5,000만 엔 이상의 사업체들도 1억 엔 이하에 67%가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체로 60% 이상이 5,000만 엔 이하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표 29. 여성농업인 창업의 매출액 분포

| | 5,000만 엔 이하 | 5,000만 엔 이상 | 합계 |
|--------------|---------------------|---------------------|------------------|
| 매출액 합계 비율 | 399억6,900만 엔 64% | 224억8,100만 엔 36% | 624.5억 엔 100% |
| 창업건수 비율 | 8,106건 98% | 186건 2% | 8,292건 100% |

자료: 농업공학연구소, 「2005년 농촌생활 종합조사 연구보고서」.

그림 43. 창업한 여성농업인의 연령 분포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농촌여성 창업활동 실태조사」.

표 30.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필요조건

| 대상자 | 필요조건 |
|--|---|
| ① 인정농업인 | |
| ② 인정취농인 | 경영개시 후 5년 이내, 또는 취농 계획 인정 후 10년 이내 |
| ③ 농업경영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이 총소득의 과반(법인의 경우는 농업관련 매상이 총매상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것 또는 농업 조수의 200만 엔 이상(법인의 경우는 1,000만 엔 이상) 일 것 • 청장년(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족농업종사자가 있을 것(법인의 경우는 청장년자 상시고용자가 있을 것) • 부기기장을 하고 있을 것(예정자 포함) |
| ④ ①부터 ③의 경영주 이외의 농업인으로 가족 경영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 가족경영의 일부 부문에 대해서 주재권이 있고, 그 부문의 경영에 대한 위험부담 및 수익처분권이 명확히 되어 있을 것(경리, 부기기장, 농업용 계좌 개설 등) |
| ⑤ ①부터 ④까지의 사람이 전체 구성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은 임의단체 | 대표자, 대표권의 범위 등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규약을 가지고 있을 것 |
| ⑥ 생태농가(eco-farmer) | 지속가능한 농업생산방식을 도입한 생태농가 |

자료: 농산어촌여성·생활활동지원협회, 「여성농업자 지원제도」.

창업을 한 여성농업인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60대가 44.1%, 50대가 33.7%로 전체의 약 80%를 5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대에서는 0.1%, 30대에서는 1.1%로 젊은 세대의 창업활동은 부진한 편이다.

창업하는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2002년부터 농업개량자금에 여성농업인 창업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여성농업인이 자신의 명의로 무이자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농협 등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을 경우, 담보나 보증인이 없어도 농업신용기금협회의 채무 보증을 받을 수도 있다.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여성농업인의 기준은 1) 인정농업인, 기타 농업후계자이고 자신이 재배한 농축산물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경영을 시작하려는 여성 2) 농업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은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등이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족경영협정제도

가족경영협정은 가족농업경영에 관여하는 각 세대 구성원이 일의 보람을 느끼면서 진취적으로 영농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경영방침, 역할분담, 작업환경 등을 가족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간 합의에 의해 농가의 경영 합리화가 이루어진다.

일본의 가족경영협정 제도는 독일의 ‘농지양도계약법’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부모와 자식(또는 영농승계자) 간의 협정으로 시작하여 농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부부 중심의 농가 형태로 바뀌면서 부부간의 협정으로 확대되었다. 가족경영협정의 추진은 주로 여성농업인 리더, 농업위원회, 농업개량보급지원협회 등이 주도하고 있다.

가족경영협정의 체결 실태

일본의 가족경영협정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도 가족협정 체결 농가는 전국 3만 4,521가구로 2005년도에 비해 2,401가구, 즉 7.5% 증가하였다. 또한 가족경영협정 체결농가 3만 4,521가구 중 73%는 인정농업인이다.

가족경영협정의 내용은 1) 노동보수, 휴일, 역할분담, 작부계획, 소득목표, 경영이양 등 농업경영의 현상과 목표 2) 가사, 육아, 노인수발의 역할분담, 공통 가계비 지출방법, 주거생활방법, 생활목표 등 일상생활의 현상과 목표 3) 가족의 생각이나 요구 및 과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협약 내용은 매년 혹은 수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정하거나, 혹은 후계자의 취농이나 결혼, 경영주의 경영이양, 가족의 사회참여, 경영내용 개선 등이 있다면 가족 전원이 의논하여 협약내용을 재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다.

가족경영협정의 내용은 각 농가 사정에 따라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확실적인 것은 아니다. 2006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업 경영방침’에 관한 결정이 85.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노동시간 및 휴일’이 84.3%, ‘농업의 역할분담(작업분담, 부기기장 등)’이 73.4%, ‘노동보수(일급·월급)’가 69.4%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수 추이

단위: 가구

| 연도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협정 체결 농가 | 5,335 | 7,205 | 9,947 | 12,030 | 14,777 | 17,200 | 21,575 | 25,151 | 28,734 | 32,120 | 34,521 |

자료: 농림수산성 부인·생활과(1999년), 보급과(2000~2003년), 보급·여성과(2004~2006년), 「가족경영협정 실태조사」.

표 32.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 구성(2006년)

| | 협정농가수 | 비율 |
|-------|--------|------|
| 전체 | 34,521 | 100% |
| 인정농업인 | 25,117 | 73% |
| 법인 | 647 | 2% |
| 기타 | 8,757 | 25% |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가족경영협정 실태조사」.

그림 44. 가족경영협정 계약내용(복수 응답)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가족경영협정 실태조사』.

그림 45. 가족경영협정 체결 대상 범위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가족경영협정 실태조사』.

협정을 체결한 가족원은 경영주, 경영주의 배우자, 후계자, 후계자의 배우자, 경영주의 부, 모 등이 될 수 있다. 즉, 1) 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 2) 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후계자 3) 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후계자+후계자의 배우자 4) 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경영자의 부+경영자의 모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 중 경영주-배우자 사이에서의 가족경영협정 체결이 가장 많으며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경영협정과 연계된 정책

표 33. 일본의 가족경영협정과 연계된 정책

| 정책제도 | 내용 |
|-----------------------|---|
| 인정농업자제도 (2003년 6월) | 실질적으로 공동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 가족경영협정 체결을 조건으로 부부 인정농업인 공동신청 허가 |
| 농업인 연금(2002년) |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고 경영에 참가하는 배우자 및 후계자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보험료(2만 엔)에 대해 일정 비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 농업개량자금 (2002년 7월) | 여성농업인 및 후계자가 당해 농업개량자금 대출을 받고자할 경우, 가족경영협정 체결을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음 |
| 과실수급조정대책 (2001년) | 기본대상자는 인정농업자이며, 「인정농업인과 동일한 과수농업의 후계자로서 인정할 수 있는 자와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고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배우자」도 포함 |
| 농지알선(2003년) | 농지의 매매, 임대 주체는 기본적으로 「농가경영주」이나, 부부 공동경영의 경우 ① 부부간 경영 역할 분담이 가족경영협정 체결 등으로 명확히 되어 있고 ② 부부 모두가 경영의사결정에 참가하고 있으며 ③ 농산물 출하자 명의를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두 사람 모두가 공동경영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경영주」로서 농지매매 및 임대 알선을 받을 수 있음 |
| 부부 농업인 표창 (2001년) | 농업경영에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은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표창받을 수 있음. 단, ① 가족경영협정서 ② 작업일지 등의 종사일수가 5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보급조직 등의 의견서 첨부 필요 |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고 경영주와 함께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배우자 및 후계자에 대해서는 인정농업인제도, 농업인 연금제도, 정책 자금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도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여성농업인 정책

■ 일본 여성농업인 정책의 특징

일본 여성농업인 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농업경영 및 지역사회활동에서 남녀공동참여를 장려하는 정책 방향
 - － 일본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계획인 ‘남녀공동참가기본계획’의 목표는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과 함께 농업경영과 경제 및 사회활동에 동등하게 참가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지원책 수립
- 농업인력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써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 － 여성농업인 정책의 중심은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방안
- 가족경영협정제도와 연계된 여성농업인 정책
 - － 농가경영의 합리화를 충족한 농가의 여성농업인에게 정책지원 혜택 부여, 여성농업인 문제 해결을 위한 농가의 자율적 의지 중요시
 - －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고 경영주와 함께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배우자 및 후계자에 대해서는 인정농업인제도, 농업인 연금제도, 정책 자금 등에 있어 제도상의 혜택 부여
- 여성농업인의 창업 지원 강화

■ 관련 법률과 기본계획

일본의 여성농업인 육성을 규정한 관련 법률과 농림수산업성 보급 및 여성

과의 제2차 남녀공동참가기본계획[본 기본계획은 남녀공동참가기본법(1999년 법률 제78호)이 근거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식료·농업·농촌 기본법(1999년 법률 제106호) (여성의 참가 촉진)

제26조 남녀가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활동에 참가할 기회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 입각하여 정부는 여성의 농업경영에 있어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평가하면서 여성농업인이 적극적으로 농업경영 및 관련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촉진하기로 한다.

나.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2005년 3월)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자 지위 명확화
 - － 가족경영협정의 보급 촉진
 - － 여성인정농업인 등의 확대 촉진
- 농협 여성임원 및 여성농업위원 등에 여성 참여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수립
- 여성의 농업경영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환경정비
 - － 창업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연수 지원 등
 - －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정보 제공
 - － 여성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지원

다. 제2차 남녀공동참가기본계획(2005년 12월 27일)

식료·농업·농촌 기본법 및 수산기본법 등의 「여성의 참가 촉진」 규정에 따라 지속적인 농림수산업의 발전과 활력 있는 농어촌 실현을 위해 여성의 경영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등 농어촌에 있어서의 남녀공동 참가의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2005년 12월 27일 수립된 제2차 남녀공동참가기본계획의 기본적 방향과 구체적 시책은 <표 13>과 같다.

표 34. 제2차 남녀공동참가기본계획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 시책

| 기본 방향 | 구체적 시책 |
|--|---|
| <p>(1) 의식과 행동의 변화</p> <p>남녀를 불문하고 농림수산업·농어촌의 후계자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일의 결과에 대해 인정받고, 경영의사 결정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체성을 확보하고, 농어촌 가정 및 지역사회의 고정적인 성역할 분담 의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관습, 관행 및 행동양식을 시정하는 등 모든 면에서 의식과 행동을 변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농어촌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 등을 시행하면서, 농어촌 여성의 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통계정보 등을 수집·정비한다. 또한 남녀를 불문하고 「식(食)」에 관한 경험을 통해서 「식(食)」에 관한 지식과 「식」을 선택할 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식(食)교육을 추진한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주체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남녀의 주체성 확보를 위한 가정 및 지역사회 의식교육 강화 ○ 고정적인 역할분담의 시정과 역할에 대한 적정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의 고정적 역할분담의 관행을 해소하고 적정한 여성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여성의 농림어업 경영 및 지역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가 촉진 ○ 사회적 분위기 형성 및 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여성의 날」 제정 등을 통해 남녀공동 참가의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 - 남녀를 불문하고 식생활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식(食)교육을 추진 - 농어촌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 삼림조합 및 수산협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계발 운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 조사연구 및 통계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통계 자료 축적을 통해 농어촌 남녀공동 참가의 실태 파악 및 조사연구 수행, 선진적 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

표 34. 제2차 남녀공동참가기본계획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 시책 <계속>

| 기본 방향 | 구체적 시책 |
|--|---|
| <p>(2) 농업정책과 경영의사결정과정에 여성 농업인의 참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업에 있어서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생산 및 생활에 관한 모든 의사 결정에서 향후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방 공공단체에서 여성 참가목표를 정하고 시읍면, 농업협동조합, 삼림조합 및 수산협동조합 등에서 보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구체화한다. 또한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참가 목표 달성을 위한 정기적인 목표 검토와 활동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농어촌 여성지도자간의 네트워크 조성 촉진 등 임명된 후의 지원체제 강화를 꾀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및 의사결정과정에 여성 참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협동조합, 삼림조합 및 수산협동조합 등의 여성 임원, 여성의 농업위원 등 참여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정기적인 목표 점검 및 보급 활동 등을 추진 - 여성농업지도사 등 농어촌의 여성지도자를 육성하면서 토지개량구역, 취락영농²⁹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 참여 촉진 지원 - 각 지방공공단체에서 책정한 농어촌 여성 참가 목표를 바탕으로 시읍면 등 지역 단위의 참가 목표 설정을 장려하고 목표 달성 추진 ○ 여성의 능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욕 있는 여성이 지역 정책 및 의사결정 참여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등을 실시 - 여성농업위원, 여성농업지도사 등 농어촌 여성지도자 간의 네트워크화 촉진, 선진 사례 및 지식·기술에 관한 정보교환 및 제공 등 임명된 후의 지원체제를 강화 |

29 취락영농은 마을[또는 취락(聚落)] 단위로 농업생산을 공동으로 행하는 영농을 말한다. 집단적인 토지이용이나 농업기계의 공동이용 등과 같은 농업생산활동뿐만 아니라 농촌생활에서 협업활동을 포함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겸업농가나 고령 농가를 포함한 농가들이 협력하여 행하는 영농형태이다.

표 34. 제2차 남녀공동참가기본계획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 시책 <계속>

| 기본 방향 | 구체적 시책 |
|--|--|
| <p>(3)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취업조건 및 환경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취업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며 농림수산업 및 농어촌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의 농업경영상의 위치를 명확히 한다. 또한 신규 창업에 포함한 농림수산업의 경영, 창업활동 및 지역사회활동에 여성의 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한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녀공동참가계획의 추진은 농림어업 경영개선에 기여한다. 가족경영협정이나 농림어업경영의 법인화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보급 확대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경영협정의 체결 촉진, 추진 활동의 체제 정비를 추진하면서 여성농업지도사 등 여성 전문농업인의 육성, 농림어업경영의 법인화 등을 촉진 - 경영자 및 공동경영자로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해 여성의 영농활동 실태 파악 및 가족경영협정을 활용한 관련제도 정비 등 지원책을 추진 - 농어촌 여성의 고정자산 형성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여성의 고정자산, 세금제도 등 경영 참여에 관련된 지식 보급 등을 추진 ○ 생산기술 및 경영관리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식이나 기술, 경영관리능력의 습득을 위해 연수 및 교류 행사 등을 추진 - 농림어업 법인 등에 고용되는 취농 등 다양한 취농 지원을 위해 신규 취농상담센터에서 취농·취업에 관한 상담활동, 정보수집의 강화, 농림어업기술이나 경영관리에 관한 연수 교육 등 여성의 취농 지원체제를 정비 - 여성의 농림수산업 관련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연수 등 실시 |

표 34. 제2차 남녀공동참가기본계획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 시책 <계속>

| 기본 방향 | 구체적 시책 |
|--|---|
| <p>(4) 여성이 살기 편하고 활동하기 쉬운 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활동유형은 영농활동, 지역사회활동 등이 있고, 연령별로 젊은층, 장년기, 노년기 등이 있다. 여성농업인이 농립수산업·농어촌에 편안하게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가정 내에서 남녀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여성농업인의 가사, 육아, 간병 등의 과중한 가사노동 부담을 줄여주는 시책이 필요하다. - 도시민이 농업·농촌에 취업 및 정주하고 싶은 환경조성을 추진한다. - 여성의 능력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 등 도시와 농어촌의 공생을 위해 소비자와의 교류, 상공업·관광업과의 연계·네트워크를 추진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조건 및 환경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안전 확보, 농업노동 경감, 노동시간의 적정화, 노동환경의 점검, 휴일 확보 등의 노동 환경 및 시설 등을 정비 - 여성농업인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 ○ 도우미 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 및 간호 등을 지원하는 시설 정비 및 각종 서비스 구축 - 각종 도우미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노동력 조정 시스템을 구축 - 남녀 모두가 가사·육아에 대해 책임지도록 교육 실시 - 육아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자원과 경관을 살린 지역개발 및 농어촌의 생활환경 정비 - 지역개발 전문가 육성 - 식품 안전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 식(食)교육에 관한 시책과 농촌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책에 남녀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도농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광과 도농교류에서 여성농업인의 활동 확대를 위해 소비자와 교류 및 상·공업, 관광업 등 다른 업종과의 연계·네트워크화를 추진 |

표 34. 제2차 남녀공동참가기본계획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 시책 <계속>

| 기본 방향 | 구체적 시책 |
|--|--|
| <p>(5) 고령농업인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조건 및 환경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의 고령화로 농림어업 종사자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여성을 포함한 고령농림어업인 등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경험 및 영농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농어촌에서 고령의 부모 및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의 간병은 여성의 몫이라는 사고방식이 남아 있어 간병 서비스 이용에 거부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농어촌의 여성은 농림수산업의 작업, 가사, 육아에 노인 수발까지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간호를 하는 여성 자신도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아 여성의 부담은 더욱 크다. 따라서 여성의 부담을 줄이는 도우미제도를 비롯한 각종 시책을 추진한다. - 또한 농어촌의 남녀가 평등한 입장에서 안심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농업인의 생계지원체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등의 여성 및 청년 조직을 활용 고령자와의 우호 관계 구축, 안부 확인, 배식 서비스, 공공시설까지 안내 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추진 - 농업협동조합의 도우미 양성을 포함한 간병 전문가 양성 등, 농업협동조합의 조직이나 기타 자원봉사 조직과 연계된 고령자의 생활지원 체제의 정비를 추진 ○ 고령농업인의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의 지식과 능력을 살려 보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의한 신규 취농자 및 후계자 교육, 도시민과 교류나 아이들과의 세대간 교류, 지역자원의 보전관리 등의 시책 추진 - 고령자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농어촌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안 도로 보행 공간의 확보, 농업시설들을 노인 친화적으로 정비 ○ 노후 자립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가 함께 동등한 노후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농업인 연금제도를 홍보하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보급·정착 추진 |

■ 2007년 남녀공동참가추진활동 계획

여성농업인을 둘러싼 농림수산업 및 농어촌 여건 변화

- 의욕과 능력이 있는 후계자(인정농업인, 취약영농조직 등)의 육성 및 확보
- 여성이 새로운 가치관을 바탕으로 농림어업에 재도전
- 출산을 저하 대책 및 일과 가정의 조화 추진
- 식(食)생활 교육, 지산지소(地產地消), 도농교류 등 새로운 활동분야 확대

과제

- 여성의 경영 및 사회 참여는 일부 선진사례에서는 확인되지만 아직 낮은 수준(인정농업인 및 농협임원에서 여성의 비율은 2% 정도)
- 여성농업인육성계획 추진 실적의 지역 간 높은 격차
- 여성 창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영기반 강화 필요(여성 창업의 약 60%는 매출 300만 엔 미만의 영세규모)
- 고령화 심화로 차세대 여성 후계자·지도자 확보 및 육성의 필요성 증대(농업취업인구의 약 60%가 만 65세 이상)

2007년도 중점 활동 계획

2007년에 「남녀공동참가기본계획」의 진행 현황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남녀공동참가사회 실현을 위해서 양성평등의 사회 분위기 확산
 - － 「남녀공동참가주간(6월)」, 「농어촌 여성의 날(3월)」과 연계한 집중적인 홍보 활동 전개
 - － 여성의 참가목표 설정 현황 조사 및 공개 등 지방공공단체, 농협

- 등의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의 추진 촉진
- 차세대 여성 후계자 및 지역 지도자 육성 지원
 - － 농어촌 리더 여성을 대상으로 표창사업 실시
 - － 후계세대도 포함한 농어촌 여성의 능력개발지원
 - － 여성농업인의 신규 취농(就農) 지원
 -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활동분야에 대한 참여확대 지원
 - － 여성창업의 발전을 위하여 선진적·모범적 여성창업 환경 조성, 경영기반 강화 지원
 - － 취약영농에 대한 여성 참여 사례 수집 및 제공 등 지역 활동에 대한 여성의 참가 촉진 지원

표 35. 2007년 농림수산성 남녀공동참가 추진활동 계획(안)³⁰

| 활동 계획 | 주요 활동 예정 |
|--|---|
| 1. 중간점검 실시 올해 12월이 남녀공동참가기본계획(제2차)이 수립된 지 2년이 되므로 중간시점에서 시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확인한다. | 남녀공동참가기본계획(제2차)의 「2010년도까지의 구체적 시책」에 대해 각 국청에서 시행현황 및 예정을 조사·점검한다. |
| 2. 남녀공동참가 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1) 남녀공동참가 비전 및 목표 설정 ● 지방공공단체, 농협 등의 보조사업에 여성의 참가목표 설정 의무화 ● 지방공공단체의 여성 참가목표 설정 현황에 대해 조사·공개하고, 계획 추진이 진행되어 있지 않은 지방공공단체에 설정 촉진 유도 | 2006년 여성의 참여 할당제를 도입한 사업 효과를 검증(4월 이후)하고 대상 사업의 확대 검토 － 도도부현(지역행정기관), 시읍면의 여성 참가목표 설정 현황을 조사 및 공개(8월) － 모든 도도부현의 설정현황을 공개 |
| (2) 남녀공동참가 홍보사업 실시 ● 남녀공동참가에 관한 팸플릿 등 홍보자료 작성 및 배포 ● 문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보급활동 ● 「남녀공동참가주간」에 효과적인 추진사업 실시 | 2007년 「당신의 도전, 응원합니다.」 팸플릿 작성 및 배포(4만 부) －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홍보지 활용한 보급 － 「소비자의 방」, 「농어촌 여성의 날, 기념모임」(여성단체 7단체 주최) |

30 2007년 농림수산성 남녀공동참가추진본부가 결정한 계획안이다.

표 35. 2007년 농림수산업 남녀공동참가 추진활동 계획(안) <계속>

| 활동 계획 | 주요 활동 예정 |
|---|---|
| <p>(3) 농어촌 여성의 경영 및 지역사회활동 우수 사례 표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여성의 경영 및 지역사회 참여 우수사례 표창사업 실시 ● 올해는 추가적으로 향후 농림수산업을 이끌어갈 농어촌 리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표창사업 실시 | <p>농어촌 여성의 활동에 대한 표창사업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의 농어촌을 이끌어가는 여성 표창」(가칭)(6월, 농림수산업 남녀공동참가 추진본부) - 「농어촌 남녀공동참가활동 생기발랄 사진전」(민간단체) - 「식(食)문화 콘테스트」(민간단체) - 「농어촌 여성 제도전 활동 표창」(3월, 민간단체) <p>* [주요 관련예산] 농업·농촌남녀공동참가 도전 종합추진사업, 민간단체 자체 예산</p> |
| <p>(4) 농어촌 여성과의 간담회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여성의 현황, 요구를 파악하고 향후 남녀공동참가추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에서 활약하는 농어촌 여성 및 농림어업단체 대표자의 의견청취 및 토론 실시 | <p>표창사업, 기념행사 등과 연계한 간담회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의 농어촌을 이끌어가는 여성」(가칭) 표창 수상자와의 간담회(6월) - 농촌 여성 간담회(1월), 주제: 취약 영농에 여성참여 촉진 - 전국수협여성부 연락협의회 임원 등과 수산청 장관과의 간담회(1월) - 농림어업여성단체 간담회(3월) |
| <p>3. 농림어업단체, 농협 등에 여성 참가촉진을 위한 지도 및 여성리더 교육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임원, 농림어업단체, 농업위원회 등에 여성의 참여 촉진을 위해 여성의 참가목표 및 지침 등에 관한 지도 교육을 실시하면서 여성 농어업인의 자질 향상과 지도자 육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 <p>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보급·계발활동을 하면서 농림어업여성단체와 간담회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어업여성단체 등의 참가목표, 지침 책정 및 자질 향상, 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 연수 지원 |

표 35. 2007년 농림수산성 남녀공동참가 추진활동 계획(안) <계속>

| 활동 계획 | 주요 활동 예정 |
|---|--|
| <p>4. 농어촌 여성의 경영 참여 및 창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영참여를 촉진하고 여성 인정 농업인 등 여성 후계자를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연수, 강좌 등에 의한 능력개발 지원 ● 여성의 경영참여 및 취약영농 참가 우수 사례를 수집하여 보급 ● 여성의 신규 취농 및 농촌 정착을 위한 시책 실시 ● 여성창업의 발전을 위해 연수·강좌 개최, 정보제공 및 관련시설의 정비, 자금의 조성 및 융통 등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 및 창업에 관한 연수·강좌 개최, 재택학습 시스템(e-learning) 구축 - 농업경영 및 창업에 대한 우수사례 표창 - 취약영농의 여성의 참가현황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보급 - 심포지엄, 교류회 개최 및 표창사업 - 신규 취농 상담, 기술 및 영농지도 등을 통해 여성을 포함한 신규 취농 지원 - 농산물가공 및 판매 시설 등에 대한 지원 - 농업개량자금 등의 융통 - 여성단체 등의 창업 모범사례 홍보 |
| <p>5. 농어촌 여성이 생활 및 활동하기 쉬운 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어업 경영참여 여성의 지위평가 명확화 ● 남녀 모두가 생산·활동하기 쉬운 환경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가족경영협정과 출산·육아 등에 대한 여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실시 ● 식(食)교육, 도농교류 추진 등으로 농어촌 활성화 촉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자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가족경영협정 보급 및 확산 실시 - 육아 지원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재택학습시스템 구축 등의 영농활동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 - 생산·유통·소비의 각 단계에서 「식사균형가이드」 교육을 통해 쌀을 중심으로 한 「일본형 식생활」의 보급·계발 사업 추진 - 탁아기능을 구비한 농수산물 가공 및 판매시설 정비 등의 농어촌 생산 및 생활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 - 기능성과 패션성을 겸비한 새로운 농작업복 디자인 공모(민간단체) - 임가 여성의 임업활동 참가 및 여성단체 지역 활동, 생산 활동에 대한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교류회 개최와 정보제공 등을 실시 |

표 35. 2007년 농림수산성 남녀공동참가 추진활동 계획(안) <계속>

| 활동 계획 | 주요 활동 예정 |
|--|---|
| <p>6. 남녀공동참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영농 및 지역사회 참가현황 실태 조사를 실시하면서 농어촌 남녀공동참가 추진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연구개발 실시 | <p>여성의 영농 및 사회활동 참가 현황 등의 파악을 위해 다음의 조사를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여성의 창업활동 실태조사 - 가족경영협정에 관한 실태조사 - 인정농업인의 영농유형별 현황 조사 - 여성 창업의 경제효과 - 농어촌 남녀공동참가와 육아 등의 가사일 양립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 여성용 농기계 및 기술 개발 |
| <p>7. 농림수산성 남녀공동참가 추진</p> <p>(1) 여성 국가공무원의 채용·등용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성에서의 여성 직원 채용·등용 확대계획」을 근거로 여성의 채용·등용 확대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성 여성 직원 채용·등용 확대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 |
| <p>(2) 농림수산성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심의회 등에서 여성임원 등용 촉진에 대해서」(2006년 4월 4일 남녀공동참가 추진본부 결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성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 확충 및 활용 추진 |

 참고 문헌

- 강혜정, 권오상. 2005. “농업가족노동의 잠재임금 추정.” 『농업경제연구』 46(4): 143-165.
- 김경미, 최윤지, 이진영, 고운미. 2004.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정책적 지원 방안.”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2): 359-369.
- 김경미, 고운미. 2005.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영농의사결정 참여 실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3): 47-64.
- 김경미 외. 2006. 『여성농업인 불평등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보고서』.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김영옥, 김이선. 1999. 『21C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옥, 이병기. 2000. “농업인구 구조변화와 여성경영주의 영농특성.” 『농촌사회』 제10집: 7-35.
- 김영옥, 김이선. 200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부.
- 김이선. 1997. 『개방농정체제에서 여성의 농업참여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3개 마을 사례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정호, 최경환, 이용호. 2007.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주숙. 1990. “농업생산구조의 변화와 가족, 1976~87년.” 여성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론』.
- 김주숙. 1998. “한국농촌사회의 구조변화와 여성의 역할: 제3차 후속조사연구.” 『대산논총』 제6집.
- 농림부. 2006. 『여성농업인 관련 통계자료』. <<http://woman.maf.go.kr>>.
- 농림부. 2007.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연구 보고서.
- 농촌진흥청. 2006. 『농촌여성중심의 소규모사업 지원체계와 활성화전략연구』. 제3차년도 완결보고서.
- 박민선. 2000. “EU회원국의 여성농업인 정책.” 『농협조사월보』. 농협중앙회.
- 이호철, 최수영, 박재홍. 2002.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교육방안.” 『농촌사회』 12(1): 37-62.

- 유소이, 김경미. 2003.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농촌사회』 13(2): 245-270.
- 정기환. 1997. 『농가 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기환. 2002.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사회교육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금주, 김경미, 고운미. 2004. “여성농업인을 위한 직업교육 : 일감갓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1): 67-81.
- 최윤지, 유소이, 최현자. 2002. “여성농업인 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에 관한 소고.”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1): 25-40.
- 최윤지. 2007. “여성농업인의 지위 인정 및 정책적 지원 방안.”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및 지원방안 정책토론회』. 국회.
- 한얼경제사업연구원. 1999.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최종 연구보고서』. 농림부.
- 허미영, 박민선. 2004.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 실태와 그 결정요인.” 『농촌사회』 14(1): 205-237.
- Aigner, D. J., T. Amemiya and D. J. Poirier. 1976. “On the Estimation of Production Frontiers: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of the Parameters of a Discontinuous Density Function.”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7: 377-396.
- Amemiya, T. 1984. “Tobit Models: A Survey.” *Journal of Econometrics* 24: 3-61.
- Banker, R. D., S. M. Datar and C. F. Kemere. 1991. “A Model to Evaluate Variables Impacting the Productivity of Software Maintenance Projects.” *Management Science* 37: 1-18.
- Cornes, R. 1992. *Duality and Modern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äre, R. 1988. *Fundamentals of Production Theory*. Springer-Verlag.
- Färe, R., and D. Primont. 1995. *Multi-output production and duality: Theory and application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Huffman, W. E. 1992. *Costs and Returns: A perspective on estimating cost of human capital service and more*. Westview Press: 312-336.
- Jacobsen, S. E. 1971. “On Shephard’s Duality Theorem.” *Journal of Economic Theory* 4: 458-464.
- Maddala, G. S. 1983. *Limited 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Econometric Society Monographs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ultz, T. 1972. "The increasing economic value of human time."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54: 843-850.
- Shephard, R. W. 1970. *Theory of Cost and Production Func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ooldridge, J. M. 2002.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MIT Press.

연구보고 R552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와 정책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7. 12.

발 행 2007. 12.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전화 02-2263-7534 <http://www.khip.co.kr>

ISBN 978-89-6013-062-3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